Workshop on Shelter Management and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쉼터 관리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한 워크숍

일시 | 2011 8/10(수) 10:00 ~ 17:00
2011 8/11(목) 10:00 ~ 16:00

장소 | 플라자 호텔
오키드 홀 (4층)

IOM 국제이주기구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A Workshop on Shelter Management and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쉼터 관리 및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한 워크숍

국제이주기구(IOM)는 질서 있고 인도주의적인 이주를 장려하고, 이주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간 국제기구로서, 지난 17년간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에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는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 한국어판 발간을 기념하여 '쉼터 관리 및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쉼터 관리 및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워크숍'은 벨기에, 일본, 중국 등 해외의 인신매매 전문가들과 국내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그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교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워크숍이 관련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과 쉼터 관리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발전방향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국제이주와 인신매매 관련 이슈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국제이주기구

행사일정

제1일 8월 10일 (수)

시 간	세 션	발 표 자
09:00-10:00	**등록 및 접수**	
10:00-10:15	**개회사** **축사**	• 이정혜 대표 (IOM 한국대표부) • 김춘진 의원 (대한민국 국회)
10:15-10:20	**기념촬영**	
10:20-10:30	휴식	
	세션 1- 인신매매의 배경과 과제	
10:30-11:10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이정혜 대표 (IOM 한국대표부)
11:10-11:50	**한국의 인신매매 관련 법 규정의 실태**	• 소라미 변호사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1:50-12:30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정책**	• 채명숙 사무관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12:30-13:30	중식	
	세션 2- 쉼터 행정	
13:30-14:10	**한국의 쉼터의 실태와 과제**	• 박수미 소장 (두레방 외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시설)
14:10-15:10	**쉼터의 운영과 기능: PAYOKE의 경험**	• Patsy SÖRENSON (벨기에 인신매매 센터 PAYOKE 소장)
15:10-15:25	휴식	
15:25-16:10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할 때의 윤리적 기준**	• Patsy SÖRENSON (벨기에 인신매매 센터 PAYOKE 소장)
16:10-16:40	**안전하고 보안이 잘 된 쉼터를 제공하는 방법**	• Patsy SÖRENSON (벨기에 인신매매 센터 PAYOKE 소장)
16:40-17:00	정리	

제2일 8월 11일 (목)

시 간	세 션	발 표 자
09:00-10:00	**등록 및 접수**	
	세션 3–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 (인터뷰 기술 및 피해자 식별)	
10:00-10:40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 Carina MORITA (IOM 일본 사례담당팀장, 인신매매방지부)
10:40-11:20	**한국에서의 피해자 식별**	• 남재우 팀장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외사 2팀)
11:20-12:00	**중국에서의 피해자식별**	• Lan ZHANG (IOM 중국 이주관리 역량강화 프로젝트 책임자)
12:00-13:00	중식	
13:00-13:40	**PAYOKE의 경험을 통해 본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는 기준**	• Patsy SÖRENSON (벨기에 인신매매 센터 PAYOKE 소장)
	세션 4– 심리사회적 지원	
13:40-14:20	**심리사회적 지원에 대한 국제 기준과 모범사례**	• Carina MORITA (IOM 일본 사례담당팀장, 인신매매방지부)
14:20-15:00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한국의 성산업 이주여성 지원 경험을 중심으로**	• 박김혜정 사무국장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15:00-15:40	**보안과 안전**	• Carina MORITA (IOM 일본 사례담당팀장, 인신매매방지부)
15:40-16:00	폐회식	

Workshop on Shelter Management and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쉼터 관리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한 워크숍

세션 1.
인신매매의 배경과 과제

Session 1. 인신매매의 배경과 과제

01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이정혜 | IOM 한국대표부 대표

2007 년부터 IOM 한국대표부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1999 년 IOM 서울사무소를 개소하고 2002 년부터는 스위스 제네바 IOM 본부에서 지역별, 나라별 이주 정책 리서치 총 책임자, 노동이주 프로그램 총 책임자 정부간 기술협력 프로그램 총 책임자 등 이주 및 인신매매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 왔다. 2008 년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한국이민학회 국제협력 총 책임자를 역임한 바 있다.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2011.8.10-11

발표순서

-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반(反)인신매매 활동
- 인신매매 관련 국제규범
- 인신매매와 착취적 이주
- 인신매매와 착취적 이주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IOM Seoul 인신매매 방지활동

- *2001-2002*
  대한민국 내로의 국제인신매매에 관한 자료검토
- *2003*
  외국여성 성 매매 실태조사
- *2003-2005*
  국제 인신매매 방지 전문가 회의 (년1회, 총3회)
- *2005*
  한국여성 해외인신매매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일본 편)
- *2005*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 베트남 • 필리핀 현지 실태조사
- *2006*
  한국여성의 해외 인신매매실태조사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IOM Seoul 인신매매 방지활동

- *2006*
  외국인 연예인 도입 실태조사 및 정책비교연구
- *2006*
  국제결혼 비자발급 시스템 국제비교연구
- *2007*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 *2007*
  베트남 결혼이주 희망여성 대상 정보제공 캠페인과 공무원 및 상담원 대상 결혼이주 교육 워크숍
- *2008*
  몽골, 캄보디아 결혼이민자 사전정보제공 사업,
  몽골 결혼이주 콜 센터, 몽골 결혼이주 실무자 워크숍 실시

IOM Seoul 인신매매 방지활동

- *2008-2009*
  북한이주민의 인신매매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 (미발간)
- *2010*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출간
- *2010*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실천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 *2011*(현재)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방지를 위한 실무자 포럼 (5월~)
  「인신매매 방지 지침서」 시리즈 출간
  - ✓ 피해자식별 및 인터뷰기술
  - ✓ 직접지원
  - ✓ 귀환과 사회재통합

인신매매의 규모

문제 이해하기

매년 600,000 ~ 4백만 명이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추정됨

이를 통해 범죄집단은 매년 320억 달러의 이윤을 얻는다고 추정됨

20,000 – 1997년 이후 IOM이 지원한 피해자 수

2,000 – 미국정부로부터 2001년 이후 T비자(인신매매피해자)를 발급 받은 피해자 수, T비자 연간 할당량은 5,000명

6,000 – 매년 성공적으로 기소된 인신매매자의 평균 수치

Q:왜 국제적 추정치와 실질적인수치에 차이가 존재할까?

2000년 이전까지의 관련 국제법

- 1904 (백인)노예 매매 금지를 위한 국제협약
- 1921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철폐를 위한 국제협약
- 1926 노예제 조약
- 1930 [ILO 협약 제29호] 강제노동협약
- 1933 성인 여성의 인신매매 철폐를 위한 국제협약
- 1948 인신매매 억제 협약
- 1956 노예제, 노예무역, 노예제와 유사한 제도와 관행 철폐에 관한 보충 협약
- 1957 [ILO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 폐지를 위한 협약
- 197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 1973 [ILO 협약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 198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1999 [ILO 협약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금지 및 즉각적 조치에 관한 협약
- 2000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29호] 강제노동협약, 1930

- 제2조

  이 협약에서 '강제노동'이라 함은 어떠한 자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를 말한다.

- 대한민국 - 29호 비준, 182호 미비준
- 1999 [ILO 협약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금지 및 즉각적 조치에 관한 협약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1971

- 제 6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1984.12월 비준(2010.11월 현재 186개국 비준)

아동권리협약과 제2선택의정서

- 제35조: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약취유인,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국내적 • 양국간 •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선택의정서 제3조: 수단을 불문하고 다음을 목적으로 아동을 제공 • 운반 및 수령하는 행위
  ㈎ 아동에 대한 성 착취
  ㈏ 이익을 목적으로 한 아동 장기의 이전
  ㈐ 강제노동

- 대한민국 - CRC 1991.2월 비준(2010.11월 현재 193개국 비준),
- CRC 제2선택의정서2002.1월 비준(2010.11월 현재 141개국 비준)

UN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

제2조

a) 여성과 아동에게 특히 관심을 기울이며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한다.

b)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한다.

c)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국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의한 유엔 협약

제1조: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을 증진한다.

UN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

팔레모 의정서에서의 인신매매 정의:

- 모집, 운반,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
- 위협이나 무력,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유괴, 사기, 기만, 권력 남용, 상대의 취약성 악용
- 착취 목적(성적 착취, 강제 노동, 노예제 또는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행위 또는 장기적출)

- 대한민국 - 2000년 서명, 현재 미비준(2010.11월 현재 142개국 비준)
- 현재 법무부 내 국내법 정비 T/F가 조직되어 활동 중,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여타 2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동시에 추진

무슨 일이 일어날까?

-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 이주를 한 가사노동자가, 노예제와 다름없는 조건에서 일을 하도록 강요당한다면?
- 밀입국된 이주자가 이주하는 과정에서 권력남용과 착취로 고통 받았으며 지원과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
- 자발적으로 직업 중개소의 서비스를 통해 이주한 건설 노동자가 자신이 회사에 채무로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 경제적 이주자, 인신매매 피해자 그리고 잠재적 망명 신청자들이 최종목적지로 가기 위하여 밀입국자에게 의지하는 것을 포함 똑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이전과 같은 이주 경로를 이용한다면?

착취적 이주(Migration Exploitation)와 인신매매

개념적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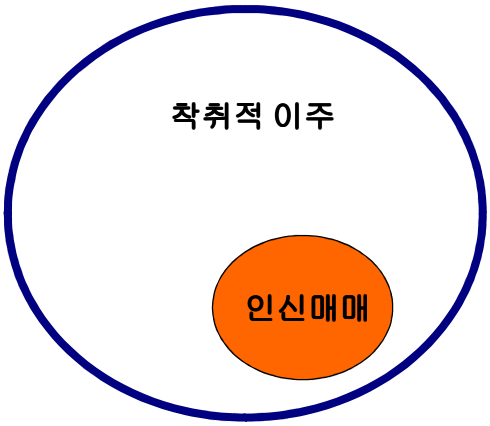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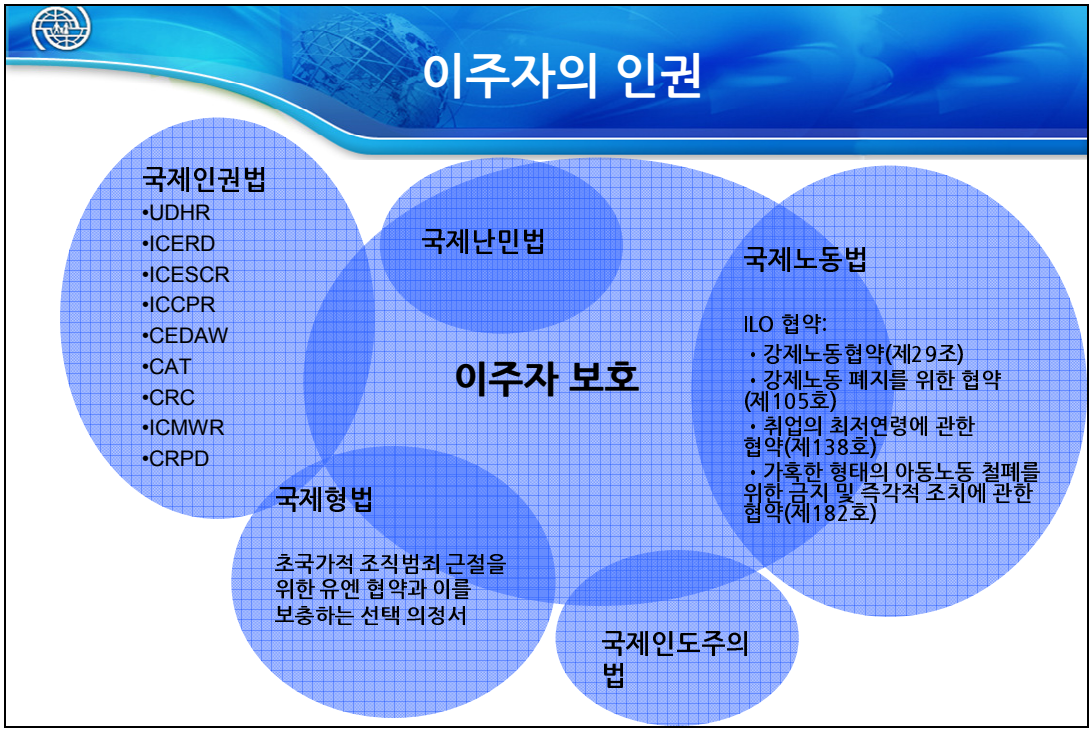
이주자의 인권
국제인권법
•UDHR
•ICERD
•ICESCR
•ICCPR
•CEDAW
•CAT
•CRC
•ICMWR
•CRPD
국제난민법
이주자 보호
국제노동법
ILO 협약:
• 강제노동협약(제29조)
• 강제노동 폐지를 위한 협약 (제105호)
•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금지 및 즉각적 조치에 관한 협약(제182호)
국제형법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과 이를 보충하는 선택 의정서
국제인도주의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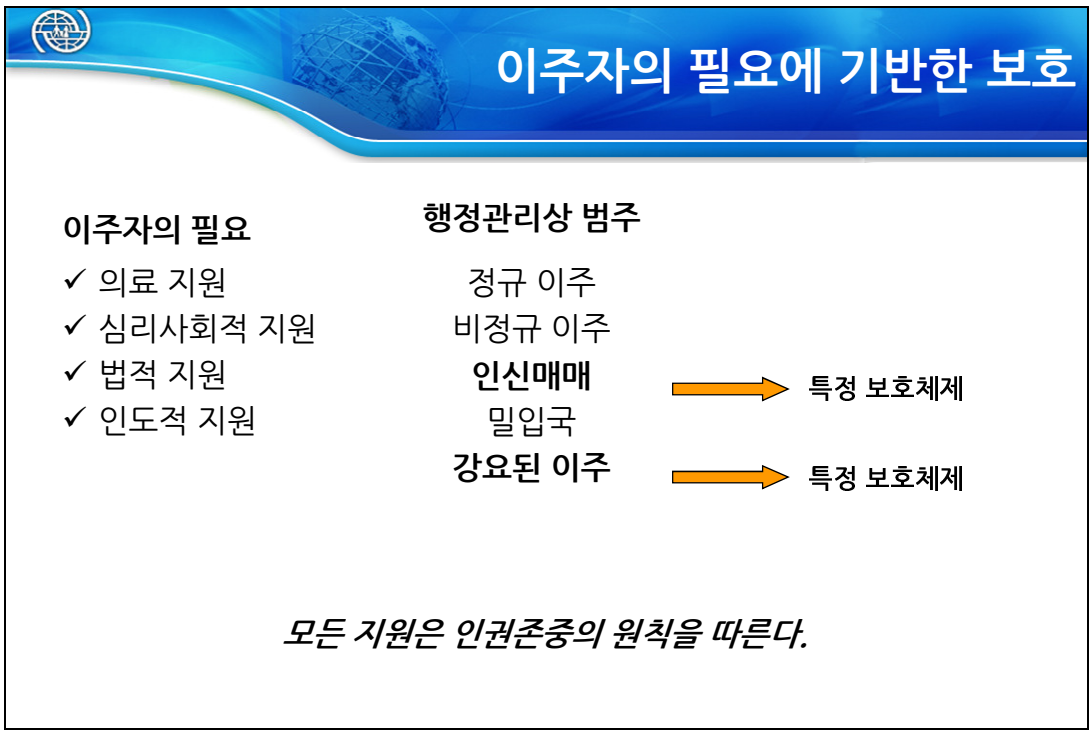
이주자의 필요에 기반한 보호
이주자의 필요
✓ 의료 지원
✓ 심리사회적 지원
✓ 법적 지원
✓ 인도적 지원
행정관리상 범주
정규 이주
비정규 이주
인신매매
밀입국
강요된 이주
특정 보호체제
특정 보호체제
모든 지원은 인권존중의 원칙을 따른다.

어떻게 인신매매와 착취적 이주를 방지할까?

이주관리 (Migration Management)

- 인권존중에 기반
- 종합적인 입법 체계
- 합법적 이주의 기회
- 제도적 역량 강화
- 실태 조사, 정책과 프로그램의 연구와 평가
- 국제 협력
- 민관 협력

어떻게 인신매매와 착취적 이주를 방지할까?

정책적 대응

- (잠재적 이주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 근로 기준의 준수
- 반(反)부패 제도적 장치
- 사법 정의의 실현
- 사회 복지 체계 정비
- 공공 인식 제고
- 취약한 이주자들에 대한 지원
- 법적 보상에 대한 접근성 향상
- 국제 교역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체계

- 인신매매 의정서 비준
- 국가행동계획 마련
- 연계 체계구축
- 지역 행동계획 참여 및 출신국들과의 양자협의각서
- 충분한 피해자 보호시설
- 적절한 규모의 전담 경찰 부서

궁극적인 목표

모든
이주자의
인권에 대한 존중

Session 1. 인신매매의 배경과 과제

02 한국의 인신매매 관련 법 규정의 실태

소라미 변호사 |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소라미 변호사는 2004 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아름다운 재단 변호사, 빈부격차차별 시정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보건복지가족부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실무분과위원회 민간위원, 무지개청소년센터 이주아동 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주여성 이슈에 관심을 갖고 “국제결혼중개시스템: 베트남·필리핀 현지 실태조사”, “외국인 연예인 도입실태조사 및 정책비교연구”, “이주민을 위한 사법지원방안 연구” 등에서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1. 인신매매 범죄의 유형 및 처벌 실태

(1) 가수 등 연예활동을 할 목적으로 연예흥행(E-6-2)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여성에게 업주 또는 기획사가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등을 제공받아 돌려주지 않은 채 성매매를 강요한 사례.

이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여권 등 외국인등록증을 압수한 것만으로는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되고 있다.

(2) 취업을 알선하겠다는 브로커의 말에 속아 한국인과 위장결혼하여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브로커와 업주로부터 위장결혼인 것을 신고하겠다는 위협을 받고 성매매를 강요받은 경우[1]

이와 같은 사례에서 수사기관은 브로커 등 알선 조직에 대해서는 형법상 '공전자부실기재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죄, 성매매 단순 '알선'죄 정도를 수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다.

(3) 인신매매적인 국제결혼중개 행태에 의한 피해

현재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성혼은 4~5 일간 한국인 남성이 아시아 국가를 방문하여 첫째 날, 다수의 현지 여성 중 한명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둘째 날, 현지 결혼식, 셋째 날, 근교 신혼여행, 넷째 날, 현지 한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비자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단기 속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왜곡.은폐되어 결혼하자마자 혼인파탄으로 이어지는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주여성에게 한국인 남성에 대한 직업, 경제력, 장애유무와 같이 혼인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기망하여 결혼이주하게 하는 행위는 국제인권기준 상 인신매매범죄에 해당함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경미한 행정적.형사적 제재에 그치고 있다.

2. 인신매매 범죄 규정 및 적용 실태

(1) 형법상 '영리 목적의 약취 유인죄'

가. 관련 규정

현재 형법 제 31 장에는 '추행.간음.영리 목적의 약취.유인죄'(제 288 조 제 1 항), '부녀매매죄'(제 288 조 제 2 항), '국외이송목적의 약취.유인죄'(제 289 조), '결혼목적의 약취.유인죄'(제 291 조) 등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인신매매와 관련된 형법상 범죄는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죄(형법 제 288 조)이다. 이 범죄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므로, 고소할 경우

[1] 경향일보 2010. 7.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제 4 항」위반 혐의로 고소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법 제 287 조가 적용되고, 가중처벌 조항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2 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도 함께 고소할 수 있다.

- **약취 유인죄': 형법 제 288 조 제 1 항**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 목적의 약취 또는 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영리 목적, ②약취 또는 유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영리 목적'은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을 뜻한다. 기획사 및 업소의 영업은 모두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리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그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받는 상태로부터 자신 또는 제 3 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뜻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여성을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시켜 일정 업소에서 일하도록 한 경우 '약취'에 해당한다. 형사사건에서 '약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 **부녀매매죄'; 형법 제 288 조 제 2 항**

추행, 간음,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 또는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 제 5 조의 2 제 4 항**

형법 제 288 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객체(피해자)는 '부녀'로 한정되어 있어 남자는 본 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행위로 '매매'가 필요한데 매매란 "부녀의 신체를 유상으로 물건과 같이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

취업에 사용할 목적이 존재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부녀매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속된 협박이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폭행의 위협 등의 험악한 분위기로 인하여 보통의 부녀자라면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하기를 단념할 정도의 상태에서 그 신체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 **국외 이송 부녀 매매죄'; 형법 제 299 조**

제 1 항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2 항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죄의 객체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며, 구성요건인 행위는 약취, 유인, 매매이다. 목적으로 "국외 이송 목적"이 부가되었다. 형법 학계는 명문상 규정이 '거주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라고 규정되지 않고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본 조항 목적규정의 의미를 '대한민국 영역 외로 이송할 목적으로' 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송할 목적인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나. 관련 판례

- **'약취유인죄'의 성립을 긍정한 경우**

피고인 1 과 2 는 피해자들을 꾀어 내어 윤락업소에 창녀로 팔아 넘기기 위하여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정을 통한 뒤 피해자들을 순차로 처분하기 위하여 그 중 피해자 1 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뒤 집으로 돌려 보내었으나, 피해자 2 에게는 피해자 1 이 피고인 1 과 함께 부산으로 놀러 갔으니 찾으러 가자고 거짓말로 꾀어, 피고인 2 가 피해자 2 를 부산으로 데려가 같은 달 19. 14:00 경 부산 서구 충무동 소재 여관에 투숙한 사실, 피고인 3 은 그 무렵 위 여관으로 찾아가서는 피고인 2 에게 다짜고짜 돈 95 만원 가져간 것 어떻게 했느냐, 이 아가씨도 공범이지 하는 등으로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한편, 피고인 2 는 위 피해자에게 창녀로 취업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창녀로 취업하기만 하면 선금을 받아낸 뒤 그날 밤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가서는 함께 도망치도록 해 주겠다고 회유하여 위 피해자가 창녀로 취업하는 데 동의하게 하였으며, 이어서 공범 피고인 1 이 나타나 위 피해자를 윤락업소인 충무동 소재 000 에 돈 1,000,000 원을 받고 팔아 넘긴 사실...(중간 생략)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형식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부산까지 따라간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공범 피고인 1 의 기망에 속아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따라간 것이고, 또 부산의 여관에서도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부산까지 데려가서 여관에 들어간 뒤 여럿이 어울려서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창녀로 취업함에 동의케 한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도망의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겨졌다고 볼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1987. 3. 18. 선고 87 노 55 판결]

"18 세(여) 피해자 두명에게 "광주에서 함께 올라가 다방 일을 도와주기만 하면 한 명당 3 개월에 최소한 8,000 만원은 벌게 해준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자신들과 함께 광주로 올라갈 것을 적극적으로 유혹·권유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광주로 갈 것을 마음먹게 한 뒤 승용차에 태워 광주 여관으로 데려오고, "앞으로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고 싶냐, 아니면 단시간에 돈을 많이 벌고 싶냐?"라고 물어 그녀들이 단시간에 돈을 벌고 싶다고 말을 하자 다시 그녀들에게 "내 말만 잘 들으면 많은 돈을 벌게 하여 주겠다. 여관방을 하나 얻어 줄테니 당분간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어라."라고 말을 한 다음 여관 방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영리목적유인 인정. [서울지방법원 2001 고합 1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 **'약취 유인죄'의 성립을 부정한 경우**

유인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감언이설을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기망에 준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유혹이 있고 상대방이 그러한 유혹에 현혹되어 명백히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야 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피해자들은 당시 만 18 세의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이미 3 년 가까이 다방 종업원으로 생활하면서 8 곳 정도의 다방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다방 영업의 생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사실, 3 개월에 8,000 만원을 벌게 해준다거나 혹은 단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지는 않았고, 당시 목포에서의 다방 종업원 생활에 싫증을 느껴 목포를 떠나고 싶은 마음에 쉽게 피고인들을 따라 광주로 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하에 옮겨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02. 4. 12. 선고 2001 노 3042 판결]

피해자는 가출하여 친구와 함께 서울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중 전주에 붙어 있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 경영의 수복정으로 오게 되었는데, 자신들은 18 세이고, 집을 가출하였으며, 주점 등에서 일한 적이 있고, 성경험도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면서 도망하지 말고 오랫동안 일을 하여 달라고 하였고, 다른

피해자는 위 수복정이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들이 있는 수복정에 있는 동안 도망을 못하게 실력을 행사하거나 문을 잠그는 등의 행위는 없었으며, 또 다른 피해자는 서울로 올라와 수복정에서 손님들이 오면 술을 마시고 술자리가 끝나면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을 알고서 취업하기로 하였다는 진술이 있은 사안에서 피해자들은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모두 14 세 내지 16 세에 달하여 모두 그 의사능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함께 지낸 것은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고, 각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있었을 뿐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의 위협이나 기망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서울고등법원 1998. 7. 8. 선고 98 노 1107 영리유인]

(2)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제 18 조 제 3 항 제 3 호)

가. 관련 규정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조**

①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 245 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 3 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 2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 3 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 1 항제 3 호 가목에서 규정한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타인을 고용·감독하는 자,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자 또는 그를 보조하는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우

이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피해자의 국내 유입과정이 '인신매매'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는 그러한 인신매매의 목적이 '성매매'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범죄는 '목적범'에 해당하므로 '성매매 목적'이 현실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매매 목적'이 있기만 하면 성립한다. 즉, 성매매에 종사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인신매매를 한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성매매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외국에서 국내로 데려온 행위 자체로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성매매 목적'이라는 부분의 입증을 위하여, 피해자가 유입된 업소에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매매가 그 업소의 일반적인 영업형태인지, 업소의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지 등에 관해서 입증이 필요하다.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피해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 목적이 실현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죄와 성매매강요죄(또는 성매매알선죄)의 2 개의 범죄가 성립하게 된다.

나. 주요 구성요건

○ 성을 파는 행위 :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하는 행위(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참조)

○ 위계 :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것. 피해자에게 한국에 가서 하게 될 일이 '성산업 종사'라는 것을 숨기고 가수로 공연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속여 한국으로 입국시켰다면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위력 : 형법에서의 '폭행', '협박'보다 좀더 넓은 범위의 강제력 개념. 우리 판례는 '위력'에 관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 도 4818 판결 참조).

3. 현행 인신매매 범죄 규정의 한계

현재 형법 제 31 장에는 '추행.간음.영리 목적의 약취.유인죄'(제 288 조 제 1 항), '부녀매매죄'(제 288 조 제 2 항), '국외이송목적의 약취.유인죄'(제 289 조), '결혼목적의 약취.유인죄'(제 291 조) 등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판례와 형법 학계는 '약취'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그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받는 상태로부터 자신 또는 제 3 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으로 사람을 자신 또는 제 3 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매매'란 '사람의 신체를 유상으로 물건과 같이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세 가지 행위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이다. 이러한 개념은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가 존재하는 한 범죄 성립을 배척시키며, 감금장치에 의한 감금 등과 같이 심각한 정도의 물리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약취·유인죄가 실제 범죄에 적용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부녀 매매죄'의 경우 2005 년 16 건, 2006 년 6 건, 2008 년 5 건, 2009 년 8 월까지 3 건으로 지난 5 년간 30 건이 발생되었으며,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는 지난 5 년간 총 14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이러한 통계 사실은 현행 형법상 약취·유인죄 및 부녀 매매죄가 현실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과거 형성된 판례의 법 해석례가 매우 좁고 엄격하게 범죄 성립을 인정해왔기 때문이다.

4.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2011. 7. 5. 입법 예고된 법무부의 형법개정안

법무부는 2011. 7. 5.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각종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여 인신매매의 처벌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척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기존 형법과 입법 예고된 형법 개정안의 비교]

현행 형법	형법 개정안
제 287 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87 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88 조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①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상습으로 전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2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288 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2 년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는 제 2 항의 형과 같다.

[2] 2009 년 국회 여성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위한 한국의 입법방향」

제 289 조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①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상습으로 전 2 항의 죄를 범한 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289 조 (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자는 2 년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자를 국외로 이송한 자는 제 3 항의 형과 같다.
제 290 조 (예비, 음모) 전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90 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 치상) ① 제 287 조부터 제 289 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 년 이상 2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 287 조부터 제 289 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91 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91 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 치사) ① 제 287 조부터 제 289 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 287 조부터 제 289 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292 조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① 제 288 조 또는 제 289 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 287 조 또는 제 291 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92 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 · 은닉 등) ① 제 287 조부터 제 289 조까지에 따라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 287 조부터 제 289 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자도 제 1 항의 형과 같다.

(2) 형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약취.유인.매매" 구성요건 답습의 한계

"약취.유인.매매" 행위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이다. 이러한 개념은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가 존재하는 한 범죄 성립을 배척시키며, 감금장치에 의한 감금 등과 같이 심각한 정도의 물리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한다. 그로 인하여 최근 위 구성요건이 적용된 범죄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개정안에 '약취.유인'과 '매매'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변화된 시대 환경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 범죄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 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성적 착취" 규정의 모호함

형법 개정안은 제 288 조 제 2 항과 제 289 조 제 3 항에서 "성적 착취"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그러나 "성적 착취"의 개념이 형법상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성희롱 중 무엇을 포함하는지, 나아가 성적 욕망 또는 흥분을 유발할 목적으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게 하거나 접촉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사진.영상물의 촬영 대상으로 삼는 행위까지 포괄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와 같은 불명확한 구성요건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여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달성하기도 어려우며, 실제 발생하는 피해사례에 적용하기도 어려워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다.

다. 수단행위의 다양화 필요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에 의하면 인신매매로 포섭될 수 있는 수단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약취), "기망 또는 유혹"(유인) 정도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범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규범인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 (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이하 '인신매매방지의정서'라 함)는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육체적 폭력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유괴, 사기, 기만, 직권남용 또는 피해자의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기타 금전적 보상이나 이익을 수수하여, 개인을 모집, 이동, 은닉, 또는 인계받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 3 조) 본 정의 규정은 인신매매의 수단을 매우 다양하게 포섭하고 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범죄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형법 개정안에 위 국제규범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수단행위가 추가되어야 한다.

라. 미성년자.장애인 피해에 대한 완화된 구성요건 필요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인신매매 범죄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다. 기존 형법 제 287 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규정은 별도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아도 약취 유인죄가 성립한다는 규정일 뿐, 불법적인 목적은 존재하나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 없이 사람을 인수인계하는 행위에 대한 인신매매 범죄 구성요건은 아니다. 앞서 본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인신매매에 관한 정의규정인 3 조 제 c 항에서 미성년을 착취를 목적으로 모집, 이동, 은닉 또는

인계받는 행위는 어떠한 수단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인신매매범죄가 성립함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형법 개정안에도 불법적인 착취의 목적으로 미성년을 인수·인계하는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수단행위가 없더라도 인신매매 범죄가 구성되도록 별도 조문이 추가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인신매매범죄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만큼 수단을 불문하고 착취 목적으로 인신의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행위를 인신매매범죄로 포섭되어야 한다.

마. 피해자 동의와 인신매매 범죄의 성립

인신매매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존재하더라도 인신매매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도록 명문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국가 간·계층 간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감에 따라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 동의할 정도로 취약한 지위로 전락하는 사람들의 출연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취약한 상황에서 행한 인신매매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취약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았을 의사표시로서 진정한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 상대방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취한 뒤 행한 인신매매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더욱 중한 범죄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인신매매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인신매매 범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항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에 명시적인 규정을 도입해야한다.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또한 불법적인 수단행위가 사용된 이상 착취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인신매매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인신매매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와 수사와 재판에 대한 조력이 필수적이다. 인신매매피해자가 피해를 말하지 않는 한 인신매매범죄 처벌규정은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인신매매피해자, 특히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신고 후 오히려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 현행 규정 중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1 조의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가 전부이다. 동 조에 의한 보호조치의 내용은 외국인 여성이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하는 때에는 검사의 공소제기 전까지, 공소제기 후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강제퇴거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소극적 조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신매매피해자는 수사와 재판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더 이상 한국에서의 체류를 할 수가 없다. 수사와 재판 종료 후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체류자격을 보장하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전무하다시피한 법제도 아래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는 피해를 말할 수 없다.

나아가 인신매매 피해자는 인신매매과정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서류 위변조, 불법적인 입국 등에 대하여 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과 출입국관리법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인신매매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자신이 입은 피해를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신고는 본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수로 불가분하게 연결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외국인인 인신매매피해자는 강제퇴거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신매매피해자의 체류 자격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등을 담은 별도의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과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인신매매피해자를 보호할 수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인신매매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Session 1. 인신매매의 배경과 과제

03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정책

채명숙 사무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과

채명숙 사무관은 2000 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권익지원과, 다문화가족과, 여성인력개발과, 여성정책과, 남녀차별개선과를 두루 거치며 여성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어 왔다. 현재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행정 사무관으로서 성폭력·성매매 방지 대책 추진 및 점검단 운영과 여성아동 안전지표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다.

I.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정책

□ 2004 년 성매매특별법 제정·시행과 함께 정부의 성매매집결지 단속 및 방지 노력에 따라 전업형 성매매업소는 감소되고 있으나 유흥업소 등 겸업형 성매매 산업 및 외국인 여성 등에 의한 성매매는 여전히 성행

○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금년도에 유흥업소 종사자 실태연구,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여성연예인 성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 발굴을 위해 노력

1.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관광업소의 공연을 목적(E-6 비자)으로 입국한 외국인여성, 한국남성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여성 등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

○ 관광업소의 공연을 목적(E-6 비자)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여성 중 일부가 공연기획사 등에 의해 유흥업소에 넘겨져 성매매에 유입
* 연예기획사가 필리핀 여성을 관광업소 공연을 목적으로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에 넘겨 성매매를 알선한 사례 발생 (연합뉴스 '10.11.30)

○ 이주여성이 국내에 입국한 후 본국에 송금할 돈을 손쉽게 마련하는 수단으로 성매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
* 중국 출신의 이주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사례 발생 (뉴시스 '10.7.28)

□ 이주여성 등이 우리사회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고 성매매에 유입될 경우 앞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로 확대·재생산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외국인여성, 이주여성 등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성매매를 줄여 나가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연구기간 : '11.4 월 ~ 11 월

□ 연구내용

○ 관광업소 공연 목적(E-6 비자)으로 입국한 외국인여성 성매매 현황 조사

○ **한국남성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여성 성매매 현황 조사**
- 이주여성 성매매 실태 규모(인원수, 업소수 등)
- 국제결혼을 하게 된 사유, 남편의 나이, 학력, 소득수준 및 거주 지역(도시·농촌) 등 생활환경
- 본국 가족의 경제수준, 질병 등에 따른 부양책임 유무
- 가정불화, 이혼, 생활고 등 성매매 유입의 주요 원인

- 종사업소 유형, 지역별 분포 등 성매매의 특징
- 성매매에 유입된 이주여성의 나이, 결혼기간, 자녀유무, 한국어 능력 등 개인적 특성

○ **외국인여성, 이주여성의 성매매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 공연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 외국인 E-6 비자발급 관련 법령 개정 등 정비 방안
- 공연기획사, 관광업소의 성매매 강요, 인권 침해 등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마련 등 방지방안 마련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자발급 등 예술 흥행 목적의 E-6 비자 발급절차 개선 방안
- 국제결혼 이주여성 등의 특성을 반영한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지원 정책 등

2. 유흥업소 유흥종사자 실태연구

□ 현행 유흥주점영업인 경우 유흥종사자를 접객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합법화되어 있어 성매매 유입 및 확산의 주요경로로 악용
※ 일반유흥주점업 56.5%, 무도유흥주점업 53.8%의 유흥종사자가 성매매로 유입(2010 성매매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로의 수요 및 유입을 차단.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유흥종사자 규정* 개정 등 대안 마련 필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2 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

≪ 유흥종사자 규정 관련 정책동향 ≫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개정안('99.5 월)
- 남자접대부 고용금지, 위반 땐 최고 징역 1 년
☞ 여성계, 남녀평등정신에 위배된다고 이의 제기하여 백지화

◇ 청주지법 형사 4 단독 판결('08.9.1)
- 식품위생법상 유흥종사자를 부녀자로 규정하고 있어, 남성접대부 고용에 대한 업주의 죄를 물을 수 없음

◇ 김태원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11.3.31)
- 식품위생법 제 2 조 정의에 유흥종사자 정의* 삽의
*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을 말함

◇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보류('11.4.12)
- 남성접대부의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
☞ 호스트바 양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국무회의 상정 보류

□ 연구기간 : '11.7월 ~ 12월

□ 연구내용

○ 식품위생법의 유흥종사자 관련 규정 개정 내용, 배경 등 분석
- 이전의 법령 개정안 및 주요 쟁점 분석
- 최근 발의 또는 논의 중인 유흥종사자 관련 규정의 배경 및 여론 분석

○ 해외 주요국(미국, 일본 등)의 유흥종사자 관련 법규정, 합법화 여부, 관리체계 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유흥업소 및 유흥종사자 현황, 관리체계 등 분석
- 유흥업소에 대한 허가 절차,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유흥종사자 관리 등 분석
- 서울시 강남구 사례조사:
  강남구 유흥업소 및 유흥종사자 현황, 관리체계(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 행정처분, 종사자 관리 등), 단속현황 등

○ 유흥종사자 관련 대국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유흥종사자 관련 법규정 개정안 도출
- 기초적 자료 분석,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유흥종사자의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의 법률 개정안 도출
- 도출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핵심 쟁점사항 분석 및 이론적 대응 논리 발굴

3. 여성연예인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 최근 공직자에 대한 성접대, 연예인에 대한 성접대 강요 등 여성의 성이 상납의 대상으로 도구화되는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

○ 2010 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351 명중 여성연기자 45.3%가 술시중을 요구받았으며 60.2%가 성접대를 제의받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 연예인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 연예인 성접대 강요는 성인 연예인에서 청소년 연예인까지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어 성착취 및 성접대 근절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근거 연구가 필요

□ 성접대* 및 성접대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처벌법 제정 등 실효적 후속 절차 마련을 위한 입법 제정방안 강구 필요

*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5 호, '11.10.1 시행)

** 여성가족부 장관은 3 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동법률 제 3 조의 2 제 1 항, '11.10.1 시행)

□ 연구기간 : '11 년 8 월~12 월

□ 연구내용
- ○ 여성연예인 성착취 및 성접대 개념 정의
- ○ 여성연예인의 성착취 유형 분석
- ○ 국내 관련법 분석 및 여성연예인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제·개정 방안 마련

4. 「성접대 피해사례 접수처」 운영

□ 여성가족부는 성접대 피해를 막고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성접대 피해사례 접수처을 운영하고 있음.

○ 접수방법
- - 홈페이지(팝업창)에 「성접대 피해사례 접수처」 개설·운영

○ 접수자
- -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사례를 알고 있는 자 모두 접수 가능
- - 실명인증* 후 최소한의 정보(전화번호) 기재만으로 접수 가능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 조의 5

○ 접수내용
- - 성접대* 피해사례
  - *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말함

○ 접수기간
- - '11. 7 ~ 10 월 (3 개월)

○ 처리방안
- - 사례 검토 후 수사 필요사안은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수사·처리 요청
- - 그 외 사례는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Ⅱ.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피해 여성의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하여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훈련,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현황 (11. 6 월 현재)

구분 / 계	일반	청소년	외국인	그룹홈	자활지원 센터	*상담소
88 개소	27	14	1	11	9	26

* 집결지 사업(현장기능강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열린터 9 개소 운영

○ 지원내용

- 숙식의 제공, 의료·법률·직업훈련 등 구조지원사업

구분	사업 내용
의료지원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의료항목 의료비
법률지원	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기타법적 문제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
직업훈련	취업·창업 등의 준비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 수강료 및 직업훈련수당 (월 20 만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심신의 안정과 치유, 동기부여, 강의(학습) 등

☞ 1 인당 3 년 동안 760 만원 지원 (필요시 추가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거 기초생계비 지원
- 일자리 제공사업

구분	공동작업장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기간	3 년	1 년
지 원 액	· 참여자 지원금 : 740,600 원 · 부양자녀수당 300,000 원 추가지원 · 수익 배분액 + α	· 참여자 지원금 : 740,600 원 · 부양자녀수당 300,000 원 추가지원 · 수익 배분액 + α
참여인원	센터별 10~30 명 이내	공동작업장과 통합 운영
참여직종	영상의힘'w'미디어, 핸드메이드, 분식집, 목공예, 아로마테라피스트, 도자기, 홈패션, 한지공예, 천년아트,	병원, 요가원, 판매직, 헤어미용실, 한국종합예술학교, 바리스타, 피부관리실, 제빵원, 공방

참고 미 국무부「2011 인신매매 보고서」

□ 「2011 인신매매보고서」개요

○ **한국** '01 년 3 등급(최하)을 받은 이후, **'02 년 이후 10 년 연속 1 등급 평가**
- 실행(Prosecution), 보호(Protection), 예방(Prevention) 측면에서 한국정부의 **반인신매매 노력(성매매에 집중) 인정**

○ 2000 년 제정된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법(TVPA: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 의거 국가별 등급 부여
※ 해당국가의 인신매매피해자 규모보다는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중점을 두어 국가별 등급 배치**

○ 조사기간 : 2010. 4 - 2011. 3 ('11.6.27 발표)

○ 인신매매 유형
- 성착취, 강제노동, 이주노동자에 의한 채무노동, 아동성착취, 강제아동노동 등

□ 우리나라 성매매 관련 사항

<상황 평가>

○ 한국은 강제노동 및 여성·소녀들에 대한 상업적 성 착취의 공급국가이고 경유지이며 최종 목적지임.
- 동남아 국가 등에서 한국 내 취업 및 국제결혼 위해 모집된 인력들이 강제 노동과 성매매에 동원되는 경우가 있음.
- 여성들이 연예비자로 입국하였다가 성매매의 피해자가 되며, 결혼이민자들이 강제노동이나 성매매에 동원되기도 함.
- 청소년의 성매매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상당수의 상업적 청소년 성매매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음
-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며 NGO 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력을 시행해 나가고 있음.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의 자원을 배정하고 있으며 법집행 공무원 등에게 인신매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 인신매매 조사와 관련한 정부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함.

<예방 노력>

○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으나성매매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과 관련한 학습자료와 아동보호 프로그램(Youth Keeper)를 개발·배포하였고,
- 77 개의 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가출 청소년들이 상업적 성매매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권고사항〉

- 인신매매를 정의하고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해야 함.
- 인신매매 가해자 관련 조사, 기소 및 유죄입증에 대한 노력을 증대해야 함.
-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 피해자 파악을 위한 절차를 개발·이행해야 함.
- 가해자 조사 및 기소에 피해자들의 참여를 승인해야 함.
- 아동성매매 해외관광을 방지하지 위한 인식증진 및 관련 행위자 기소를 위한 법적 조치 시행 등의 노력을 해야 함.

〈TVPA 기준에 따른 주요 국가등급 〉

구분	1 등급(Tier 1)	2 등급(Tier 2)	주의 2 등급 (Tier 2 Watch List)	3 등급(Tier 3)
기준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분히 따르고 있는 국가	최소한의 기준을 충분히 따르지는 않지만 그 기준에 따라 뚜렷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	2 등급 중 몇몇 인신매매 유형의 피해자 수가 매우 많거나 증가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정부의 노력이 향후 추가적 조치 약속인 경우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따르지도 않고 뚜렷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경우
주요 국가 (2011)	**한국**, 영국, 호주, 독일,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벨기에, 미국, 타이완 등	일본, 홍콩, 캄보디아, 이집트, 인도, 터키, 싱가포르, 필리핀, 멕시코, 칠레, 스위스, 아르헨티나 등	중국, 러시아,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몰디브, 탄자니아 등	**북한**, 이란,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파푸아뉴기니, 사우디아라비아, 콩고, 쿠바 등

※ '11 년도 총 180 개 국가 : 1 등급 32 개, 2 등급 85 개, 주의 2 등급 40 개, 3 등급 23 개
'10 년도 177 개 국가 : 1 등급 30 개, 2 등급 76 개, 주의 2 등급 58 개, 3 등

Workshop on Shelter Management and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쉼터 관리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한 워크숍

세션 2.
쉼터행정

Session 2. 쉼터 행정

01 한국의 쉼터의 실태와 과제

박수미 소장|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박수미 소장은 2005 년부터 의정부 두레방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센터에서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에게 직접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2008 년부터는 동 기관 상담실장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 왔다. 현재 2009 년 7 월 생긴 평택 두레방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의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실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단체나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콜센터, 또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 단체를 통해 접수된 상담 및 지원 사례들을 통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언급된 단체들 역시, 한국 정부가 미처 수립하지 못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의 부재 현실** 속에서 매우 제한적인 활동을 했거나 미비한 성과를 나타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 짐작한다.

본 시설 역시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라는 성매매 방지법 보호 대상, 즉 '성착취, 성매매 강요' 등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성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외국인 피해자들의 지원 경험을 통해 한국 쉼터의 문제적인 실태를 보고하고,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1. 한국 쉼터의 문제적인 상황에 대하여

1) 쉼터에게 가중되는 상담소 역할

국내 최초, 유일의 외국인 전담 시설인 본 쉼터의 활동은 단순히 피해자를 보호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정도의 활동에 그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민간과 정부 지원의 단체를 통틀어서 인신매매 사건을 전담하는 상담소는 물론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본 시설 설립이 기획되던 당시에도 상담소, 자활지원센터 등이 통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별도의 충분한 공간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부처와 지방 정부는 외국인 피해자들의 수요가 매우 희박할 것으로 예상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 입소 대상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할만한 대상이라고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2) 내국인 위주의 시설 기준, 소외되는 외국인 피해자와 지원 쉼터

즉, 국내의 외국인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자활, 자립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었다. 또 한편 외국인이라는 특수한 대상에 대한 고려 부족, 특성있는 서비스 및 시스템을 시도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모든 기준과 내용들이 내국인 대상의 일반적인 시설 기준에 맞춰 '전형적인 숙식 제공 공간'인 최소한의 쉼터 운영에만 한국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3) 빈번한 직접 지원으로 위협받는 쉼터 안전 문제

쉼터는 수사 기관이나 관련 상담소를 통해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지만, 한국 수사, 사법 기관을 통틀어 인신매매 처벌 및 기소율은 매우 희박한 통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초창기 본 쉼터에서는 수사 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피해자들과 접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 아웃리치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담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이 생겨났고, 내방이 필요한 내담자들에게 쉼터에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본 쉼터는 현장 지역이 있는 도시에 위치해 있어 신속하고 밀접하게 잠재적 피해자들을 직접 접촉할 수 있었으며, 지원 역시 효과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피해자들의 법적 지원이 왕성해질수록, 시설의 위치나 관련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사건 진행과 직, 간접적으로 관계있는 기관 담당자들의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의식 부족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정책이 각 행정 절차 속에서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피해자들의 쉼터 입소 및 사건 개입 기피 문제

1) 피해자들의 사건 의지 약화의 원인

아래 표는 본 시설의 지난 입소자 현황을 나타낸다.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3 개월 동안 입소할 수 있다. 단, 수사와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만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하여 쉼터에 거주할 수 있다. 본 시설에서 가장 오랫동안 입소하고 있는 경우는 1 년 6 개월이 넘은 경우이며, 2009 년 10 월에 소송을 제기한 후 귀국했다가 올해 초 증인으로 소환 요청하여 한국에 재입국, 쉼터에 재입소한 특수한 사례도 있다.

- 입소/이용 현황 : 처음 입소, 이용 시작 기점 기준

	2009 년(7~12 월)	2010 년(1~12 월)	2011 년(1~7 월)
입소자 (명)	19	19	6
이용자 (명)	8	11	10

- 형사 소송 제기 현황

	2009 년(7~12 월)	2010 년(1~12 월)	2011 년(1~7 월)
입소자 (명)	7	6	2

본 시설에서 지원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성매매 등 성착취를 당한 사례들이다. 그 외 결혼, 관광 자격으로 입국하여 성매매 업소로 인계되어 쉼터에 입소하는 사례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후자의 경우, 대부분 업소 단속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경찰이 피해자들에게 쉼터 입소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우는 구조 및 단속 과정에서 인권, 여성 단체가 개입한 경우이거나 피해자들의 체류 자격이 남아 있는 경우였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본 시설에서도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어, 피해자를 설득하여 조사 기간 동안 쉼터에 입소할 것을 설득하고자 노력한 경험이 있다. 결국, 모든 피해자들이 '쉼터 대신 귀국'을 결정했다. 피해자들에게 쉼터를 권유하면서 느꼈던 점은, 수사 협조를 명목으로 또 한번 이들에게 낯선 공간에 적응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간혹, 사건 수사에 의지가 있는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어도 그들이 쉼터 입소 후 피해자를 위한 체류 자격을 얻게 되면, 취업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할 때가 가장 곤혹스럽다.

한국 정부는 쉼터에 입소한 피해자들이라면 당연히 소송을 위해서만 체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피해자들 역시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건강한 노동을 통해 소득이 챙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요컨대, 현재 한국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 외국인 피해자들이 감수해야 할 것은 (1) 소송이나 수사에

협조할 것과 (2) 취업할 수 없는 제한적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진정,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명목으로 세워진 지원 체계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별히 외국인 피해자들의 경우, 내국인과는 차별적인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정책 마련과 외국인 정책 담당 부처와의 소통, 관련 담당 부처들간의 통합적, 연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2) 대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쉼터 환경

또 한편, 피해자들이 쉼터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쉼터의 엄격한 규제와 공동 생활의 불편함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에게는 **타국에서 지내는 쉼터가 더 없이 부담스러운 공간**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국가 언어가 지원될 수 없는 쉼터**라면, 피해자는 불편하고 무료한 생활로 인해 더욱 답답할 것이다. 본 시설 역시 다수의 입소자의 언어 지원을 위해 3 명의 직원 중 한 사람을 해당 국가 사람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쉼터에는 타국가 입소자들과 내담자들이 존재한다.

특히 외국인 쉼터는 모든 서비스 진행을 위해 통역을 동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국인 기준에 맞춰 쉼터 실무자들을 인원에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외국인 쉼터의 특성 맞춰 입소자들의 다양한 언어를 지원할 수 있는 통역 상담원 채용 등 (유연성 있는) 구체적인 관리 기준과 충분한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3) 피해자들의 입소 후 안전 관리

또 한편, 쉼터에 입소한 경우에도, 입소 이후 성매매, 인신매매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온갖 관계자들의 연락과 협박에 피해자들은 매일 같이 시달린다. 단순히 연락처를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이와 같은 시달림을 피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당장 연락을 회피한다고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갈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특히 피해자들은 스스로 신고했거나 고소했을 때는 물론, 수사 기관을 통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버젓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험을 통해 **한국 수사 기관의 무능함, 부패함, 또는 불신에서 비롯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4) 범죄자 처벌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실천 요청

현재 본 시설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형사 소송 역시, 검찰이나 법원에서 인신매매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성매매 문제로만 치부하여, 인신매매 범죄 연루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해당 업소의 업주들에게는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채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3. 피해자에 대한 안전하고 충분한 사회적 지위 인정 시급

본 시설에 입소한 여성들은 입소 후 자신이 소지했던 체류 자격을 포기하고, 소송 목적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것은 취업이 불가능하고, 전적으로 체류만 가능한 자격이다. 따라서, 당장 숙식 장소가 필요한 피해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쉼터에서 잠깐 거주하다가 빠른 시일 안에 일자리를 찾고, 퇴소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출입국이나 본 쉼터의 지침 역시, 소송 등의 법률 절차를 조건으로 입소 또는 체류 기간 연장을 허락받을 수 있다. 인신매매 범죄자들 역시 피해자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한국에서 도움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지배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세뇌시키며, 소송 중에 피해자가 스스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수사가 도중에 중지되도록 방해하기도 한다.

4. 쉼터에 대한 공신력 부족

대질 조사나 재판 과정 속에서 피의자들, 심지어 경찰, 검찰, 법집행 기관으로부터 쉼터가 공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건 실적을 통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얻거나 어떤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의심받는 것이다.

쉼터의 ‘비전문성’,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제약성 때문에 가지는 ‘투명하지 않거나 폐쇄적인 활동 방식’ 등 쉼터를 전문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존의 편견과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지원 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담당 부처는, 관련 쉼터가 각 관계 부처 및 수사 기관, 검찰, 법집행 기관으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쉼터가 각 관련 기관과 파트너십을 이루며,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데 최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충하고, 실무 환경을 개선시켜 주어야 한다.

5. 입소 대상에 맞는 전문적, 특수적인 서비스 제공 부족

현재 한국 정부는 본 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의료 지원
- 법률 지원
-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 : ‘취업.창업 등의 진학을 위한’ 학원 수강료 및 수당 (월 20 만원 이내)
- 치료, 회복 프로그램 지원 :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치료 캠프 진행비용
- 귀국 지원 : 항공권 제공
- 통역 지원 : 필수 사업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통역 전문 상담원을 채용,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이 제공되지 않음.

Session 2. 쉼터 행정

02 쉼터의 운영과 기능: PAYOKE 의 경험

Patsy SÖRENSEN | 벨기에 인신매매 센터 PAYOKE 소장

Patsy Sörensen 은 Antwerp 에 본부를 두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인 Payoke 인신매매 센터의 설립자이자 책임자(소장)이다. 시의회 의원과 유럽 연합 의회의 의원을 지냈으며,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신매매 전문가로서 유럽연합 인신매매 전문가 그룹에 일원인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쉼터의 운영과 기능

기본적인 고려 사항

Patsy Sörensen
Director, Payoke 센터

개요

- 쉼터의 우선순위 정하기
- 쉼터 입소 희망자의 주된 관심사 및 필요사항
- 피해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안
- 당면한 문제와 이에 대한 접근/극복 방안

쉼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까?

◆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

- ❖ 피해자가 쉼터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
- ❖ 피해자가 쉼터에서 편히 지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 ❖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 피해자가 쉼터에서 퇴소 이후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을 준비하는 동안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가?
- ❖ 피해자의 회복과정에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

쉼터 입소 희망자의 주된 우려 사항

상황의 위험성	재정적 상황	감정적 상태
• 내가 머물 수 있는가? 추방당하는 것은 아닌가? • 이곳에서 내 힘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 내가 도움을 구한다는 사실을 인신매매자가 알아내진 않을까? • 내가 직업을 구할 수 있을까? •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 내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 • 내 아이들은 안전할까?	• 인신매매자에게 진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가? • 내가 돈을 벌지 않는데 고향에 있는 내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 직업을 갖지 않은 채로 어떻게 내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가? • 어떻게 새로운 직업을 구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	• 앞으로 계속해서 내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 고향에 있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 새로운 시작을 할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내 책임일까? • 내가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 이곳에서 있던 일을 가족에게 어떻게 말할까? • 내가 과연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가족의 안전	**본인의 안전**	**건강 상태**
• 인신매매자가 내 가족을 찾지는 않을까? • 인신매매자가 내 가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 인신매매자가 내 아이(들)을 다치게 하진 않을까? • 인신매매자가 내 가족에게 보복하는 것은 아닐까?	• 인신매매자가 나를 발견하지는 않을까? • 내가 두려움 없이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을까? • 만약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나의 소재지를 인신매매자에게 알린다면 ? • 내가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신매매자가 알게 되면 나와 함께 일한 동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 인신매매자가 내 아이들을 납치한다면? • 쉼터에 있는 동안 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경찰이 나를 보호해 줄까? •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까?	• HIV검사를 받아야만 하는가? • 만일 HIV 양성일 경우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는가? • 만일 HIV 양성일 경우 나는 추방당하는 것인가? • 내 질병을 고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만성/급성 질병인 경우) •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피해자는 무엇이 필요한가?

- 정보
- 의료 지원
- 지원 체계
- 신뢰감
- 안전
- 심리적 평안과 안정감
- 존중
- 미래지향적 관점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Shelter Management and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10-11 August 2011
The Plaza Hotel, Seoul, Republic of Korea
5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관한 역할

- 지원 제공자
- 가까운 친구
- 대변인
- 교육자
- 협력적 네트워크 및 파트너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Shelter Management and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10-11 August 2011
The Plaza Hotel, Seoul, Republic of Korea
6

피해자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다.
  (상담 계약)
- 보안이 확실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규칙 수립)
- 역량 강화 및 자신감을 강조하는 체계를 고안한다.
  (활동 일정)
- 평화롭고 조용하고 안정적이며, 상호 존중하는 환경을 만든다.
  (집단 생활)
- 피해자의 안전에 중점을 두는 구조를 만든다.
  (적합한 직원 채용)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피해자 동의 얻기: 상담 계약

계약에 포함되는 사항:

- 계약서에 서명하는 당사자
- 계약서가 근거하는 법 조항
- 계약의 조건
- 피해자가 지원받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근거에 관한 진술
- 기관의 책임 (지원 제공자가 할 일)
- 피해자 준수 사항 (피해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 계약의 종료 사유
- 특별조항
- 계약 기간
- 날짜 및 서명
- 행정 절차 정보 (계약서 사본의 수; 번역/통역)

보안이 확실하고 안전한 환경의 조성: 쉼터의 규칙 수립

좋은 규칙은 …	나쁜 규칙은 …
• 예상되는 행동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세운다. • 거주자들이 지켜야 하는 체계를 규정한다. • 업무를 명확히 한다. • 책임감을 기른다. • 지나치게 통제하지 않는 체계를 만든다. • 일일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와준다. • 원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야기될 결과를 명시한다. •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경우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 개개인의 필요를 수용할 만큼 유연하다. (물론 명확한 경계를 가진다.)	• 인권을 침해한다. • 피해자가 감금된 듯한 느낌 혹은 그들이 이전에 겪었던 상황과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한다. • 피해자의 특수한 필요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 • 특정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세운다. (너무 비현실적이거나 제한된 경우) • 피해자가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끼게 만든다. (지나치게 통제적인 경우) • 지나치게 상세하고 복잡하다. • 피해자의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다른 쉼터 거주자들을 존중하는 법 (소음, 조명, 사생활)
◆ 흡연, 음주, 마약 복용에 관한 방침
◆ 방 배정 및 청소
◆ 보안 문제 (자물쇠, 문 번호, 위치에 관한 비밀 엄수)
◆ 전화 사용 (장소 및 시간)
◆ 해야 할 일 및 요구사항
◆ 쉼터 활동 및 필요 요건
◆ 학교 생활 및 필요 요건
◆ 약속 사항/회의
◆ 식사 (시각, 요구사항)
◆ 쉼터 소등 시간
◆ 통금 시간
◆ 여가 시간/주말
◆ 긴급 지원 연락처
◆ 원칙을 어겼을 시에 야기될 결과 (원칙을 어겨 쉼터에서 퇴소 당한 사람들; 더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원칙)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도 있다:

◆ 쉼터의 목적과 목표를 강조하는 내용의 쉼터 소개
◆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동안 그들에게 기대되는 사항 (독립적인 생활의 목표, 자신감과 기술의 개발 등)
◆ 직원들의 업무 시간과 역할에 대한 간단한 소개
◆ 주간 활동 계획에 대한 예시
◆ 쉼터에 처음 입소 후 몇 일 간 의 일과에 대한 설명. 피해자들이 처음 입소한 후 며칠 동안은 자고, 쉬면서 그들의 새로운 생활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에 위의 규칙들을 지키도록 당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량강화 및 자신감을 강조하는 체계의 고안: 쉼터 활동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09h	기상 시간						
10h					청소시간		
11h							
12h							
13h	점심 식사						
14h		활동		네덜란드어 수업			
15h			집단 모임				
16h			운동				
17h							
18h	저녁 식사						

평화롭고, 조용하고, 안정적이며 상호존중 하는 환경의 조성: 피해자들이 집단 생활에서 당면할 수 있는 어려움

- 서로 다른 언어 를 사용하는 문화권의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함
-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하는 분위기 (집단보다 개인을 중요시하는 문화권에서 옴)
-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야 함
- 불확실한 미래
- 정신적 외상과 과거의 경험을 극복해야 함
- 갑작스럽게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됨
- 타인과 물리적으로 가깝게 살아야 함 (공간을 공유)
- 자녀가 있는 경우, 그들에 대한 우려
- 사생활을 보장받기 원함
- 타인과 어울려 지내기
- 쉼터의 원칙에 따라야 함
- 다른 거주자나 직원과 갈등을 겪음
- 집안 일이나 기타 잡일을 해야 함
- 개인적이든 문화적이든 거주자 간에 서로 다른 음식 취향을 가짐
- 개인적 위생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짐
- 다른 사람을 불신함
- 쉼터 내의 타인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함
- 쉼터에서 지내기를 원하지 않음
- 인신매매자/착취자와 너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예. 사랑에 빠짐) 그들에게 되돌아가기를 원함
- 현재 돈이 없어 빠른 시일 내에 미래를 위해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못함
- 언어 장벽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함

집단 생활을 최대한 활용하기

- 학습을 위해 집단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 의사소통을 증진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 다른 문화를 존중한다.
- 집단은 즉각적으로나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 쉼터 내의 모임을 안전 의식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활용한다.
- 피해자들에 대해 신뢰를 가진다.
- 피해자들의 사생활 보장에 대한 필요를 인지한다.
- 갈등을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다.

모임을 위한 쉼터 조직의 형성: 적합한 직원의 채용

- 주요 자격 조건을 명시
- 조건에 “꼭 맞는” 직원 채용
- 믿을 만한 통역사 채용
- 알맞은 자원봉사자와 인턴 채용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할 때 겪는 어려움

- 기만, 거짓말
- 경험담을 공유할 만한 피해자의 능력 부재
-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지하는 능력 부재
- 문화간 소통 부족
- 특수한 필요를 가진 피해자
- 신뢰 얻기
- 경계 정하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 피해자를 한 개인으로 접근하기
- 업무를 계약 조건하에서 생각하기
- 문제해결 능력 키우기
-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기
-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질의 응답

Shelter Management and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쉼터 관리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한 워크숍

Session 2. Shelter Administration

02 OPERATION & FUNCTIONING OF THE SHELTER: BASIC CONSIDERATION

Patsy SÖRENSEN | 벨기에 인신매매 센터 PAYOKE 소장

Patsy Sörensen 은 Antwerp 에 본부를 두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인 Payoke 인신매매 센터의 설립자이자 책임자(소장)이다. 시의회 의원과 유럽 연합 의회의 의원을 지냈으며,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신매매 전문가로서 유럽연합 인신매매 전문가 그룹에 일원인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Operation & Functioning of the Shelter: Basic Considerations

Patsy Sörensen
Director, Payoke NGO

What We Will Discuss

- Determining shelter priorities
- Primary concerns and needs of shelter clients
- How we meet client needs
- Difficulties we face and how we approach / overcome them

How Do You Determine Shelter Priorities?

- By asking yourselves the following questions:
  - What must we provide our clients when they first arrive at the shelter?
  - What will our clients need to live comfortably at the shelter?
  - What can we do to protect our clients?
  - What can we do while our clients at the shelter to prepare them for independent living?
  - What should we offer to assist our clients in starting their process of recovery?

Key Concerns of Shelter Clients

Insecurity of their situation	Financial situation	Their emotional state
• *Will I be able to stay? Will I be deported?* • *Will I be free to live here on my own?* • *Will my trafficker find out I am seeking assistance?* • *Will I be able to find a job?* • *Will I ever get over this?* • *Will I be able to make it on my own?* • *Will my children be alright?*	• *How can I pay back my debt to the traffickers?* • *How will my family at home get by without me making money?* • *How can I afford to live on my own without a good paying job?* • *How will I find a job so that I can start making money?*	• *Will I ever be able to move on with my life?* • *Will I have the confidence needed to start a new life?* • *Will I ever be able to see my family at home again?* • *Am I worthy of a new start?* • *Am I responsible for this situation?* • *How could I have been so stupid?* • *How can I ever tell my family what happened?* • *Will I ever be able to trust people again?*
Safety of family	**Their safety**	**Medical conditions**
• *Will my trafficker find my family?* • *Will my trafficker force my family to pay the debt?* • *Will my trafficker hurt my child/ren?* • *Will my trafficker retaliate against my family?*	• *Will my trafficker find me?* • *Will I be able to walk around the city without fear?* • *What if someone recognises me and tells my trafficker where I am?* • *What will happen to the other people I worked with if my trafficker finds out I got assistance?* • *Will the trafficker be able to get to my children?* • *Will I have protection while at the shelter?* • *Will the police protect me?* • *Is someone available to help me when I need it?*	• *Will I have to get an HIV test?* • *Will I have to tell people if I am HIV positive?* • *Will I be deported if I am HIV positive?* • *Where do I go to get my illness treated? (if terminally/chronically ill)* • *Will I be able to have children?*

What Do Victims Need?

- Information
- Medical assistance
- Structure
- Feeling of trust
- Safety
- Peace and quiet
- Respect
- Future perspective

What Roles We Play in Victim Support and Protection?

- Assistance Provider
- Confidant
- Advocate
- Educator
- Networker and partnership-builder

How Do We Meet Victim Needs?

- Providing clear information and gaining client agreement (counseling agreement)
- Creating a secure and safe environment (establishing rules)
- Creating a structure that emphasizes skills building and self-sufficiency (activity schedule)
-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ensures peace, quiet and mutual respect (group living)
- Establishing our own structure that focuses on client safety (hiring the right staff)

Gaining Client Consent for Protection and Support: The Counseling Agreement

What the Agreement covers:

- The parties between whom the agreement is signed
- The law to which the agreement refers
- The conditions of the agreement
- Statement about reasons for assuming the person is eligible for assistance
- The commitments of your organization (what you will do)
- The commitments of the client (what your client must do)
- Reasons for terminating the contract
- Special clauses
- Agreement duration
- Date and signature
- Administrative information (number of copies; translation/interpretation)

Creating a Secure and Safe Environment: Establishing Shelter Rules

Good Rules	Bad Rules
• *Set ground rules for expected behaviours* • *Provide a framework upon which all residents must abide* • *Clarify tasks* • *Build responsibility* • *Create structure (but one that is not overly restrictive)* • *Assist in daily planning* • *Clarify the consequences if a rule is violated* • *Offer alternatives if rules are broken* • *Are flexible enough to accommodate for individual needs (but have clear boundaries)*	• *Violate human rights* • *Make clients feel imprisoned or in situations similar to their previous experiences* • *Not address specific needs (if too rigid)* • *Make certain goals unachievable (if unrealistic or too restrictive)* • *Make a client feel he/she has no control over aspects of his/her own life (if they are too controlling)* • *Be too detailed and complex* • *Not allow room for clients to make mistakes*

What to Include in Rules

- Ways to show respect to other shelter residents (noise, lights, privacy)
- Policies on smoking, drinking alcohol, drug taking
- Room allocation and cleaning
- Security issues (locks, door codes, maintaining secrecy of location)
- Use of phones (when, where)
- Chores and expectations
- Shelter activities and requirements
- School and requirements
- Appointments/meetings
- Meals (times, expectations)
- Shelter "lights out" time
- Curfews
- Free time/weekends
- Emergency numbers
- Consequences of breaking rules (how many broken before being asked to leave; rules that carry heavier penalties)

You may also consider including:

- An introduction to your shelter, highlighting its purpose and objectives
- Your expectations for clients during their stay (goal of independent living, development of confidence, skills, etc.)
- An introduction to the staff with a brief description of their roles and days of the week/shifts they work
- An example of a weekly task schedule
- A description of the first few days at the shelter. You may wish to consider having the rules start for new house residents after they have had a few days to sleep, rest, and get used to their new living situation.

Creating a Structure That Emphasizes Skills Building/Self-Sufficiency: Shelter Activities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09h	*Wake Up Time*						
10h					Cleaning		
11h							
12h							
13h	*Lunch*						
14h		Activity		Dutch Class			
15h			Group Meeting				
16h			Sport				
17h							
18h	*Dinner*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Ensures Peace, Quiet and Mutual Respect: Difficulties Clients May Be Facing in Group Living

- *Having to live with people (strangers) of different languages, cultures*
- *Being from a culture that emphasizes individuality over the group*
- *Living in fear*
- *Being unsure of the future*
- *Recovering from trauma and past experiences*
- *Being suddenly thrust into a new environment*
- *Living so closely to others (sharing room)*
- *If they have children, worrying about their needs*
- *Finding privacy*
- *Getting along with others*
- *Complying with shelter rules*
- *Getting into conflicts with other residents or staff*
- *Doing the housework and chores*
- *Having different food preferences (either personal or cultural)*
- *Having different attitudes toward personal hygiene*
- *Mistrusting others*
- *Measuring selves against others in shelter*
- *Not wanting to live in the shelter*
- *Being in love with their traffickers/exploiters and wanting to return to them*
- *Having no money and not seeing the prospect of having it soon*
- *Not understanding the others (language barriers)*

Making the Most of Group Living

-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group for learning
- Work toward finding ways to increase communication
- Respect different cultures
- Be aware that groups do not form immediately or automatically
- Use house meetings as a way to create a sense of safety
- Have faith in clients
- Recognize clients' need for privacy
- Find effective ways to deal with conflict

Establishing Shelter Structure for Meeting Needs: Hiring the Right Staff

- Identifying key qualifications
- Finding the right "fit"
- Finding trustworthy interpreters
- Finding good volunteers and interns

Difficulties We Face When Working with Victims of Trafficking

- Lies
- Inability of victims to share stories
- Inability to see selves as victims
- Cross-cultural communication
- Clients with special needs
- Gaining trust
- Establishing boundaries

How We Overcome Difficulties?

- Think of the individual
- Think of work in contractual terms
- Develop a problem-solving mentality
- Think prevention
- Think realistically

Questions

Shelter Management and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쉼터 관리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한 워크숍

Session 2. 쉼터 행정

03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할 때의 윤리적 기준

Patsy SÖRENSEN | 벨기에 인신매매 센터 PAYOKE 소장

Patsy Sörensen 은 Antwerp 에 본부를 두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인 Payoke 인신매매 센터의 설립자이자 책임자(소장)이다. 시의회 의원과 유럽 연합 의회의 의원을 지냈으며,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신매매 전문가로서 유럽연합 인신매매 전문가 그룹에 일원인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시 필요한 윤리적 규범

Patsy Sörensen
Director, Payoke 센터

의제

- 쉼터 환경에서 피해자의 우선순위와 필요 사항 검토하기
-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윤리적 대우의 핵심 개념 이해하기
- 쉼터의 행동 강령을 구성하는 주요 원칙 확인하기
- 이러한 원칙이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 지역사회, 쉼터 지원 제공자, 연계 기관 및 정부에게 적용되는 지에 관해 분석하기
- 쉼터 행동 강령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다음 단계 결정하기

피해자들의 우선순위와 필요사항

- 피해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 필요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나?
- 필요사항을 충족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피해자를 대할 때 어떤 윤리적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
- 지원 제공자에게 윤리적 행동란 어떤 의미인가?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Shelter Management and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10-11 August 2011
The Plaza Hotel, Seoul, Republic of Korea

3

피해자의 주요 관심사 (복습)

상황의 위험성	재정적 상황	감정적 상태
가족의 안전	본인의 안전	건강 상태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Shelter Management and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10-11 August 2011
The Plaza Hotel, Seoul, Republic of Korea

4

윤리적 행동이란 무엇인가?

-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는 것
- 비밀을 보장하고 유지하는 것
-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
- 정직하고 진실된 것
-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와 타협하여 가담하지 않는 것
- 쉼터와 지원 제공자가 피해자를 추가적인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것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Shelter Management and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10-11 August 2011
The Plaza Hotel, Seoul, Republic of Korea
5

어떤 사람이 윤리적인가?

-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
  - 자아성찰적
    윤리적 대우를 보장하는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편견이나 비판 없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사람
  - 자기비판적
    행동을 분석하고, "옳은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갖는 사람
  - 자기인식적
    한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비밀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강직·성실·청렴하게 사는 사람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Shelter Management and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10-11 August 2011
The Plaza Hotel, Seoul, Republic of Korea
6

윤리적 직장이란 무엇인가?

◆ 모든 피고용자들이 그들의 일상 업무에 있어 이해하고, 준수하고, 수용하며, 실행하는 명확한 가치를 가진 업무 장소

윤리적 행동 및 가치

◆ 어떤 개인적 가치가 당신을 정의 내리는가?

◆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당신의 직장 생활에 적용하는가?

◆ 피해자에게 당신의 개인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가?

행동강령

- 행동강령이란?
  - 고용자들이 그들의 행동을 지도하고 이끄는데 사용하는 공식적/비공식적인 행동규범
- 행동강령의 역할은?
  - 소속 기관 및 지원 제공자가 표방하는 가치를 정의 내린다.
  - 지원 제공자의 비전과 소속 기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한다.
  - 지원 제공자가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 지원 제공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 연계 기관과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쉼터의 원칙 분석

집단 활동

종합하기

행동강령을 정한 후,

다음 단계에 해야 할 일은?

Shelter Management and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쉼터 관리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한 워크숍

Session 2. Shelter Administration

03 ETHICAL STANDARDS WORKING WITH VICTIMS OF TRAFFICKING

Patsy SÖRENSEN | 벨기에 인신매매 센터 PAYOKE 소장

Patsy Sörensen 은 Antwerp 에 본부를 두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인 Payoke 인신매매 센터의 설립자이자 책임자(소장)이다. 시의회 의원과 유럽 연합 의회의 의원을 지냈으며,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신매매 전문가로서 유럽연합 인신매매 전문가 그룹에 일원인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Ethical Standards Working with Victims of Trafficking

Patsy Sörensen
Director, Payoke NGO

Agenda

- Reviewing the priorities and needs of clients in a shelter environment
- Concepts central to ethical treatment of victims of trafficking
- Identifying key principles that form the basis of the shelter's Code of Conduct
- Analyzing how these principles apply to the clients, community, staff members, partner agencies, and government
- Collaboratively determining next steps for drafting a shelter Code of Conduct

Priorities and Needs of Clients

- What do your clients need?
- How do you meet these needs?
- How do you know you have met these needs?
- What ethical principles do you apply when working with clients?
- What does ethical behaviour mean to you?

Key Concerns of Clients: A Review

Insecurity of their situation	Financial situation	Their emotional state
Safety of family	**Their safety**	**Medical conditions**

What Do We Mean by Ethical Behavior?

- Doing what you say you will do
- Ensuring and maintaining confidentiality
- Being accountable for your own actions
- Being truthful
- Not taking part in actions that may compromise the safety of your client
- Ensuring that your actions and those of your shelter protect your client from further harm

What Is an Ethical Person?

A person who is:

- Self-Reflective – confronts own beliefs and values to ensure ethical treatment; listens without judgment or bias
- Self-Critical – analyses actions; has high expectations of self to "do the right thing"
- Self-Aware – understands limitations; recognizes importance of client confidentiality; lives with integrity

What Is an Ethical Workplace?

◆ A place of work with clear values that all employees understand, observe, accept, and implement in their daily work

Ethical Behaviors and Values

◆ What personal values define you?

◆ How do you apply these values in your professional lives?

◆ How can imposing personal values be detrimental to your clients?

Code of Conduct

- What is a Code of Conduct?
  - A set of formal and informal standards of conduct that employees use to guide their behavior
- What does a Code of Conduct do?
  - Defines what your organization is and what you stand for (values)
  - Clarifies your vision and what impact your organization aims to have
  - Explains how you get your desired results
  - Explains how you function
  - Clarifies your relationship with partners

Analysis of Shelter Princip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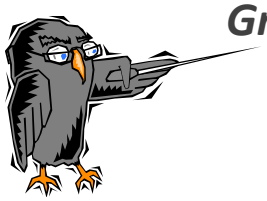

Group Activity

Putting It All Together

Writing the Code of Conduct

– What's next?

Shelter Management and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쉼터 관리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한 워크숍

Session 2. 쉼터 행정

04 안전하고 보안이 잘 된 쉼터를 제공하는 방법

Patsy SÖRENSEN | 벨기에 인신매매 센터 PAYOKE 소장

Patsy Sörensen 은 Antwerp 에 본부를 두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인 Payoke 인신매매 센터의 설립자이자 책임자(소장)이다. 시의회 의원과 유럽 연합 의회의 의원을 지냈으며,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신매매 전문가로서 유럽연합 인신매매 전문가 그룹에 일원인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안전한 쉼터 환경의 조성

Patsy Sörensen
Director, Payoke 센터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 안전한 환경 조성하기

◆ 안전은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 피해자와 쉼터 직원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 *외부인의 출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 피해자의 경험담과 위치에 대해 반드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어떻게?

◆ 쉼터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며,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심리적 안정을 고려한다.

◆ 피해자는 관리공무원을 쉼터 밖에서 만나야 한다.

◆ 피해자가 외부 일정이 있을 경우(경찰 포함) 반드시 쉼터 직원이 피해자와 동반해야 한다.

보안 vs. 인권

보안 대책은 반드시:

- 위험에 비례해야 한다.
- 피해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 인권을 중시해야 한다.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 언론을 적절히 활용하기

- 쉼터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에 대해 항상 명심해야 한다.
-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피해자에 관한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은 매우 해로울 수 있다.
- 언론에 이야기하는 절차에 관해 쉼터의 언론 관련 방침을 구체적으로 고안한다.
- 기자의 쉼터 출입을 금한다.
- 한 사람을 주요 대변인으로 지정하여 그/그녀가 기자회견에 대비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 인신매매에 관해 국민들의 인식 제고는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전달되는 경험담은 절대로 피해자의 이름, 출신국 등 구체적 정보를 담아서는 안 된다.

언론과의 협력 관계 구축하기

◆ 언론을 국민들이 인신매매에 관한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협력자 또는 파트너로 간주한다.

◆ 언론을 통해 잘못된 메시지가 보고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언론과 끈끈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다.

◆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있어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 인신매매에 관한 교육 매체로서 언론이 가진 모든 장점과 기회를 활용한다.

◆ 언론이 인식을 제고하는 조력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인식 제고의 주요 대상은 항상 국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언론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수단

◆ 언론이 문제에 관해 계속 인식하도록 활발히 정보를 제공한다.

◆ 언론 담당자들을 위한 최신 연락처를 업데이트한다.

◆ 언론 마감일을 항상 기억한다.

◆ 신속하게 언론의 질문에 응답한다.

언론과의 성공적인 인터뷰를 위한 조언

◆ 인터뷰를 요청한 사람에 대한 기본 정보를 신중히 확인한다. (소속기관, 과거의 인신매매 문제에 관해 다뤘던 보고 경력, 관련 이슈에 관한 지식, 언론의 대상 독자)

◆ 인터뷰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한다. (시각, 장소, 소요시간)

◆ 인터뷰의 목적을 설정한다.

◆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인터뷰 질문을 미리 요청한다.

◆ 인터뷰 진행자에게 당신의 업무, 쉼터 서비스 및 인신매매에 관한 전반적 배경 지식에 관해 미리 알려준다.

◆ 나누고 싶은 핵심 논의사항에 대해 리스트를 만들어 정리해 둔다.

◆ 쉼터의 위치를 비밀로 보장한다는 사항에 동의한다.

인터뷰 진행 시

◆ 준비되어 있어라.

◆ 침착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라.

◆ 존중하라.

◆ 아는 것 (혹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직하라.

◆ 대답하기 전에 먼저 질문 전체를 끝까지 들어라.

◆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대답하라.

◆ 자신감 있게 인터뷰에 응하라.

◆ 열정적으로 인터뷰에 응하라.

◆ 가상적인 질문은 피하라.

◆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정정하라.

◆ “비공개를 전제로 하여”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지 말아라.

인터뷰 종료 후

◆ 만약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하기로 약속한 경우, 이는 기자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확실히 한다.

◆ 후속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취재 내용을 보도하기 전에 미리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 만약 인터뷰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보도된다면, 신속히 언론 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한다.

경찰 및 공무원과 협력하기

◆ 피해자가 경찰에게 솔직하게 진술하기를 주저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 경찰에게 연락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구하도록 한다.

◆ 경찰과 특정 사건에 대해 논의할 때, 피해자가 협조하기로 동의할 때까지 어떠한 신상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 경찰서에 피해자와 함께 동행한다 - 경찰이 쉼터로 오게 하지 않는다.

◆ 경찰과 있을 때는 피해자와 함께 있어야 한다.

◆ 이는 군인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과 협력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번역가 및 통역사와 협력하기

◆ 통역사가 인신매매를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표현과 용어에 익숙한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 피해자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바, 민감한 정보의 사용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및 비밀 보장 원칙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한다.

◆ 통역사가 비밀 보장에 동의하는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다.

◆ 통역사 결정시, 엄격한 적격 심사 과정을 정립한다 (예. 범죄경력조회 등).

◆ 통역사는 반드시 정보를 전문적이면서 선입견·편견 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통역사와 피해자 간에 별도의 대화를 나누지 않도록 하고, 통역사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도록 한다.

질의 응답

Shelter Management and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쉼터 관리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한 워크숍

Session 2. Shelter Administration

04 HOW TO PROVIDE A SECURE AND SAFE ENVIRONMENT AT THE SHELTER

Patsy SÖRENSEN | 벨기에 인신매매 센터 PAYOKE 소장

Patsy Sörensen 은 Antwerp 에 본부를 두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인 Payoke 인신매매 센터의 설립자이자 책임자(소장)이다. 시의회 의원과 유럽 연합 의회의 의원을 지냈으며,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신매매 전문가로서 유럽연합 인신매매 전문가 그룹에 일원인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How to Provide a Secure and Safe Environment at the Shelter

Patsy Sörensen
Director, Payoke NGO

Putting the Focus on the Victims: Creating a Safe Environment

- Safety is the number one concern of victims
- Need to establish a space only for victims and shelter workers

– ***no admittance to outside actors***

- Ensure confidentiality of victim stories and location

How?

- Shelter is in a secret location
- Concern for psychological safety: caring, supportive, non-judgmental environment
- Victims meet with officials in an area outside of the shelter
- Victims are escorted to and from shelter by shelter staff to outside appointments (including to the police)

Security vs. Human Rights

Security measures must:

- Be proportional to the risk
- Take the victim's best interests into consideration
- Be respectful of human rights

Protecting Victim Privacy: Working with the Media

- Centers must always keep in mind the need for privacy of victims
- Information about the victim passed onto anyone, even with good intentions, can be very damaging
- Design a shelter-specific media policy that clearly lays out procedures for speaking with the media
- Never allow press to enter the shelter
- Designate one person as the key spokesperson for the press and ensure he/she is trained in speaking with the media
- Public awareness of human trafficking is important, but stories shared should never provide details of the victim names, city of origin, etc.

Building Partnerships with the Media

- View the media as your ally or partner in making the public aware of the issue of trafficking
- Establish strong partnerships with the media to avoid your message being incorrectly reported or inaccurate information being spread
- Recognize your role in helping the media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ir role in supporting victims
- Use all opportunities to education the media on trafficking
- Remember that the media is the facilitator in spreading awareness – your target audience is always the public

Practical Tools for Building Partnerships with the Media

- Work actively to keep the media informed
- Keep up-to-date contact lists for media representatives
- Be aware of media deadlines
- Respond to media inquiries promptly

Planning Tips for Successful Media Interviews

- Check carefully the background of the person requesting an interview (organization he/she works for, past experience in reporting on victims of trafficking, knowledge of the issue, intended audience)
- Clarify specifics of the interview (time, place, and duration)
- Establish the goal of the interview
- Ask for a list of questions beforehand to prepare appropriately
- Provide the journalist background information on your work, shelter services, and trafficking in general beforehand
- Make a list of the key points you wish to communicate
- Agree to a location for the interview that ensures shelter confidentiality

During the Interview

- Be prepared
- Be yourself
- Be respectful
- Be honest about what you know (and what you do not know)
- Listen to the entire question before answering
- Be specific and easy to understand
- Be confident
- Be enthusiastic
- Stay away from hypothetical questions
- Correct inaccurate information
- NEVER speak “off the record”

After the Interview

- If any additional information was promised, ensure this is provided to the journalist
- Be prepared to answer follow-up questions
- Ask to review information before publication
- If the published interview has any incorrect information, promptly contact the press to provide corrections

Working with the Police and Officials

- Understand victims' hesitancy in giving their statement to the police
- Ensure there is victim consent prior to contacting the police
- When discussing a case with the police do not provide any identifying information until a victim has agreed to cooperate
- Accompany the victim to the police - do not have the police come to the shelter
- Stay with the victim when with the police
- This is true for army officials and intelligence officers as well

Working with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 Ensure interpreters are familiar with the language and terminology used to describe trafficking
- Understand the special needs of clients, use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rules of confidentiality
- Have interpreters sign a confidentiality agreement
- Establish a screening process for interpreters
- Must be able to relay information in a professional, unbiased way
- Ensure separate conversations do not occur between the interpreter and victim, and that the interpreter does not show judgment to the victim

Questions

Workshop on
Shelter Management and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쉼터 관리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한 워크숍

세션 3.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

Session 3.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

01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Carina MORITA | IOM 동경사무소 사례담당팀장

Carina Morita 는 IOM 동경사무소에서 인신매매 팀의 수석 사례관리자로서 일본 내 인신매매 피해자의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1994 년부터 일본 내 필리핀 이주자를 대상으로 Saalaa 와 Kapatiran 등의 NGO 단체에서 상담사와 사례관리자로 일하며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일본 내 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해왔다.

피해자 식별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Tokyo

Ms. Carina Morita

Chief Caseworker

일본 인신매매 피해자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개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일본의 국가 행동 계획
(2004년 채택, 2009년 수정)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
피해자 보호
IOM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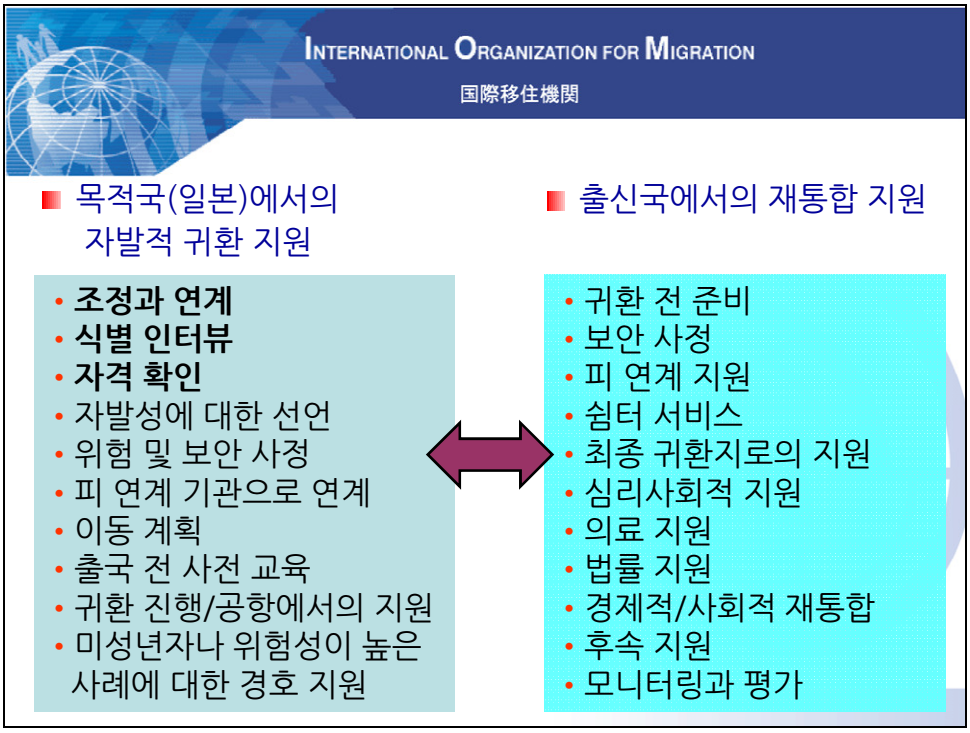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목적국(일본)에서의
자발적 귀환 지원
조정과 연계
식별 인터뷰
자격 확인
자발성에 대한 선언
위험 및 보안 사정
피 연계 기관으로 연계
이동 계획
출국 전 사전 교육
귀환 진행/공항에서의 지원
미성년자나 위험성이 높은
사례에 대한 경호 지원
출신국에서의 재통합 지원
귀환 전 준비
보안 사정
피 연계 지원
쉼터 서비스
최종 귀환지로의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의료 지원
법률 지원
경제적/사회적 재통합
후속 지원
모니터링과 평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식별 절차 및 피해자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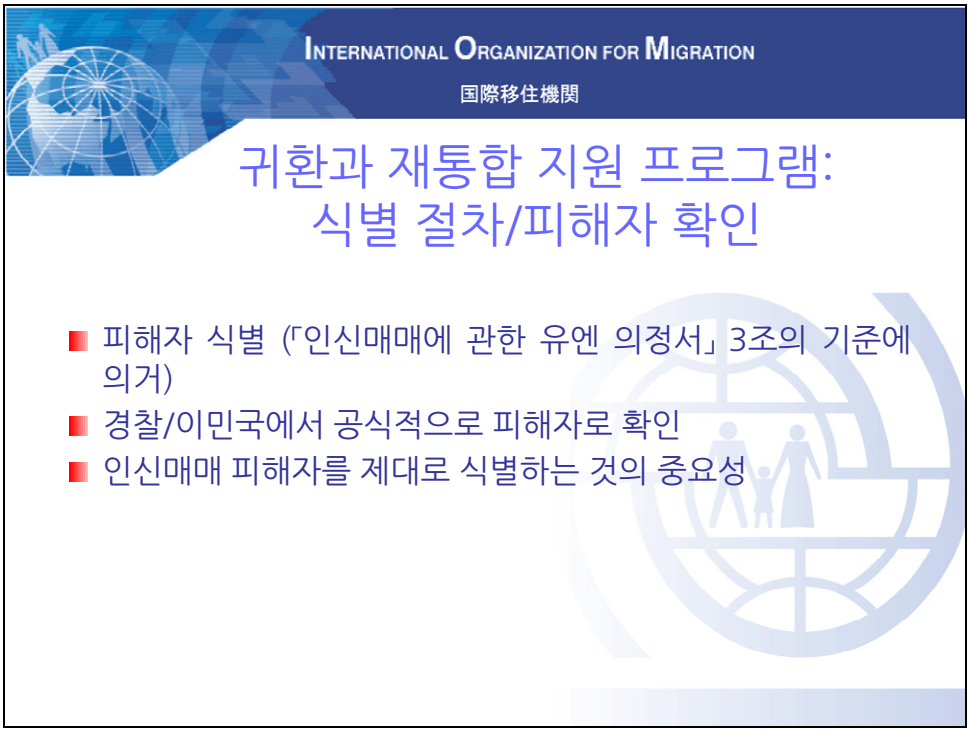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식별 절차/피해자 확인
피해자 식별 (「인신매매에 관한 유엔 의정서」 3조의 기준에 의거)
경찰/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확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제대로 식별하는 것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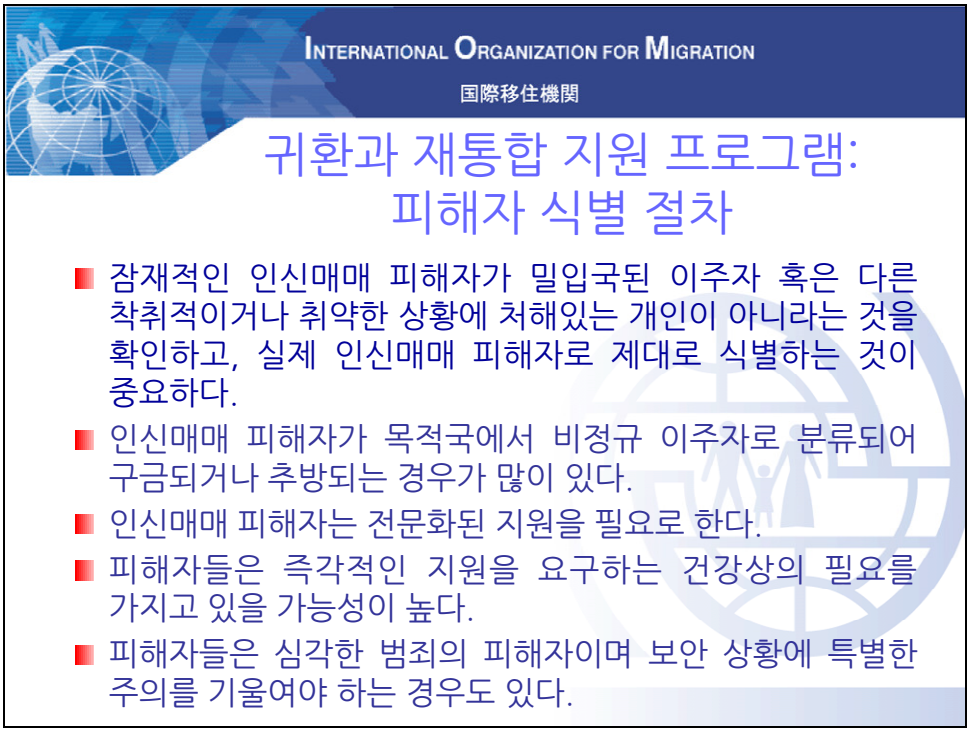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피해자 식별 절차
잠재적인 인신매매 피해자가 밀입국된 이주자 혹은 다른 착취적이거나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실제 인신매매 피해자로 제대로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목적국에서 비정규 이주자로 분류되어 구금되거나 추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전문화된 지원을 필요로 한다.
피해자들은 즉각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건강상의 필요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이며 보안 상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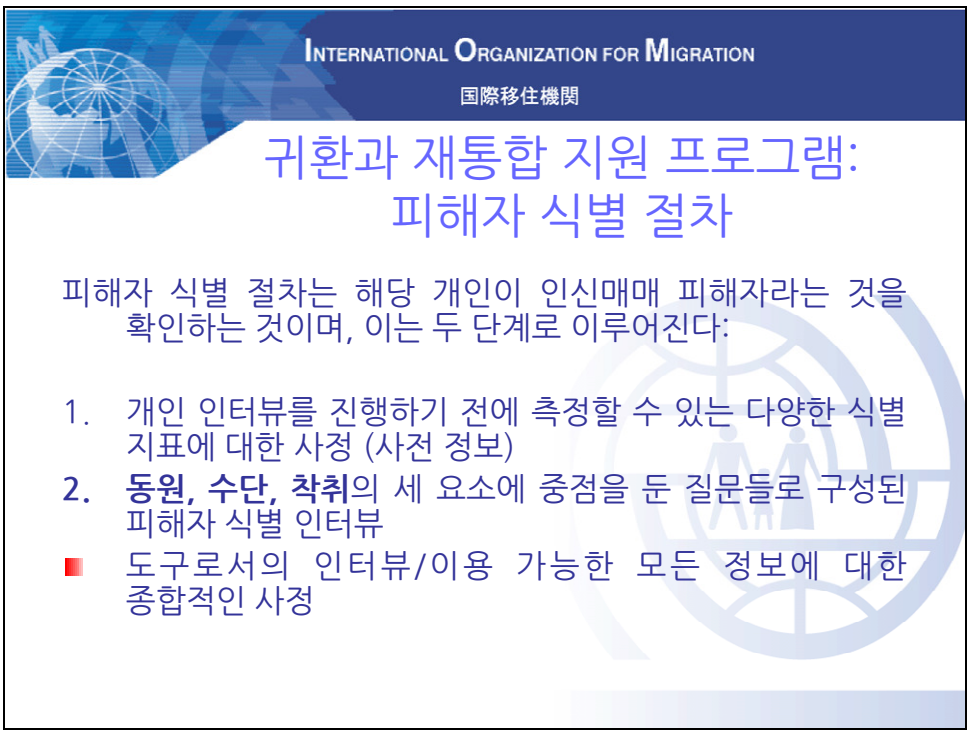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피해자 식별 절차
피해자 식별 절차는 해당 개인이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1. 개인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식별 지표에 대한 사정 (사전 정보)
2. 동원, 수단, 착취의 세 요소에 중점을 둔 질문들로 구성된 피해자 식별 인터뷰
도구로서의 인터뷰/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사정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피해자 식별

- **IOM 피해자 식별을 위한 인터뷰 서식**
- 충분한 정보 제공에 기반한 동의/개인정보
- 동원(행위)-모집/운송/이전/은닉/인수
- 수단-위협이나 무력/강압/유괴/사기/기만/권력 남용/상대방의 취약성 악용/돈을 제공 또는 수령
- 착취(목적)-성 착취/강제노동/노예/예속 행위/장기적출
- 지원을 받을 자격에 대한 평가와 확인/또는 다른 지원 기관으로의 연계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인신매매 피해자(18세 이상) 식별을 위한 순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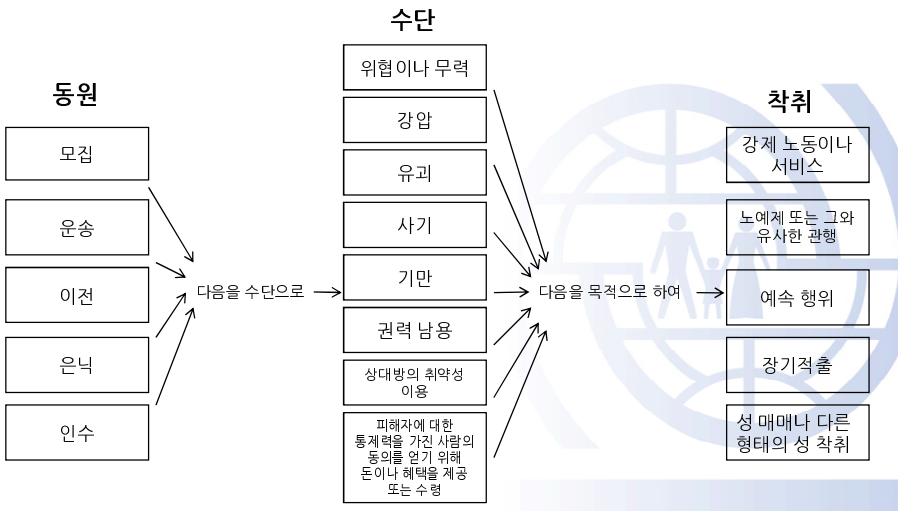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인신매매 피해 아동(18세 미만) 식별을 위한 순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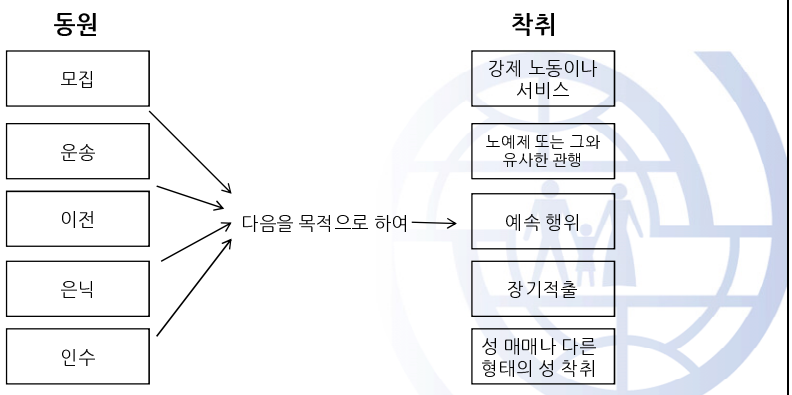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피해자 식별

- 식별 절차가 완벽하지는 않다;
- 지원 체계, 피해자의 특성 및 인신매매자들의 새로운 수법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
-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감사합니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IOM Mission Japan
IOM駐日事務所
Chiyoda House 5F, 2-17-8
Nagata-cho, Chiyoda-ku,
Tokyo 100-0014 JAPAN
Tel: +81(0)3 3595 2487
Fax: +81(0)3 3595 2497
E-mail: iomtokyo@iom.int
Website:
http://www.iomjapan.org/
(Japanese)
http://www.iom.int
(HQ English)
〒100-0014
東京都千代田区永田町2-17-8
千代田ハウス5階
電話 +81(0)3 3595 2487
Fax: +81(0)3 3595 2497
E-mail: iomtokyo@iom.int
ホームページ:
http://www.iomjapan.org/ (日本語)
http://www.iom.int (英語・本部)

Shelter Management and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쉼터 관리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한 워크숍

Session 3. Interviewing and Screening of Victims of Trafficking

01 VICTIM IDENTIFICATION AND SCREENING

Carina MORITA | IOM 동경사무소 사례담당팀장

Carina Morita 는 IOM 동경사무소에서 인신매매 팀의 수석 사례관리자로서 일본 내 인신매매 피해자의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1994 년부터 일본 내 필리핀 이주자를 대상으로 Saalaa 와 Kapatiran 등의 NGO 단체에서 상담사와 사례관리자로 일하며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일본 내 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해왔다.

Victim Identification

Voluntary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Progra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Tokyo

Ms. Carina Morita

Chief Caseworker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Program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in Jap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Program: Overview

- Japan's National Action Plan to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Established 2004, Revised 2009)
- Multi-agency approach
- Protection of Victims
- IOM Voluntary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Voluntary Return Assistance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Japan)

- **COORDINATION AND REFERRAL**
- **SCREENING INTERVIEW**
- **CONFIRMATION OF ELIGIBILITY**
- Declaration of Voluntariness
- Risk and Security Assessments
- Referral to Receiving Missions
- Travel Arrangements
- Pre-departure Briefing
- Return Operations/Airport Assistance
- Escort Assistance for Minors and High-Risk Cases

Reintegration Assistance in the countries of origin

- Pre-arrival Preparations
- Security Assessment
- Reception Assistance
- Shelter Services
- Assistance to Final Destination
- Psychosocial Care
- Medical Assistance
- Legal Aid
- Economic/Social Reintegration
- Follow-up care
- Monitoring and E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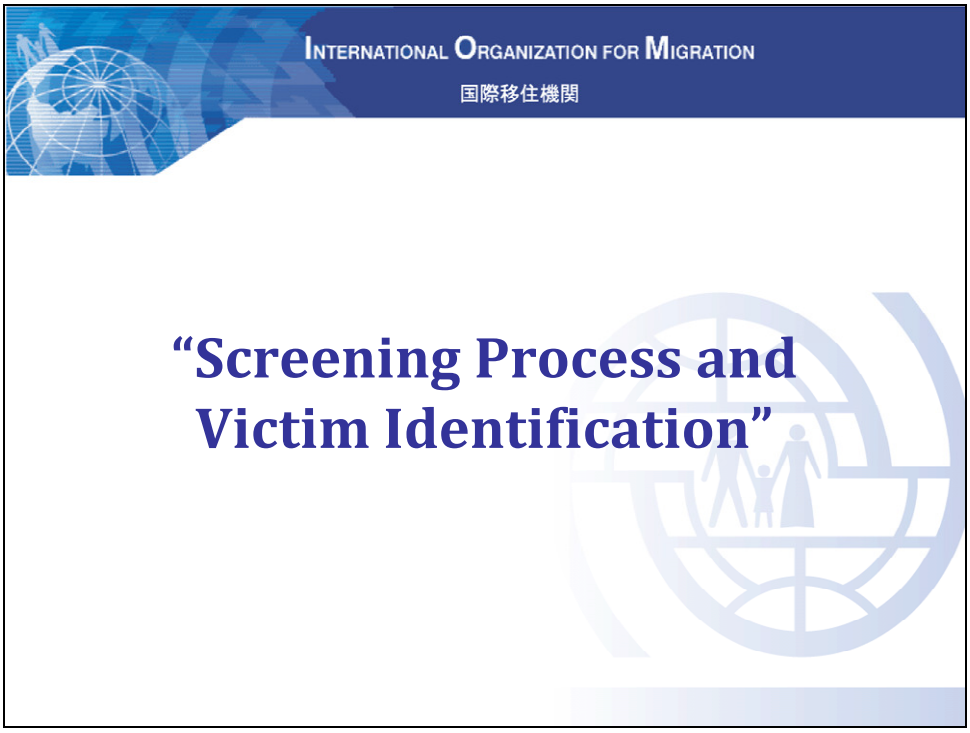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Screening Process and Victim Ident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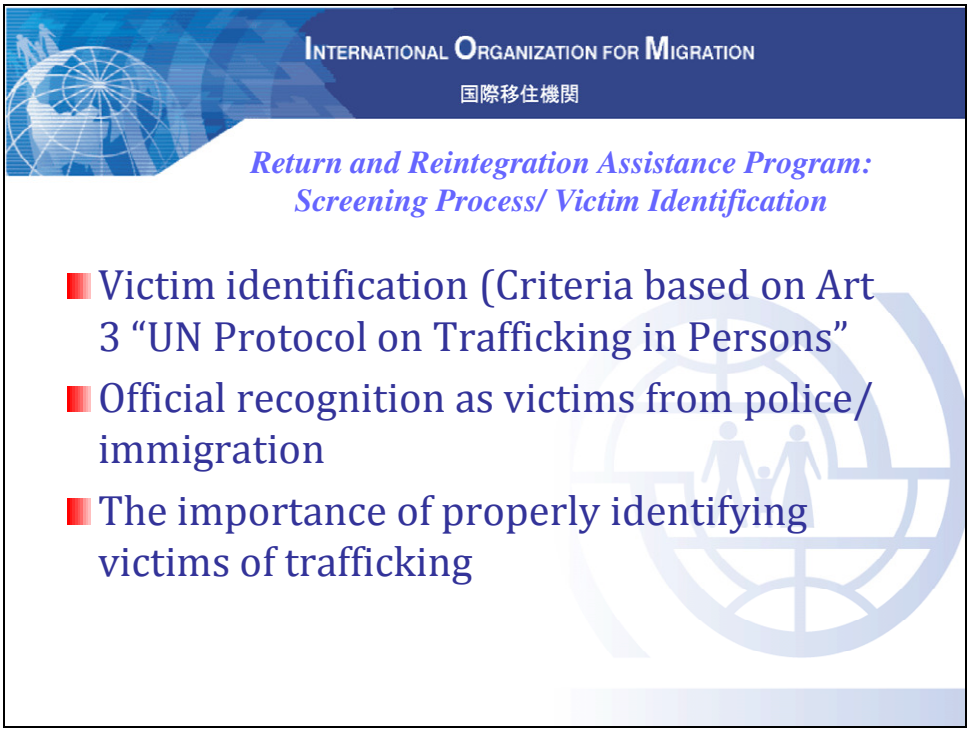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Program:
Screening Process/ Victim Identification
Victim identification (Criteria based on Art 3 "UN Protocol on Trafficking in Persons"
Official recognition as victims from police/ immigration
The importance of properly identifying victims of traffick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Program: Process of Victim Identification

- It is important to properly screen potential trafficked persons to ensure that they are in fact victims of trafficking rather than smuggled migrants or others in abusive or vulnerable situations
- In many destination countries trafficked persons may be mistaken for irregular migrants and detained or deported
- The nature of assistance needed by trafficked persons is specialized
- They are likely to have health needs that should immediately be addressed
- They are victims of serious crimes and the security situation may require special atten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Program: Process of Victim Identification

The screening process in determining if a person is indeed a victim of trafficking can consist of two stages:

1. An assessment of varying indicators that can be evaluated before an interview takes place (initial information)
2. An interview with the individual consisting of a set of questions that focus on the three elements: **mobilization, means and exploitation**

- Interview as a tool/ cumulative assessment of all available inform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Program: Victim Identification

- **The IOM Screening Interview Form**
- Informed consent/ Personal data
- MOBILIZATION (Activity)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ring/ receipt
- MEANS -threats or use of force/ coercion/ abduction/ fraud/ deception/ abuse of power/ abuse of position of vulnerability/ giving or receiving payments
- EXPLOITATION (Purpose) - sexual exploitation/ forced labor/ slavery/ servitude/ removal of organs
- Assessment and confirmation of eligibility for assistance and/ or referral to other helping agencies

Victim Identification Flow Chart for Adults (18 and 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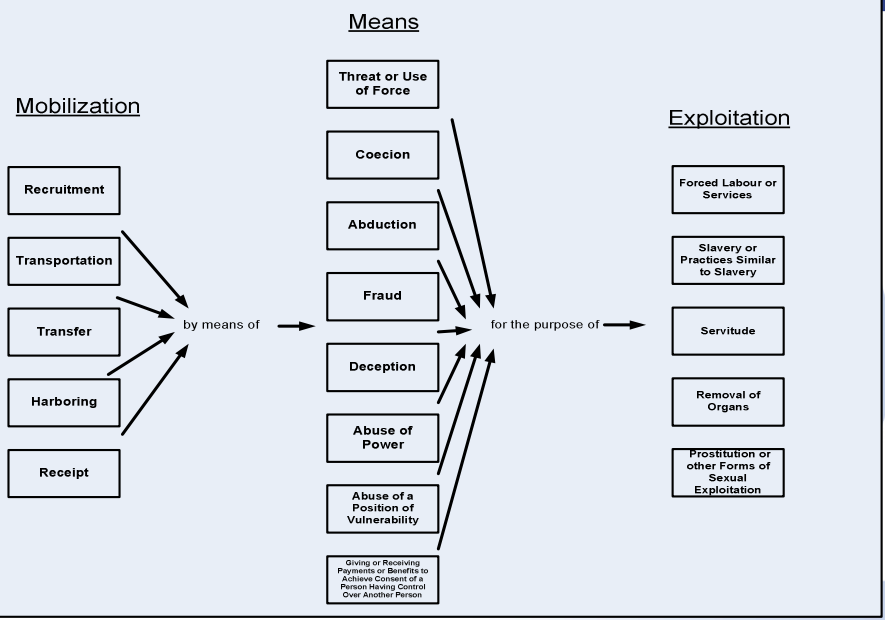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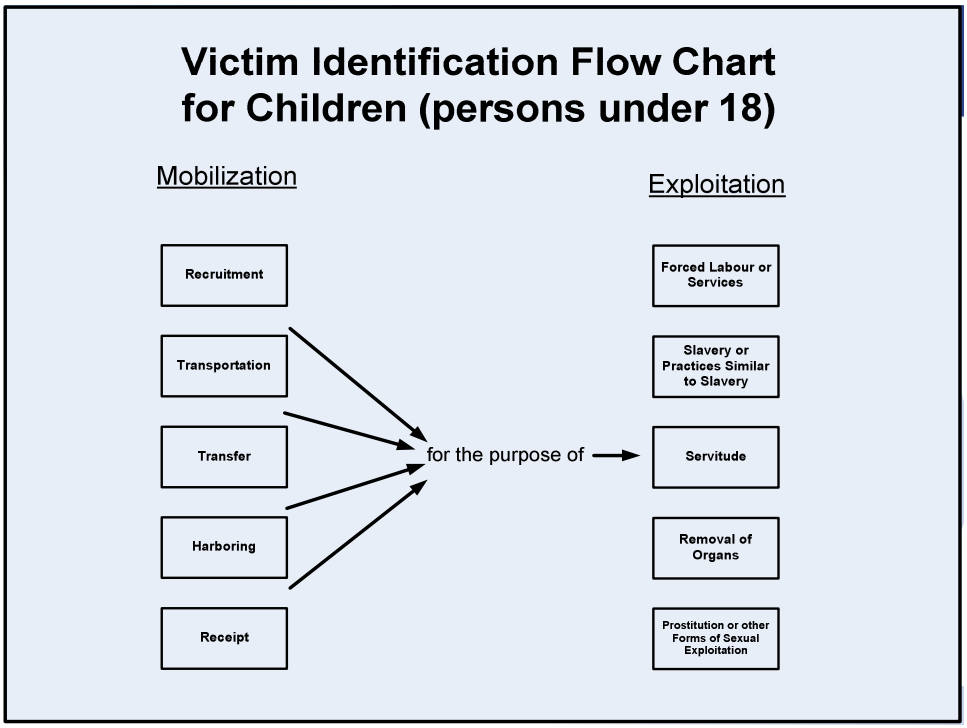
Victim Identification Flow Chart for Children (persons under 18)
Mobilization
Exploitation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ring
Receipt
for the purpose of
Forced Labour or Services
Slavery or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Servitude
Removal of Organs
Prostitution or other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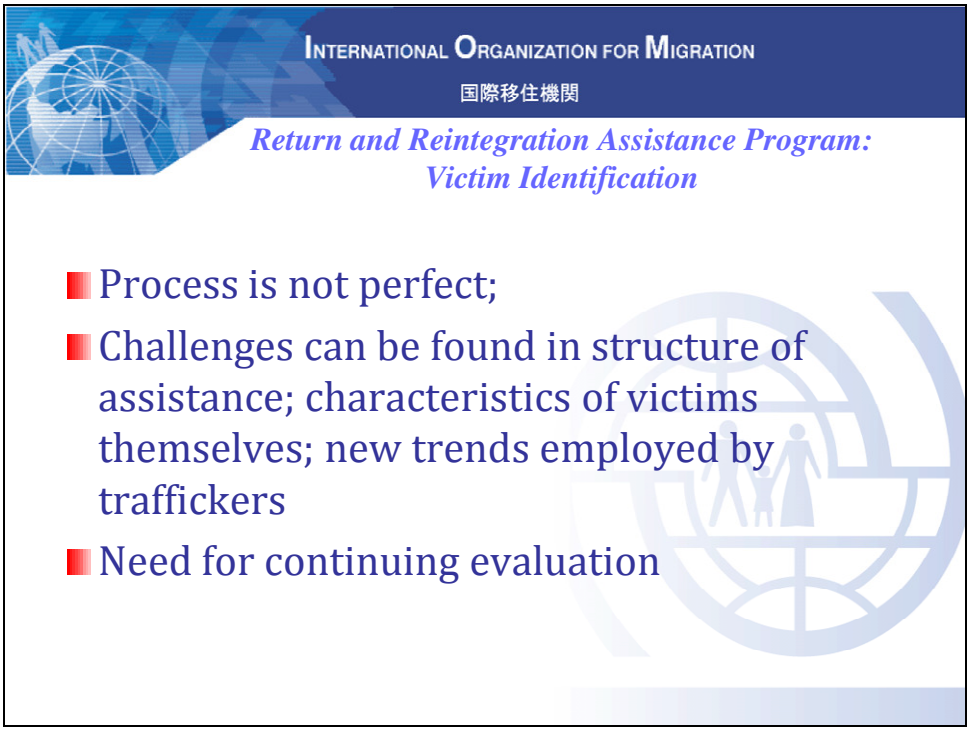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Program:
Victim Identification
Process is not perfect;
Challenges can be found in structure of assistance; characteristics of victims themselves; new trends employed by traffickers
Need for continuing evalu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Thank you very much!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IOM Mission Japan
IOM駐日事務所
Chiyoda House 5F, 2-17-8
Nagata-cho, Chiyoda-ku,
Tokyo 100-0014 JAPAN
Tel: +81(0)3 3595 2487
Fax: +81(0)3 3595 2497
E-mail: iomtokyo@iom.int
Website:
http://www.iomjapan.org/
(Japanese)
http://www.iom.int
(HQ English)
〒100-0014
東京都千代田区永田町2-17-8
千代田ハウス5階
電話 +81(0)3 3595 2487
Fax: +81(0)3 3595 2497
E-mail: iomtokyo@iom.int
ホームページ:
http://www.iomjapan.org/ (日本語)
http://www.iom.int (英語・本部)

Session 3.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

02 한국에서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남재우 팀장 |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외사과 2 팀

남재우 팀장은 1989 년 경찰에 입문, 연제경찰서 형사과,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해운대서 수사과 등을 거쳐 현재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2 팀장을 역임하고 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입법 경위

1961 년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 1962 년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에 관한 유엔협약'에 서명 2000 년, 2002 년 발생한 군산 화재참사를 계기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전환 요구와 함께 법정책의 변화가 시도되어

2002.9.11. 국회의원 86 인이 여성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발의
2004.3.22. 법률 제 7196 호로 제정

본 법률 제 1 조는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행위 및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이 법들은 '성매매 행위만이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성매매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반영하여,

성매매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은 완화하는 반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추징하며,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자가 성을 파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제의 채권을 무효로 함으로써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로 인한 이윤 동기가 실현되지 않도록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 법률에서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 245 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 3 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 항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 2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 3 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위 가목에서의 지배 · 관리라 함은,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타인을 고용·감독하는 자,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자 또는 그를 보조하는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우

2. 내국인 일본, 호주 인신매매 사건

2010.3.24 경 국내 여성이 호주 내 성매매업소에 감금되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인터폴을 통해 호주연방경찰의 협조로 박 OO 외 2 명을 구출하여 수사한 바,

고리사채업자가 유흥업소 멤버, 해외송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할 때 빌려준 고리(142%)의 선불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호주, 일본 등 성매매업소에 보내 대출금을 갚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져,

선불금 차용시 가족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케하고, 여 종업원간 상호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 것은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로 판단하여 피의자들의 지배·관리 하에 둔 것으로 확신하고,

사채업자, 해외송출브로커, 유흥업소 멤버. 해외성매매업소 업주 모두 18 조 제 3 항 제 3 호(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의율하여 송치하였으나 재판 중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에게 기존 부채 탕감 등으로 회유하여 탄원서,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성매매강요에서 성매매알선 등으로 죄명 정정되었다.

3. 국내 여성 해외 성매매업소 송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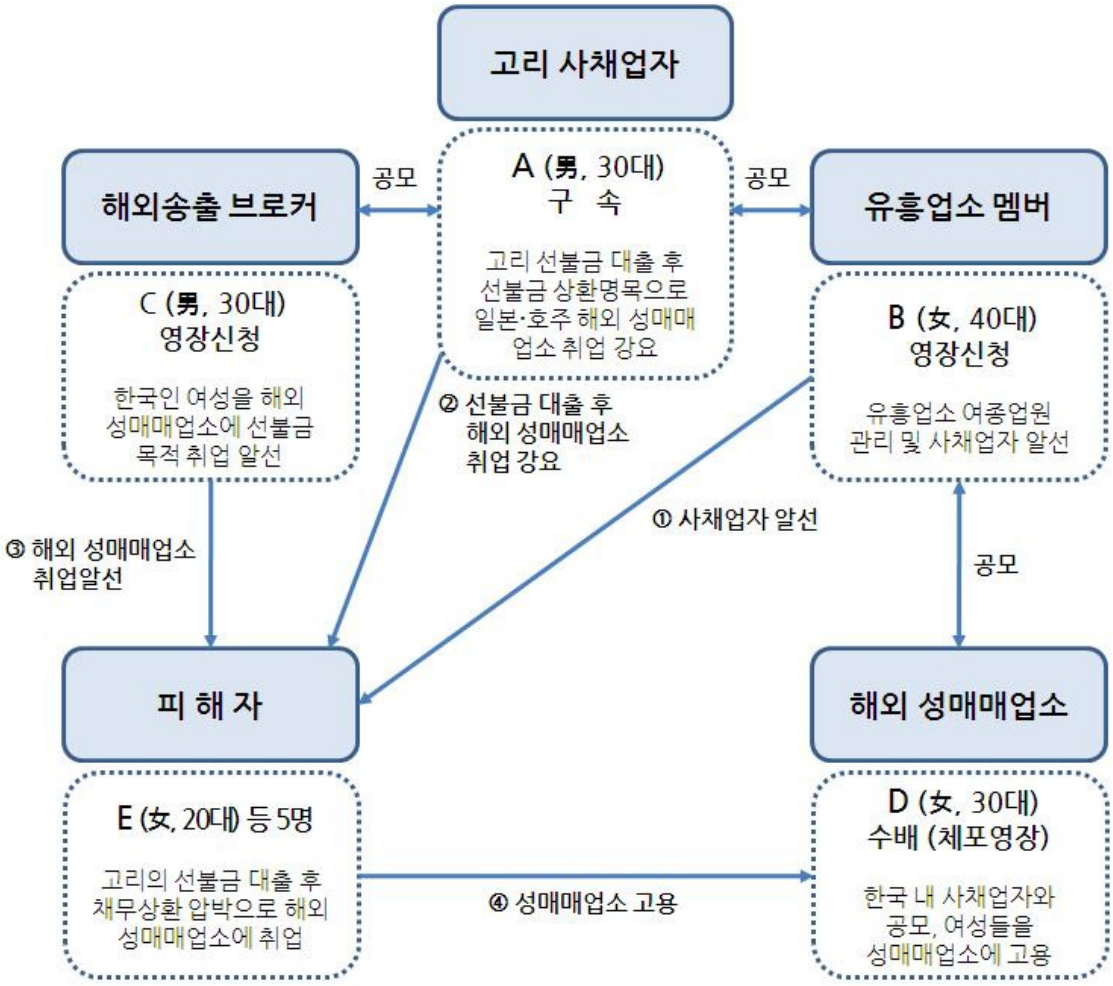

4. 필리핀 연예 여성 인신매매 사건

2010. 9 월경 경남 거제시 외국인전용클럽을 단속하여 수사한 바,

연예기획사 대표와 클럽업주 등이 조직적으로 사전 공모하여 공연목적이 아닌 접대부로 고용하기 위해 필리핀 여성들을 E-6 비자의 허점을 이용, 초청하였고,

클럽업주들은 필리핀 여성들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한 달에 주스 300-400 잔(한잔 1 만원)을 채우도록 하는 주스 쿼터제를 운영하면서 이를 채울 경우 한잔에 2,000 원씩 이윤을 배분해주고 있었고,

기획사는 필리핀 여성들과 국내최저임금 (96 만원)으로 계약을 하였고, 클럽에는 파견 고용시키는 조건으로 한 명담 월 130-150 만원을 받으면서도 월급을 30-50 만원 가량만 지급하여 1 년간 필리핀 여성 18 명으로부터 약 1 억 2 천만 원 가량만 지급하여 1 년간 필리핀 여성 18 명으로부터 약 1 억 2 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내고,

필리핀 여성 18 명 중 4 명만 성매매를 시인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손님을 접대하면서 월 400 잔의 주스 쿼터를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주의 지시에 의해 성매매(1 회 성매매 30 잔 인정)를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이었다는 진술이고,

나머지 필리핀 여성들은 조사시 한국에 가면 주스쿼터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나 성매매가 있는지 몰랐으며 자신들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였으나,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당장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없고, 더욱이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현지 기획사로부터 보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본건을 국제규범의 인신매매 정의에 의하면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 또는 **당사자의 취약한 지위의 남용**, 타인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 또는 혜택의 제공 또는 **접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고 정의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는 무의미**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규범에 의하면 본 건의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의 행위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로 충분히 적용할 수 있으나,

국내법은 선불금, 여권 압수 등의 수단으로 대상자의 이탈을 제지한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배, 관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의율하기에 어려워,

피의자들에 대해 성매매알선 (고용관계에 의한 성매매알선), 공갈(갈취) 등으로 입건하였다.

Session 3.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

03 중국에서의 피해자 식별

Lan ZHANG | IOM 중국 이주관리 역량강화 프로젝트 책임자

Lan ZHANG 은 현재 IOM 베이징 사무소에서 이주관리 역량강화 프로젝트 책임자로, 이주 동향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고 중국의 인신매매 훈련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중국 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중 영국문화원의 '굿 거버넌스 (Good Governance)' 프로젝트 담당자, 주중 유럽연합 대표부의 인권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를 역임하였다.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CBMM CHINA
Capacity Building for Migration Management in China
中国移民管理能力建设项目
중국에서의 피해자 식별:
중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IOM의 접근
Zhang Lan, CBMM China Senior Project Offic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Liaison Office in China
Seoul, 11 July 2011
Sharing Global Experience on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Principally funded by the European Union
主要由欧盟资助
In partnership with UK Border Agency
英国边境管理局
In partnership with Italian Ministry of Interior
意大利内政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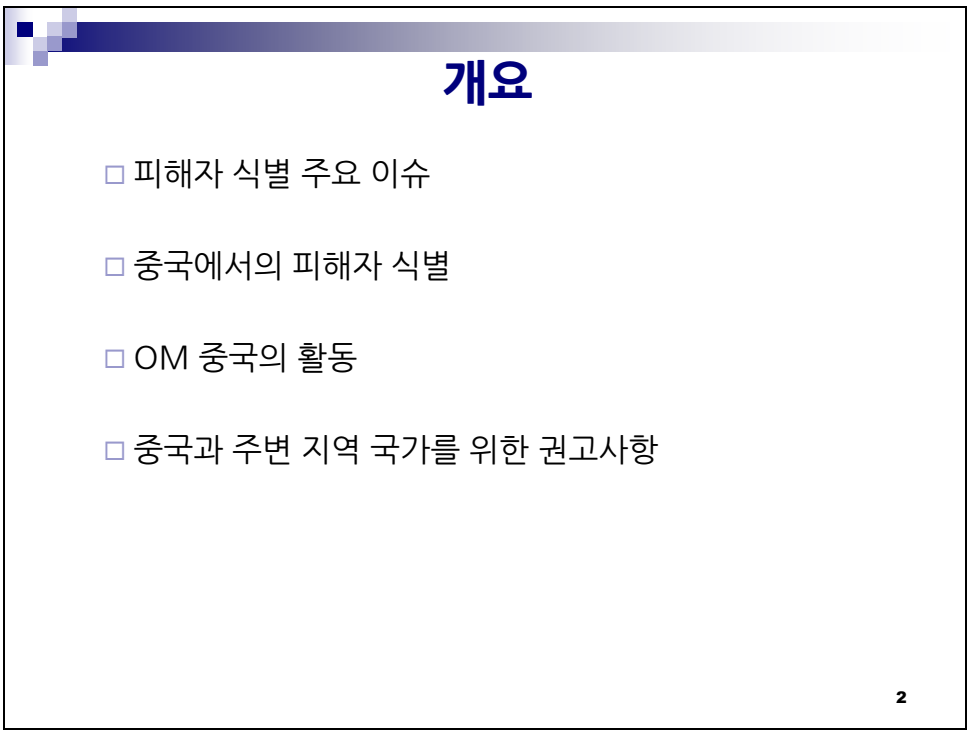
개요
□ 피해자 식별 주요 이슈
□ 중국에서의 피해자 식별
□ OM 중국의 활동
□ 중국과 주변 지역 국가를 위한 권고사항
2

피해자 식별의 주요 이슈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의 중요성

인신매매 피해자를 적시에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 지원과 보호 제공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
- 지원 단체의 초기 발상
- 보호와 지원에 대한 필요의 차이
- 특정 보안 계획과 절차

4

인신매매 피해자 이해하기

- 인신매매와 관련된 법률 문서에 친숙해지도록 한다.
- 관련 범죄자: 범행 동기
- 피해자: 피해자의 관점과 인신매매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5

인신매매의 정의: 팔레르모 의정서

a.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유괴, 사기, 기만, 권력 남용이나 상대방의 취약성 악용,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돈이나 혜택을 제공 또는 수령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인신을 모집, 운반, 이송, 은닉, 인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착취에는 성매매에서의 착취 등 기타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서비스, 노예제 또는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행위 또는 장기적출 등이 포함된다.

b. (a)항에 규정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c. (a)항에 규정된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반, 이송, 은닉, 인수하는 것은 인신매매로 간주한다.

d. 아동은 18세 미만인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6

인신매매 vs. 밀입국

- 인신매매와 밀입국: 유사점과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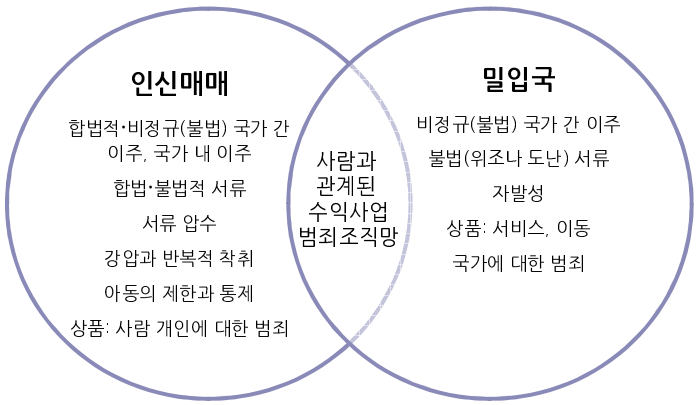

7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의 어려움

- 인신매매의 정의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을 위한 표준화된 접근 방법
- 인신매매와 관련된 법 집행 기관/지원 단체의 인식과 경험
- 비협조적인 피해자
- 인적 자원
- 재정적 문제

8

중국에서의 피해자 식별

중국의 현 상황 (1)

- **중국 형사법과 국제 협약은 인신매매를 서로 다르게 정의한다.**

	중국 형사법 240조	팔레르모 의정서
인신매매의 목적	피해자 매매	착취
구체적인 인신매매 행위	여성이나 아동의 유괴 및 인신매매는 다음 행위를 일컫는다: 여성이나 아동을 유괴, 납치, 구매, 매매, 밀거래, 운반, 이송하는 것	구체적인 행위가 규정되지 않음
인신매매 대상의 범위	여성이나 아동	누구나

10

중국의 현 상황 (2)

- 중국의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 행동 계획 (2008-2012년)
- 중국의 행동 계획에 대한 상세한 이행 규칙 (2009년 3월)
- 2009년에 시작된 인신매매 방지 캠페인

11

장관급간 공동 회의 체계 (1)

- 주요 책임

1) (국가 행동 계획의 개발,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체계화하고, 여러 지역, 정부 부처, 단체 및 국경 지대 간의 인신매매 방지 활동을 체계화하고 조정한다.
2) 관련 정부 부처가 인신매매 방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촉진한다.
3) 모든 지역, 지방 자치구, 지방 자치제의 인신매매 방지 활동을 안내, 지도감독 및 장려한다.
4)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을 조율하고 도모한다.
5) 여러 분야와 부처에서 관련된 업무 경험과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12

장관급간 공동 회의 체계 (2)

- 활동 조치와 관련 부서의 책임
  - 인신매매 방지 활동에 호의적인 사회 환경과 근무 분위기를 조성한다.
  - 인신매매 범죄 예방을 위한 체계를 세우고 강화한다.
  - 인신매매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 여성과 아동을 구출한다.
  - 피해 여성과 아동의 구출과 재활을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 국제 협력을 도모한다.

13

피해자 식별을 하는 주요 기관

- 중국 공안(Ministry of Public Security): 주요 기관
  - 인신매매 범죄 적발 및 해결, 피해자 구출
  - 인신매매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식별을 하고 이에 따른 조사를 실시, 인신매매 방지 긴급 상담 전화(hotline) 운영 등
  - 유괴된 아동 구출을 돕기 위한 위한 DNA 데이터베이스
  - 국가 간 인신매매 방지 위해 7개의 국경 교섭 사무소 설치
- 중국 민정부(Ministry of Civil Affairs)
  - 임시 구호 쉼터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

쉼터

DNA 수집

14

피해자 식별의 어려움

- 체계적이고 통일된 식별 절차와 기준의 부재
- 민정부 산하의 쉼터마다 각기 다른 식별 절차를 적용
- 인신매매 피해자의 데이터와 정보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에 개입된 직원들의 역량
- 자원과 재정
- 지역적 협력 체계

15

IOM 중국의 활동

IOM 중국의 활동: 개요

- IOM 중국의 활동의 전반적인 목표
- Methods 접근 방법
- 중국 CBMM의 '1단계' (2007-2010) 및 '2단계' (2011-2013)

17

피해자 식별에 중점을 둔 CMBB 활동 (1): 2007-2010

- 영사 및 출입국 관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과 위험 자료 수집에 관한 워크숍 (2010년 3월)
- 쉼터 관리와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에 관한 교육 (2010년 10월)
- 핀란드, 러시아로의 현장 견학 (2011년 11월)
- 쉼터 관리와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에 관한 교육 (2011년 3월)

2010년 3월 워크숍

2011년 3월 교육

18

피해자 식별에 중점을 둔 CMBB 활동 (2): 2007-2010

- 인신매매 이슈와 관련된 교육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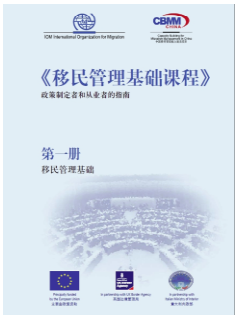

이주관리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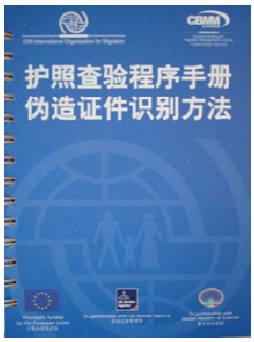

여권 심사 과정 매뉴얼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 매뉴얼

19

중국과 주변 지역 국가를 위한 권고사항

식별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인신매매에 대한 중국의 정의
- 체계화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절차 구축
-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
- 관련 서비스 제공자(경찰, 쉼터 직원, 해외주재 중국 외교관과 영사)의 역량강화
- 정부로부터 더 많은 자원과 재정 지원 획득
- .지역적 협력과 협정

21

중국 주변 지역 국가를 위한 권고사항

- 정보 공유: 전문 지식과 데이터
- 경험 교류
- 공동 연구 및 조사
- 가능한 상호 협력 체계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에 관한 공동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활동

22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CBMM CHINA
Capacity Building for Migration Management in China
中国移民管理能力建设项目
Capacity Building for Migration Management in China
中国移民管理能力建设项目
Thank you !
Zhang Lan
CBMM China Senior Project Officer
IOM Liaison Office in China
Qijiayuan Diplomatic Compound
lzhang@iom.int
+86 10 5979 9695 # 207
Principally funded
by the European Union
主要由欧盟资助
UK Border Agency
In partnership with UK Border Agency
英国边境管理局
In partnership with
Italian Ministry of Interior
意大利内政部

Session 3. Interviewing and Screening of Victims of Trafficking

03 VICTIM IDENTIFICATION IN CHINA

Lan ZHANG | IOM 중국 이주관리 역량강화 프로젝트 책임자

Lan ZHANG 은 현재 IOM 베이징 사무소에서 이주관리 역량강화 프로젝트 책임자로, 이주 동향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고 중국의 인신매매 훈련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중국 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중 영국문화원의 '굿 거버넌스 (Good Governance)' 프로젝트 담당자, 주중 유럽연합 대표부의 인권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를 역임하였다.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CBMM CHINA
Capacity Building for Migration Management in China
中国移民管理能力建设项目
Victim Identification in China:
IOM's Approach for Capacity Building in China
Zhang Lan, CBMM China Senior Project Offic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Liaison Office in China
Seoul, 11 July 2011
Sharing Global Experience on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Principally funded by the European Union
主要由欧盟资助
In partnership with UK Border Agency
英国边境管理局
In partnership with Italian Ministry of Interior
意大利内政部

Outline
Outline of Presentation:
Key issues in Victim Identification
Victim Identification in China
IOM in China's Approach
Recommendations for China and Region
2

Key Issues in Victim Identification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Victims of Trafficking (VOT)

A failure to identify a trafficked person correctly and timely is likely to result in a further violation of that persons rights.

- First important step towards providing the care and protection;
- An initial idea from service delivery organizations;
- Difference in need of protection and assistance;
- Particular security arrangements and procedures.

4

Understanding Human Trafficking

- Be familiar with the legal text;
- The criminal involved: intention of act;
- The victim: the viewpoint of victim and influence on them.

5

Definition of Trafficking According to Palermo Protocol

(a) "Trafficking in persons" shall mean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ring or receipt of persons, by means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or other forms of coercion, of abduction, of fraud, of deception, of the abuse of power or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or of the giving or receiving of payments or benefits to achieve the consent of a person having control over another person,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Exploitation shall include, at a minimum,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or other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forced labor or services, slavery or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servitude or the removal of organs;

(b) The consent of a victim of trafficking in persons to the intended exploitation set forth in subparagraph (a) of this article shall be irrelevant where any of the means set forth in subparagraph (a) have been used;

(c) The recruitment, transportation, transfer, harboring or receipt of a child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 shall be considered "trafficking in persons" even if this does not involve any of the means set forth in subparagraph (a) of this article;

(d) "Child" shall mean any person under eighteen years of age."

6

Trafficking vs. Smuggling

- Distinguish from trafficking and smuggling through activity, means and purp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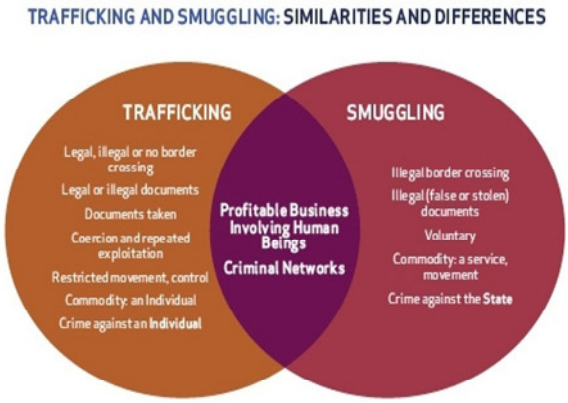

7

Challenges to Identify Victims of Trafficking

- Definition;
- Standard approach;
- Awareness and experienc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service delivery organizations;
- Uncooperative victim of trafficking ;
- Human resources;
- Financial issues.

8

Victim Identification in China

Current Situation (1)

- **Different definition on "Trafficking" between Criminal Law of China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Article 240 Criminal Law of China	The Palermo Protocol
Purpose of trafficking	Selling the victim	Exploitation
Specific acts of trafficking	By abducting and trafficking in a woman or child is meant any of the following acts: abducting, kidnapping, buying, trafficking in, fetching, sending, or transferring a woman or child,	No require specific acts
Scope	Women or children	Anyone

10

Current Situation (2)

- China National Plan of Action on Combating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2008-2012) (NPA);
- Detailed Implementation Rules for NPA: March 2009;
- Anti-trafficking campaign launched in 2009.

11

Inter-Ministerial Joint Conference System (1)

- Main responsibilities:
  - (Ⅰ) Organize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National Plan of Action", and organize and coordinate anti-trafficking work across regions, departments, organizations and national boundaries;
  - (Ⅱ) Coordinate and give impetus to th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to carry out anti-trafficking work;
  - (Ⅲ) Guide, supervise and promote anti-trafficking work in every province, autonomous region and municipality;
  - (Ⅳ) Coordinate and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nti-trafficking efforts;
  - (Ⅴ) Organise the sharing of work experiences and relevant results between various areas and relevant departments.

12

Inter-Ministerial Joint Conference System (2)

- Operational measures and division responsibilities:
  - Create a favourable social environment and work atmosphere;
  - Establish and strengthen the prevention crimes mechanism;
  - Combating criminal activities of trafficking and rescuing in women and children trafficked;
  - Intensify work to rescue and rehabilitate trafficked women and children;
  -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Main Agencies of Identifying the Victims of Trafficking

- 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 Leading agency
  - Uncover and solve cases of trafficking crimes and to rescue victims;
  - Perform screening and subsequent investigation to verify whether it is a case of human trafficking, hotline of anti-trafficking, etc.,
  - DNA database to aid rescue efforts of abducted children;
  - 7 Border Liaison Offices for cross-broader trafficking.
- Ministry of Civil Affairs (MCA):
  - Temporary relief shelters identifying and providing support to victim of trafficking (VOT)

At the Shelter Center

DNA collection

Challenges

- No systematic and unified identification procedures and standard in China;
- Different identification process at different shelter centers of MCA;
- Data and information on victim of trafficking;
- Capacity of involved staffs on identification of VOT;
- Resources and funding;
- Regional cooperative mechanism.

IOM in China's Approach

General Outline

- The overall objective of IOM's activities in China
- Methods
- CBMM China 'Phase 1' (2007-2010) and 'Phase 2' (2011-2013)

17

CBMM Activities in 2007-2010 focusing Victim Identification (1)

- Risk Profiling and Identification of potential Victims of Trafficking Workshop (for Consular and Immigration Officials), March 2010;
- Shelter Management and Direct Assistance to Victims of Trafficking Training, October 2010;
- Study tour to Finland and Russia, November 2011;
- Shelter Management and Direct Assistance to Victims of Trafficking Training, March 2011

Workshop, March 2010

Training, March 2011

18

CBMM Activities in 2007-2010 focusing Victim Identification (2)

- Training Manual on trafficking iss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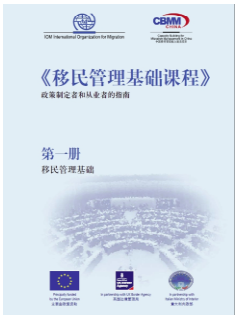

Essentials for Migration Management Manu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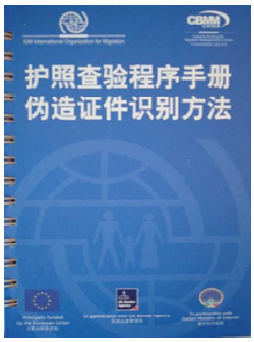

Passport Examination Procedure Manual

Direct Assistance to Victims of Trafficking Manual

19

Recommendations for China and Region

What is needed for improvement for identification

- Definition of trafficking in China;
- Set up a systematic procedures for identifying the VOT;
- Accurate data and information;
- Capacity building for involved service providers (polices, staffs of shelter centers, diplomatic and consular personnel of overseas mission);
- More resources and funding from the government;
-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greement.

Recommendation for countries in the region

- Information sharing: expertise, data
- Exchange experience
- Joint research and survey
- Possible mutual cooperation mechanism
- Joint project and programme activities on identification of VOT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CBMM CHINA
Capacity Building for Migration Management in China
中国移民管理能力建设项目
Thank you !
Zhang Lan
CBMM China Senior Project Officer
IOM Liaison Office in China
Qijiayuan Diplomatic Compound
lzhang@iom.int
+86 10 5979 9695 # 207
Principally funded by the European Union
主要由欧盟资助
In partnership with UK Border Agency
英国边境管理局
In partnership with Italian Ministry of Interior
意大利内政部

Session 3.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

04 PAYOKE 의 경험을 통해 본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는 기준

Patsy SÖRENSEN | 벨기에 인신매매 센터 PAYOKE 소장

Patsy Sörensen 은 Antwerp 에 본부를 두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인 Payoke 인신매매 센터의 설립자이자 책임자(소장)이다. 시의회 의원과 유럽 연합 의회의 의원을 지냈으며,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신매매 전문가로서 유럽연합 인신매매 전문가 그룹에 일원인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피해자 식별

인신매매피해자보호센터 “Payoke”의 경험

Patsy Sörensen
Director, Payoke 센터

개요

- Payoke 센터 소개 (Payoke)
- Payoke 센터의 역할 및 기능 (서비스)
- 벨기에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전략
- 벨기에의 인신매매 협력 모델
-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초기 지원 단계 (지원과 보호)
- 피해자 식별의 어려움
- 피해자에 대한 이해: 보고 판단하기
- 잠재적인 해결방안: 피해자 식별을 위한 대책 강화

Payoke 센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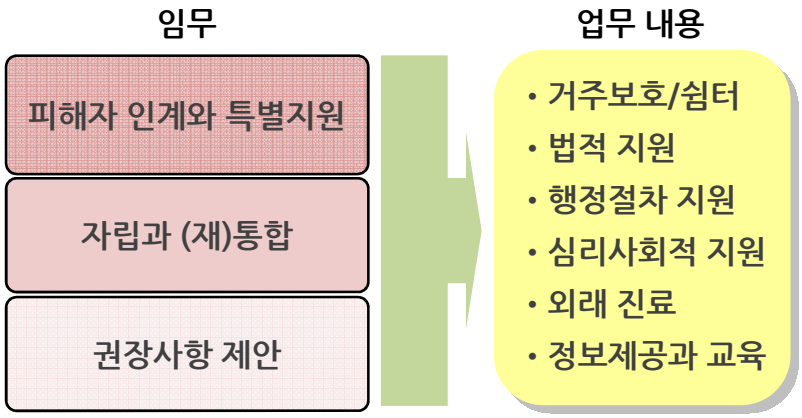

Payoke 센터의 역할 및 기능

법적 지원

- 법적 절차를 통한 조언과 지원
- 경찰, 판사, 변호사와의 접촉과 중재
- 피해자 본인 그리고/또는 Payoke의 명의로 법적 절차를 개시

행정절차 지원

- 거주 증명 서류 요청
- 취업 허가증 요청
- 사회서비스, 건강보험 등을 마련

심리사회적 지원

- 정신적 외상 치료 (심리 상담 제공)
- 재통합을 위한 지원 (외국어 수업 등록, 구직 지원, 행정 및 사회적 수속 지원, 외래 진료 제공)
- 의료 지원 구성

귀환 지원

- IOM과의 협력 하에 출신국으로의 귀환 지원

벨기에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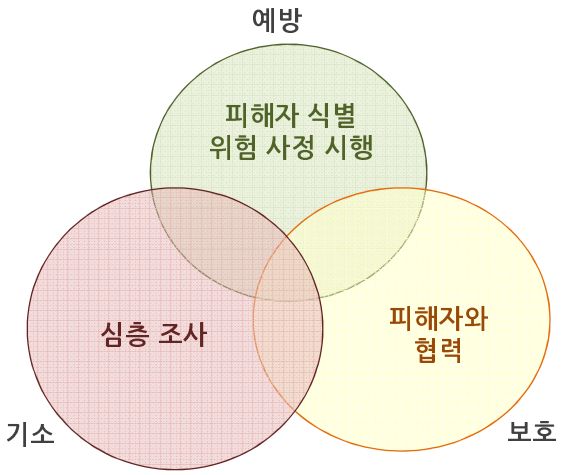

협력 기관

	외무부			정부정책
	부처 간 조정 단위			
법무부	내무부	고용부	사회보장부	
▪ 검찰위원회 ▪ 형사정책서비스 ▪ 검찰위원회의 전문 네트워크	정책 부서	정책 부서	정책 부서	전략 — 균등기회 및 반(反) 인종차별 주의 센터

운영 체계

▪ 연방 검찰청 ▪ 국토 안보부	▪ 연방경찰, 연방범죄수사청 ▪ 이민국	사회조사서비스	사회조사서비스	NGO 파요케 (Payoke) 빠가사 (Pag-asa) 쉬리야 (Sürya)

실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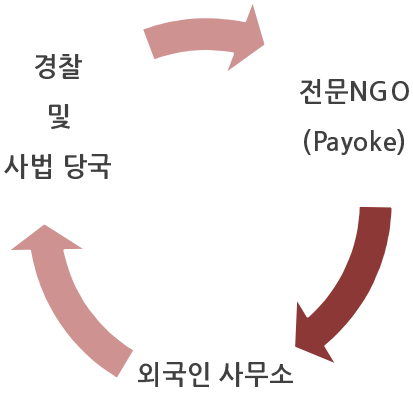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Shelter Management and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10-11 August 2011
The Plaza Hotel, Seoul, Republic of Korea

7

접수 및 지원 과정: Payo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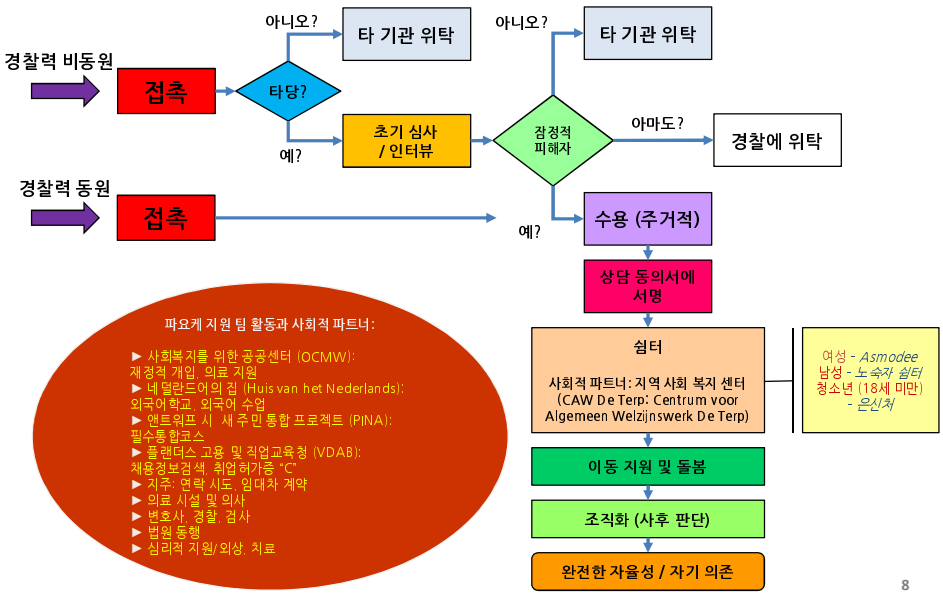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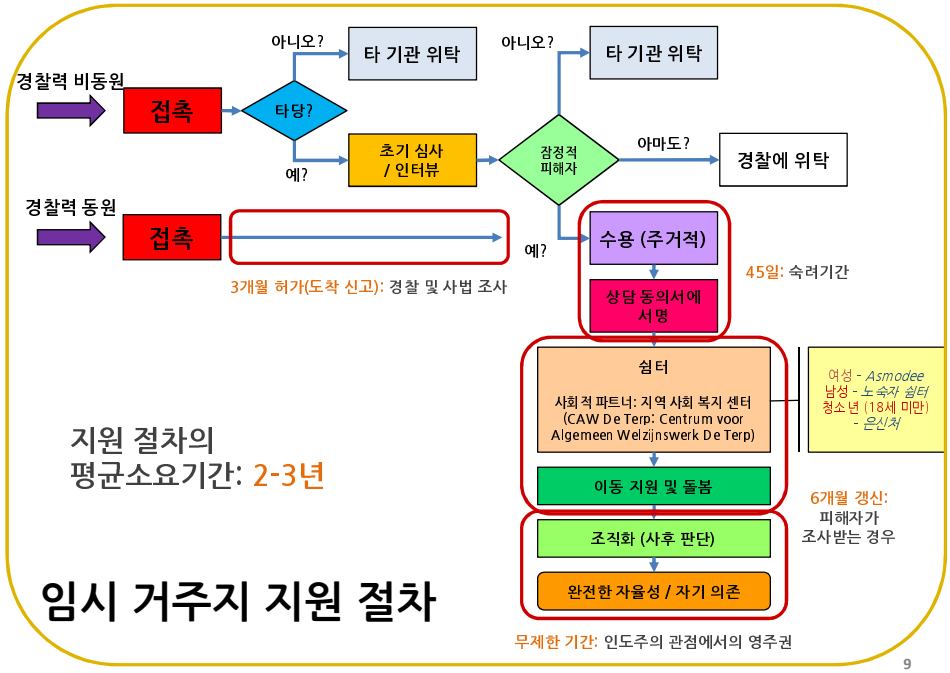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의 어려움

- 인신매매를 범죄로 인식하는 법적 체계의 부족
- 범죄의 본질
- 피해자를 알아보기에는 부족한 역량
- 피해자 식별에 대한 조직화된 대응 체계의 부재
- 피해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바라보는 방식·시각

피해자 이해하기: 관찰되는 것

- 신체적 증상
- 감정적 징후
- 행동적 신호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Shelter Management and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10-11 August 2011
The Plaza Hotel, Seoul, Republic of Korea

11

피해자 이해하기:
피해자에 대해 배우게 되는 것

- 서류 및 정체성에 관한 문제
- 생활 조건·상태
- 노동/근무 조건·환경
- 고용 계약
- 지불 및 채무
- 운송/도착
- 채용
- 통제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Shelter Management and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10-11 August 2011
The Plaza Hotel, Seoul, Republic of Korea

12

영사 및 입국 관리에 관한 일반 지표

- 신분증 및 여행 서류 (종류, 발급 시기, 발급 장소, 비자)
- 계약의 종류 및 고용 기간
- 비자 요청 기관의 종류 (승인 받았는가?, 등록되었는가?, 공인된 기관인가?)
-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입국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한 정보 (지리, 언어, 문화)
-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도착국에서 가지는 권리 및 의무 사항에 관한 정보
- 문제시 되는 추세
  - 수용국에서 요청하는 특정 비자의 수
  - 해외에서 취업을 하는 다수의 청년들
  - 고용을 보장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
  - 확정되지 않은 주소지의 연락처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 누군가의 법적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해야 합니까?

검토하기: 피해자 식별을 강화하는 방법

- 잠재적인 피해자를 인식/식별하고자 하는 의지
- 시민들과 이주민들이 THB와 그 위험에 대해 정확한 이해
- 인신매매 방지 전략에 대한 충분한 정보
- 유용한 정보와 자원
- 현지 고용주들과의 친밀한 관계
- 비자 신청 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의 개발
- 정확하고 양질의 서류를 인지 또는 식별할 수 있는 능력
- 주요 반(反)인신매매 관계자들(특히 지방경찰 또는 연방 경찰)과의 신뢰 및 협력 증진
- 적절하고 정확하며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체계의 개발
- 잠재적인 피해자를 식별하는 지표에 대한 숙지

연락처

PAYOKE
Leguit 4
2000 Antwerp
Belgium
T: 32 3 201 16 90
F: 32 3 233 23 24
admin@payoke.be

Session 3. Interviewing and Screening of Victims of Trafficking

04 CRITERIA TO IDENTIFY A VICTIM OF TRAFFICKING: EXPERIENCES FROM PAYOKE

Patsy SÖRENSEN | 벨기에 인신매매 센터 PAYOKE 소장

Patsy Sorensen 은 Antwerp 에 본부를 두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인 Payoke 인신매매 센터의 설립자이자 책임자(소장)이다. 시의회 의원과 유럽 연합 의회의 의원을 지냈으며,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신매매 전문가로서 유럽연합 인신매매 전문가 그룹에 일원인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Victim Identification: Experiences from Payoke

Patsy Sörensen
Director, Payoke NGO

What We Will Discuss

- Who we are (Payoke)
- What we do (services)
- The Belgian strategy to fight human trafficking
- Belgium's counter-trafficking cooperation model
- Our intake process for victims of trafficking (support and protection)
- Difficulties in identifying victims of trafficking
- Understanding the victim – what you see and learn (indicators)
- What you can do – enhancing measures in victim identification

Payoke: Who we are

Our Mission

- Reception and specialized assistance to victims
- Self-reliance and (re-)integration
- Formulating recommendations

Our Work

- Residential Care / Shelter
- Legal Assistance
- Administrative Support
- Psychosocial support
- Ambulant Care
- Information and Training

Payoke: What We Do

Legal Assistance

- Advice and assistance throughout legal proceedings
- Contacts and mediation with police, justice, and legal profession
- Start legal proceedings in name of the client and/or in name of Payoke

Administrative Support

- Request for residence documents
- Request for work permits
- Arrangements with social services, health insurers, etc.

Psycho-Social Support

- Dealing with trauma (coordinating psychological counseling)
- Assistance with integration (registering for language classes, finding a job, support for administrative and social formalities, and ambulant support)
- Coordination of medical assistance

Assistance in Returning

- In partnership with IOM, assist in returning to country of origin

The Belgian Strategy to Fight Human Traffic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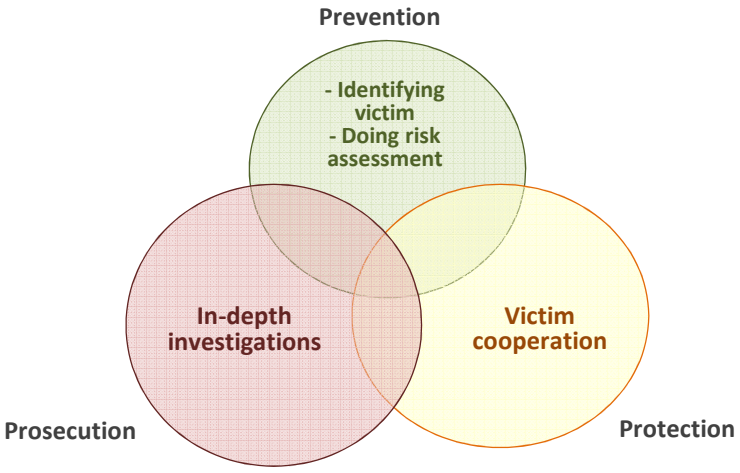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TERDEPARTMENTAL COORDINATION UNIT

GOVERNMENT POLICY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THE INTERIOR	MINISTRY OF EMPLOYMENT	MINISTRY OF SOCIAL SECURITY	
▪ Board of Prosecutors General ▪ Service for Criminal Policy ▪ Expertise network of the Board of Prosecutors General	Policy Department	Policy Department	Policy Department	STRATEGIC: Centre for Equal Opportunities and Opposition to Racism
OPERATIONAL				
▪ Federal Office of the Public Prosecutor ▪ State Security	▪ Central Service of the Federal Police, Directorate-General of Criminal Investigation ▪ Immigration Service	Social Inspection Services	Social Inspection Services	NGOS Payoke Pag-asa Sürya

Strategy into Practice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Shelter Management and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10-11 August 2011
The Plaza Hotel, Seoul, Republic of Korea

7

Intake and Assistance Process: Payo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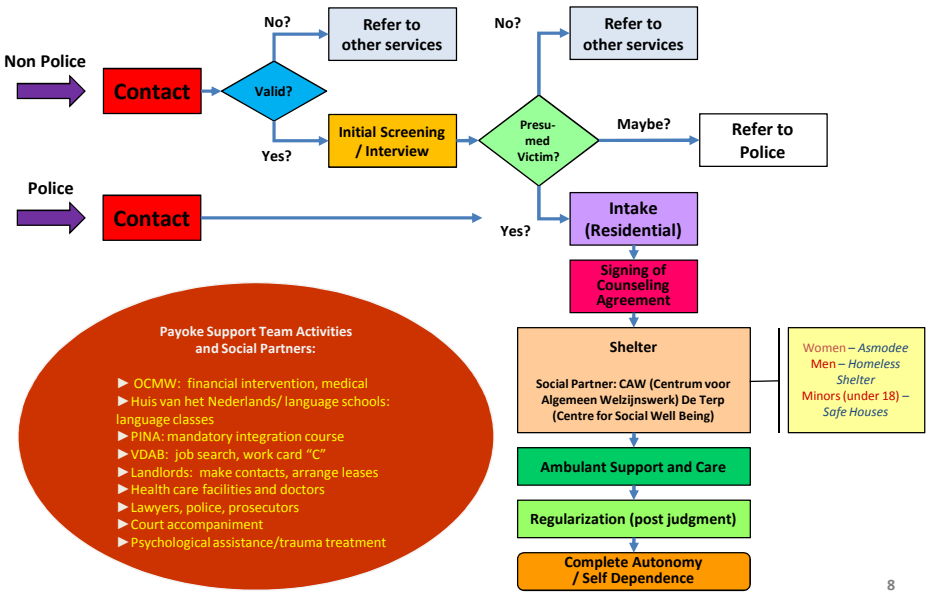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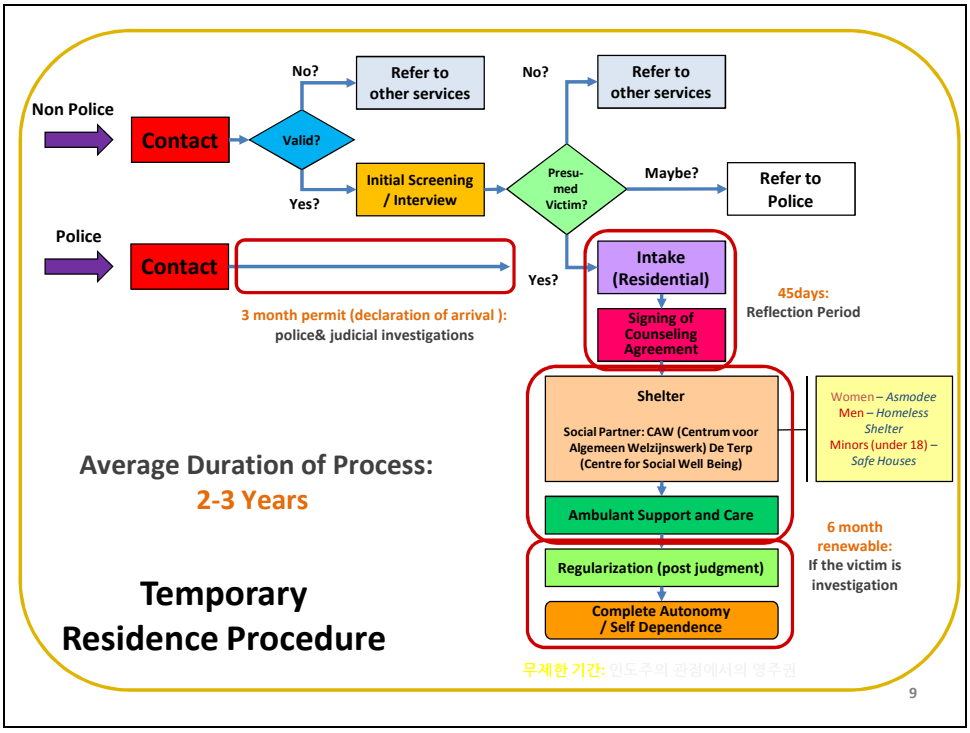

Difficulties in Identifying Victims of Trafficking

- Lack of legal framework defining the crime of trafficking
- Nature of the crime
- Inability to recognize victims
- Absence of a coordinated response to identification
- The way victims view their experiences

Understanding the Victim: What You May See

- Physical signs
- Emotional indications
- Behavioral cues

Understanding the Victim: What You May Learn

- Issues relating to documents and identity
- Living conditions
- Work conditions
- Work contract
- Payment and Debts
- Transport/Arrival
- Recruitment
- Control

General Indicators for Consular and Immigration Officials

- Identity and travel documents (type, where/when issued, visas)
- Type of contract and terms of work
- Type of organization requesting visa (accredited?, registered?, recognized?)
- Knowledge of potential victims about country they wish to visit (geography, language, culture)
- Knowledge of potential victims about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in destination country
- Questionable trends
  - large number of specific visas requested to a given country;
  - large numbers of young people getting jobs abroad;
  - cultural exchange programs with promises of work;
  - Contact numbers not at fixed addresses;
  - Unaccompanied minors

What You Can Do

- What are some of the questions you should ask to clarify a person's status?

Review:
How to Enhance Victim Identification

- Demonstrate the will to recognize/identify potential victims
- Develop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B and risks to country citizens and migrants
- Have knowledge of counter-trafficking strategies
- Have good referral information and resources
- Get to know local employers
- Develop standards for scrutinizing visa applications
- Be able to identify correct, good quality documents
- Develop trust and cooperation with key counter-trafficking stakeholders, especially local and federal police services
- Develop good data collection system
- Become familiar with indicators that can identify potential victims

Contact

Payoke

Leguit 4

2000 Antwerp

Belgium

T: 32 3 201 16 90

F: 32 3 233 23 24

admin@payoke.be

Workshop on Shelter Management and Direct Assistance for Victims of Trafficking

쉼터 관리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한 워크숍

세션 4.
심리사회적 지원

Session 4. 심리사회적 지원

01 심리사회적 지원에 대한 국제 기준과 모범사례

Carina MORITA | IOM 동경사무소 사례담당팀장

Carina Morita 는 IOM 동경사무소에서 인신매매 팀의 수석 사례관리자로서일본 내 인신매매 피해자의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1994 년부터 일본 내 필리핀 이주자를 대상으로 Saalaa 와 Kapatiran 등의 NGO 단체에서 상담사와 사례관리자로 일하며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일본 내 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해왔다.

심리사회적 지원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Tokyo

Ms. Carina Morita
Chief Caseworker

IOM 일본 인신매매 피해자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개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일본의 국가 행동 계획
(2004년 채택, 2009년 수정)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
피해자 보호
IOM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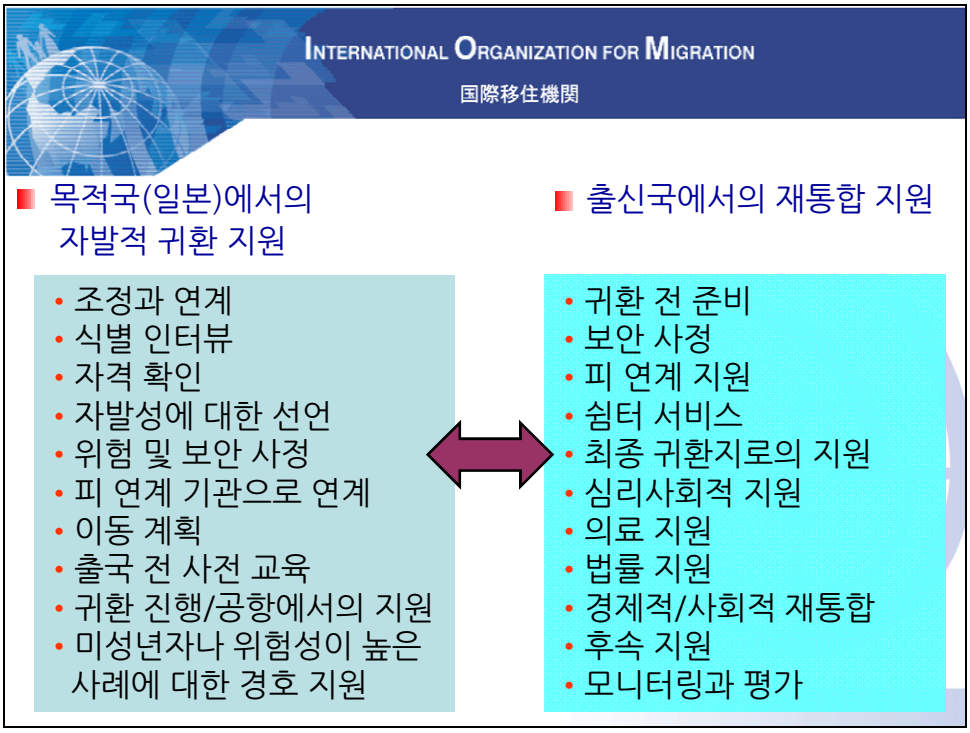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목적국(일본)에서의
자발적 귀환 지원
조정과 연계
식별 인터뷰
자격 확인
자발성에 대한 선언
위험 및 보안 사정
피 연계 기관으로 연계
이동 계획
출국 전 사전 교육
귀환 진행/공항에서의 지원
미성년자나 위험성이 높은
사례에 대한 경호 지원
출신국에서의 재통합 지원
귀환 전 준비
보안 사정
피 연계 지원
쉼터 서비스
최종 귀환지로의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의료 지원
법률 지원
경제적/사회적 재통합
후속 지원
모니터링과 평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심리사회적 지원
접근법/실행/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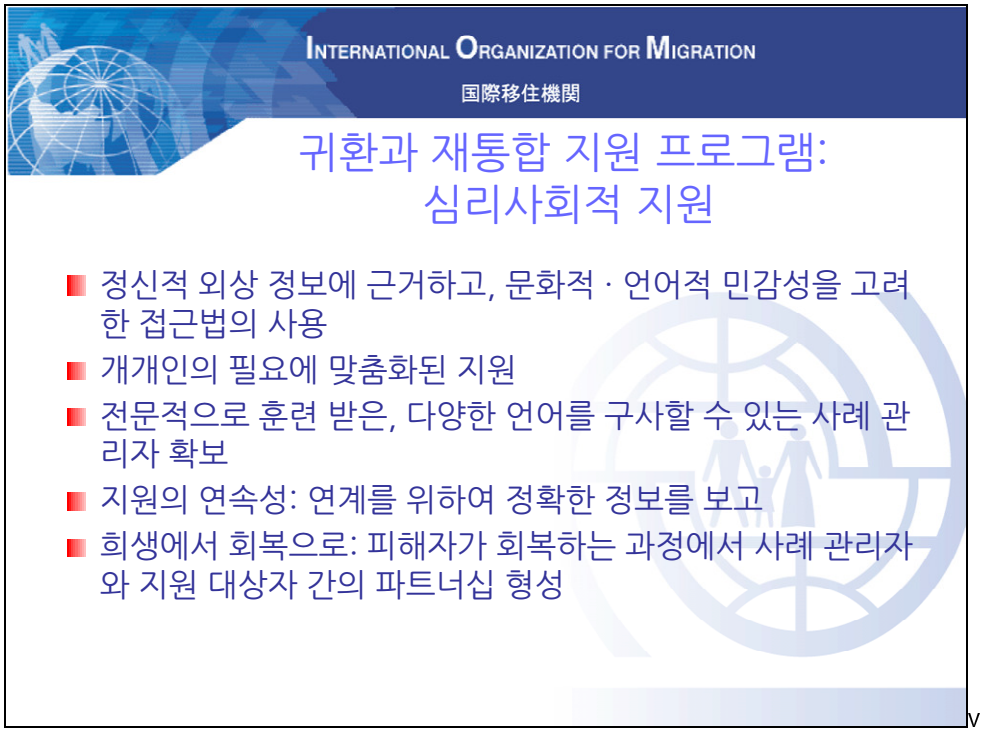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심리사회적 지원
정신적 외상 정보에 근거하고, 문화적 · 언어적 민감성을 고려한 접근법의 사용
개개인의 필요에 맞춤화된 지원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례 관리자 확보
지원의 연속성: 연계를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보고
희생에서 회복으로: 피해자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사례 관리자와 지원 대상자 간의 파트너십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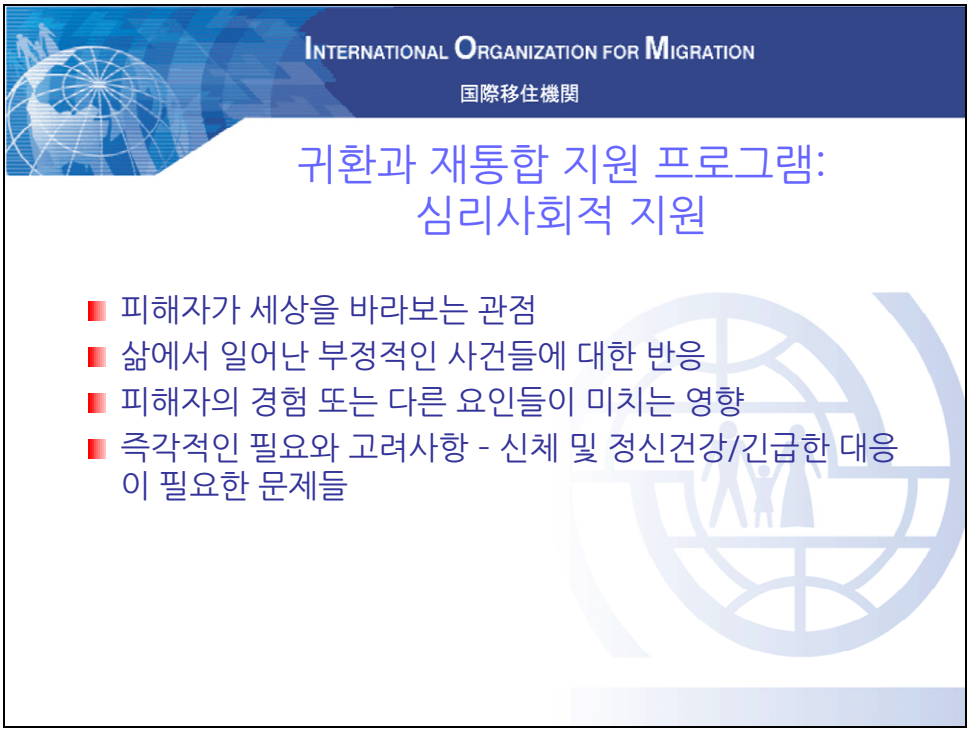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심리사회적 지원
피해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삶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한 반응
피해자의 경험 또는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
즉각적인 필요와 고려사항 - 신체 및 정신건강/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문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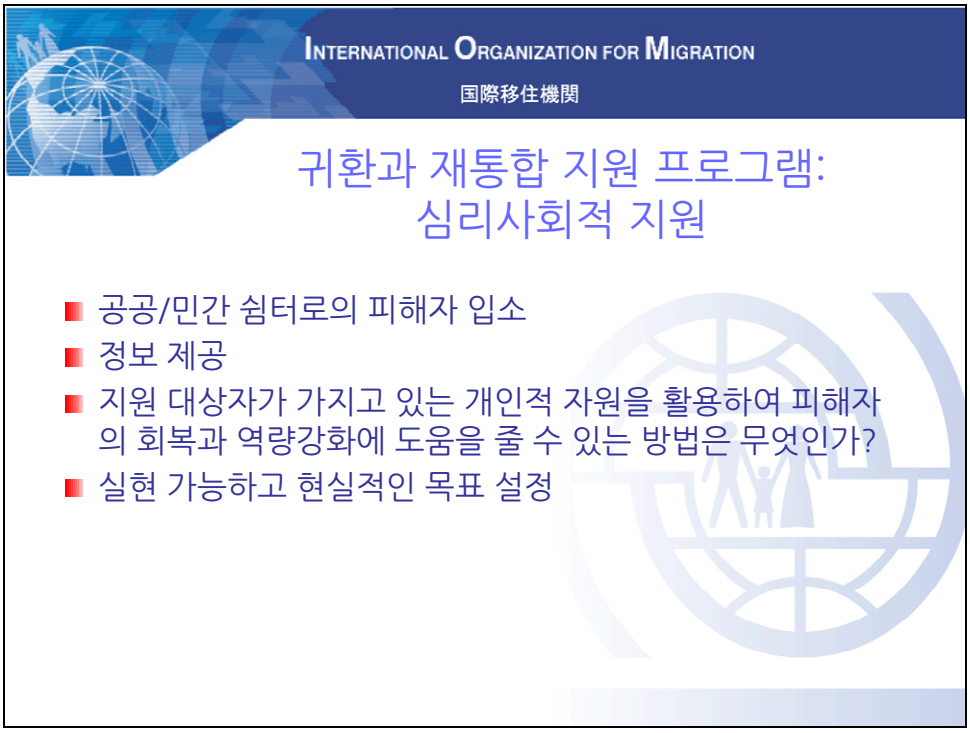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심리사회적 지원
공공/민간 쉼터로의 피해자 입소
정보 제공
지원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역량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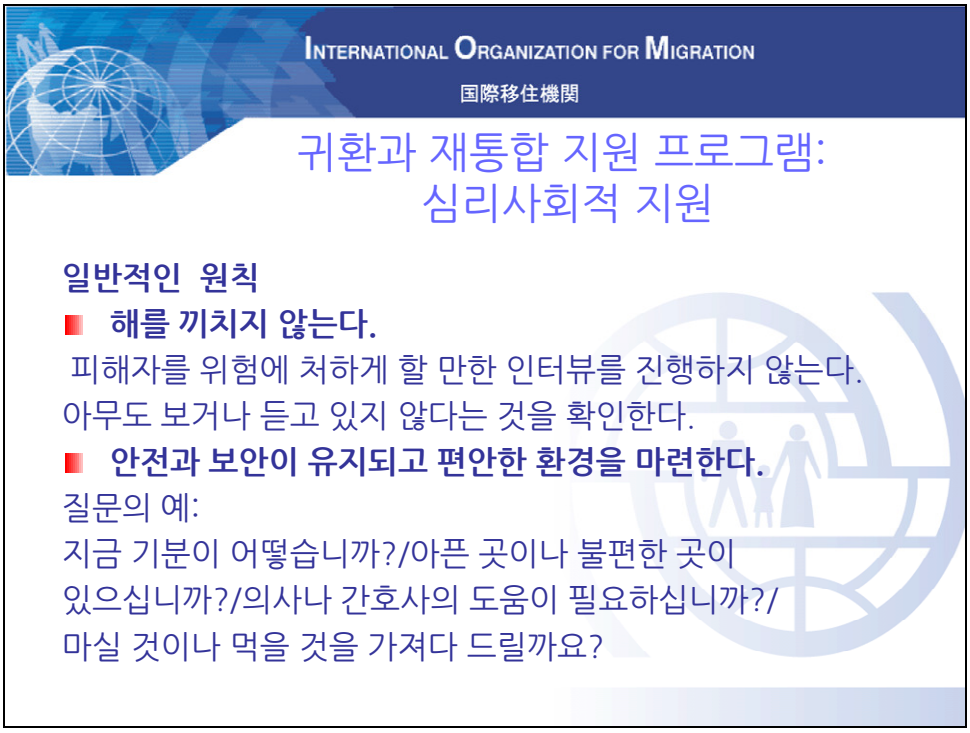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심리사회적 지원
일반적인 원칙
해를 끼치지 않는다.
피해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만한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는다.
아무도 보거나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다.
안전과 보안이 유지되고 편안한 환경을 마련한다.
질문의 예: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아픈 곳이나 불편한 곳이
있으십니까?/의사나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마실 것이나 먹을 것을 가져다 드릴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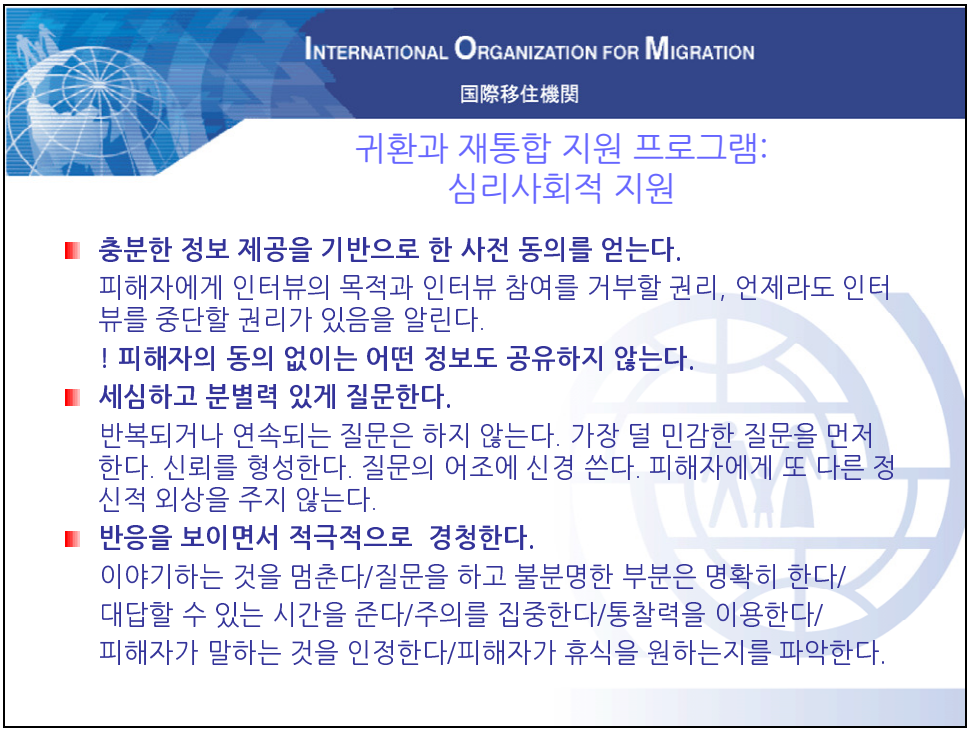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심리사회적 지원
충분한 정보 제공을 기반으로 한 사전 동의를 얻는다.
피해자에게 인터뷰의 목적과 인터뷰 참여를 거부할 권리, 언제라도 인터뷰를 중단할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다.
세심하고 분별력 있게 질문한다.
반복되거나 연속되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가장 덜 민감한 질문을 먼저 한다. 신뢰를 형성한다. 질문의 어조에 신경 쓴다.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외상을 주지 않는다.
반응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이야기하는 것을 멈춘다/질문을 하고 불분명한 부분은 명확히 한다/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주의를 집중한다/통찰력을 이용한다/
피해자가 말하는 것을 인정한다/피해자가 휴식을 원하는지를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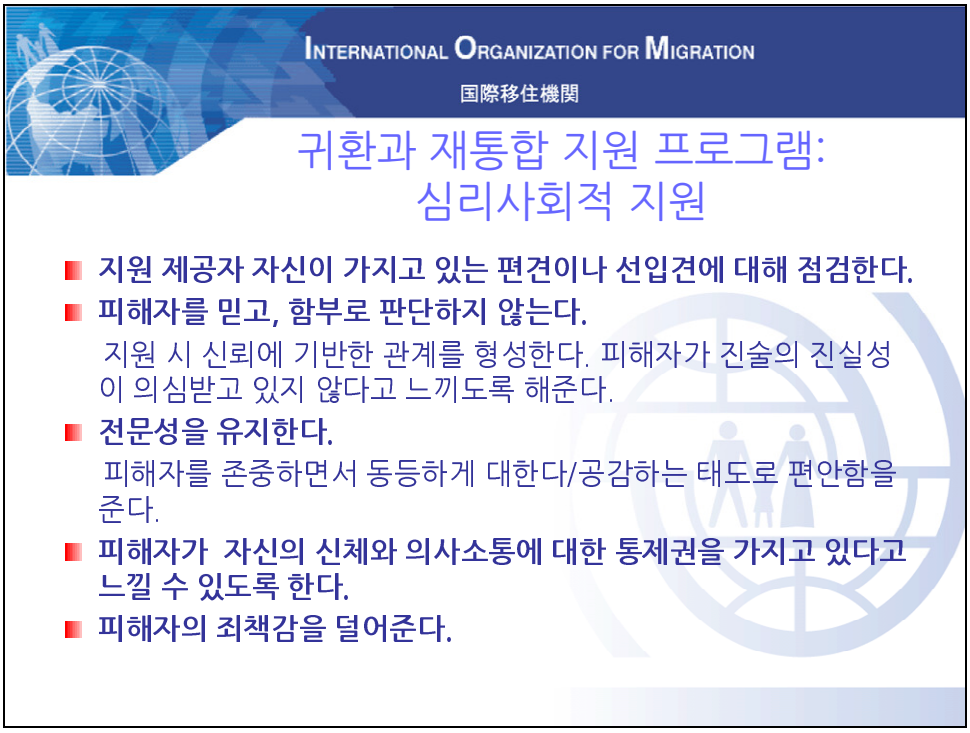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심리사회적 지원
지원 제공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에 대해 점검한다.
피해자를 믿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지원 시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한다. 피해자가 진술의 진실성이 의심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도록 해준다.
전문성을 유지한다.
피해자를 존중하면서 동등하게 대한다/공감하는 태도로 편안함을 준다.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와 의사소통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의 죄책감을 덜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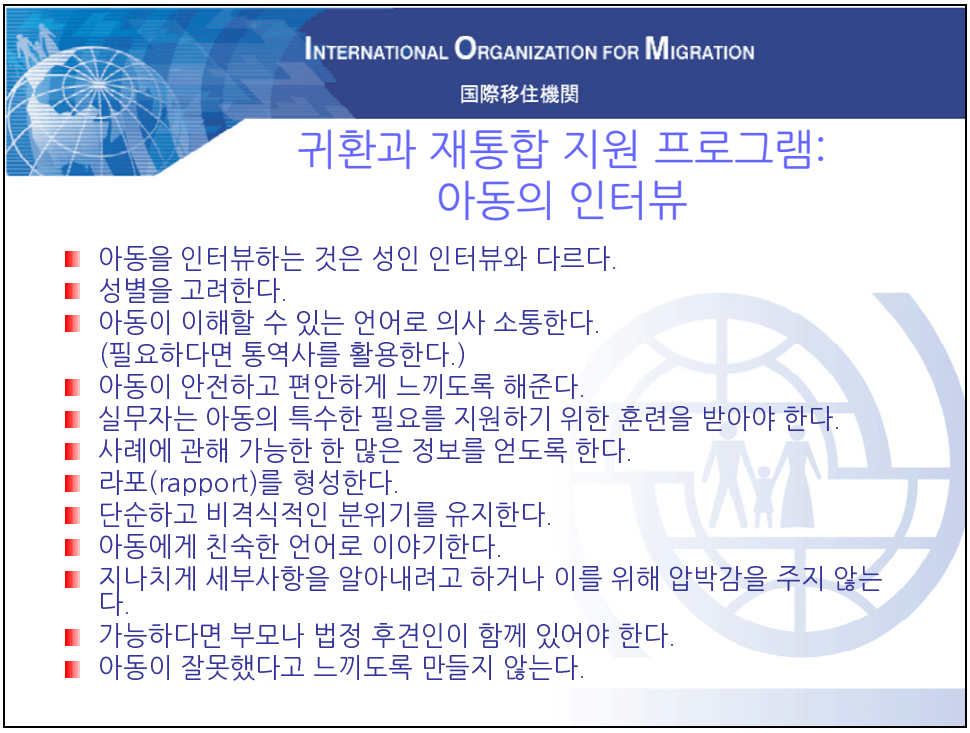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아동의 인터뷰
아동을 인터뷰하는 것은 성인 인터뷰와 다르다.
성별을 고려한다.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의사 소통한다.
(필요하다면 통역사를 활용한다.)
아동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준다.
실무자는 아동의 특수한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사례에 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도록 한다.
라포(rapport)를 형성한다.
단순하고 비격식적인 분위기를 유지한다.
아동에게 친숙한 언어로 이야기한다.
지나치게 세부사항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이를 위해 압박감을 주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부모나 법정 후견인이 함께 있어야 한다.
아동이 잘못했다고 느끼도록 만들지 않는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감사합니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IOM Mission Japan
IOM駐日事務所
Chiyoda House 5F, 2-17-8
Nagata-cho, Chiyoda-ku,
Tokyo 100-0014 JAPAN
Tel: +81(0)3 3595 2487
Fax: +81(0)3 3595 2497
E-mail: iomtokyo@iom.int
Website:
http://www.iomjapan.org/
(Japanese)
http://www.iom.int
(HQ English)
〒100-0014
東京都千代田区永田町2-17-8
千代田ハウス5階
電話 +81(0)3 3595 2487
Fax: +81(0)3 3595 2497
E-mail: iomtokyo@iom.int
ホームページ:
http://www.iomjapan.org/ (日本語)
http://www.iom.int (英語・本部)

Session 4. Psycho-social Assistance

01 INTERNATIONAL STANDARD AND GOOD PRACTICES OF PSYCHO-SOCIAL ASSISTANCE

Carina MORITA | IOM 동경사무소 사례담당팀장

Carina Morita 는 IOM 동경사무소에서 인신매매 팀의 수석 사례관리자로서 일본 내 인신매매 피해자의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1994 년부터 일본 내 필리핀 이주자를 대상으로 Saalaa 와 Kapatiran 등의 NGO 단체에서 상담사와 사례관리자로 일하며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일본 내 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해왔다.

Psychosocial Assistance

Voluntary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Progra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Tokyo

Ms. Carina Morita

Chief Caseworker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Program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in Jap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Program: Overview

- Japan's National Action Plan to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Established 2004, Revised 2009)
- Multi-agency approach
- Protection of Victims
- IOM Voluntary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Voluntary Return Assistance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Japan)

- Coordination and Referral
- **SCREENING INTERVIEW**
- Confirmation of Eligibility
- Declaration of Voluntariness
- Risk and Security Assessments
- **REFERRAL TO RECEIVING MISSIONS**
- Travel Arrangements
- **PRE-DEPARTURE BRIEFING**
- Return Operations/Airport Assistance
- **ESCORT ASSISTANCE FOR MINORS AND HIGH RISK CASES**

Reintegration Assistance in the countries of origin

- **PRE-ARRIVAL PREPARATIONS**
- Security Assessment
- **RECEPTION ASSISTANCE**
- **SHELTER SERVICES**
- Assistance to Final Destination
- **PSYCHOSOCIAL CARE**
- **MEDICAL ASSISTANCE**
- Legal Aid
- **ECONOMIC/ SOCIAL REINTEGRATION**
- **FOLLOW-UP CARE**
- **MONITORING AND EVALU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Psychosocial Assistance Approaches/Practices/ Helpful Guid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Program: Psychosocial Assistance

- Employs trauma informed, culture and language sensitive approaches
- Tailored to individual needs
- Maintains a pool of trained multilingual caseworkers
- Assistance continuum: accurate reporting for referral purposes
- From victimization to recovery – the caseworker/s and the client are partners to achieving recove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Program:
Psychosocial Assistance
Client's worldview
Reaction to Life's Negative Events
Effects of the experiences/ other factors
Immediate needs and considerations – mental and physical health/ pressing concer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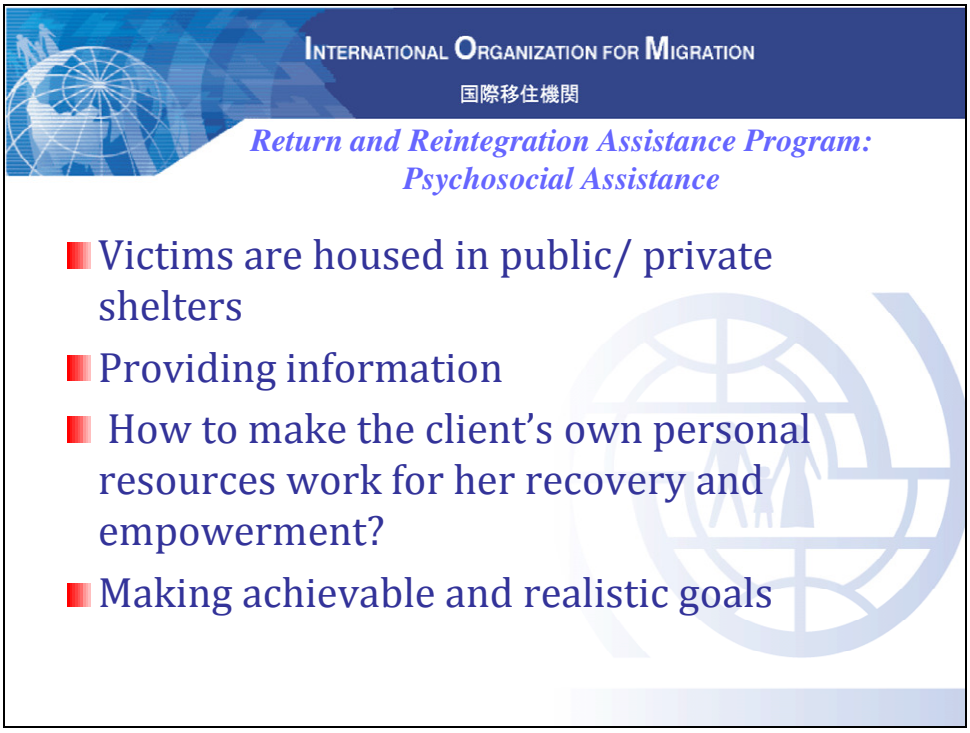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Program:
Psychosocial Assistance
Victims are housed in public/ private shelters
Providing information
How to make the client's own personal resources work for her recovery and empowerment?
Making achievable and realistic goal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Program: Psychosocial Assistance

General Guides

- ***Do no harm***

Never carry out an interview if it will put the victim in any danger
Try to ensure no one is watching or listening

- ***Ensure environment is safe, secure and comfortable***

Example questions: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Are you having any pain, discomfort?/Do you need to see a doctor or a nurse?/
Can I get you a drink or foo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Program: Psychosocial Assistance

- ***GET INFORMED CONSENT***

Ensure the victim understands the purpose of the interview and their right not to participate or to end it at any time
! Never share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the victim

- ***Ask questions in a sensitive and sensible manner***

Avoid repetetive questions/Sequence of questions- ask the least sensitive questions first; establish trust/Tone of questions /Do not re-traumatize the victim

- ***Listen actively and responsively***

Stop talking/Ask questions and clarify/Give the person time to answer/Focus your attention/Be perceptive/Acknowledge what the victim says/Observe for signs that the victim needs a bre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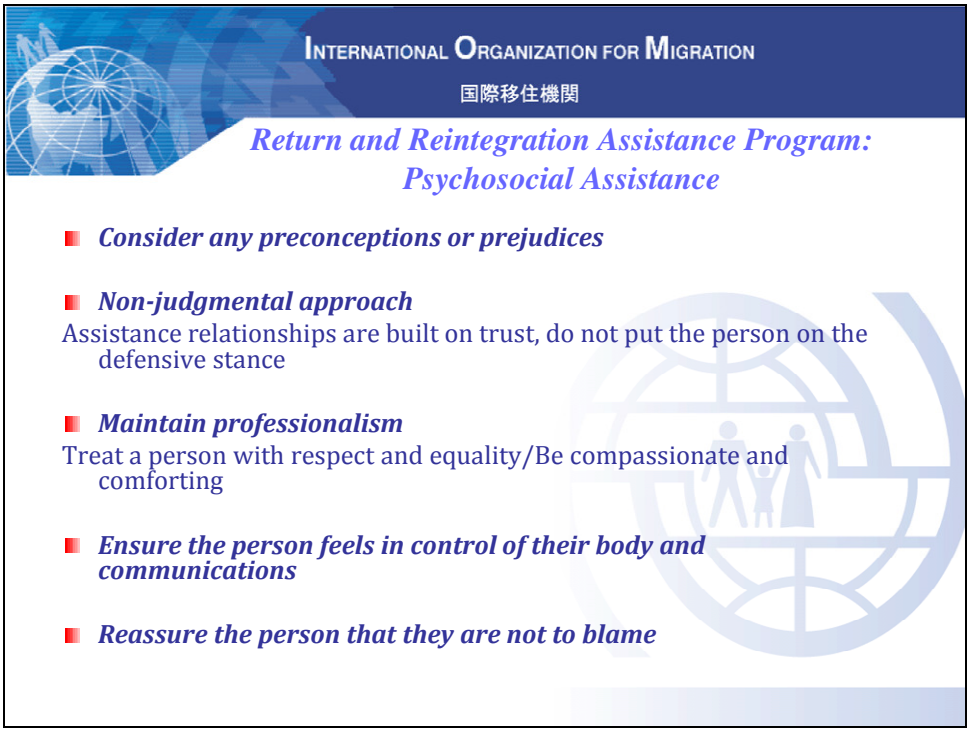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Program:
Psychosocial Assistance
Consider any preconceptions or prejudices
Non-judgmental approach
Assistance relationships are built on trust, do not put the person on the defensive stance
Maintain professionalism
Treat a person with respect and equality/Be compassionate and comforting
Ensure the person feels in control of their body and communications
Reassure the person that they are not to blam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Program:
Interviewing children
Interviews with adults and children are different
Take gender into consideration
Communicate in a language they understand (interpreter if necessary)
Help ensure the child feels safe and comfortable
Staff should be trained on the special needs of children
Learn as much as possible about the case
Establish a rapport
Keep the atmosphere simple and informal
Use child friendly language
Do not press or pursue for details
A parent or legal guardian should be present if possible
Never make the child fee that they are at fault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Thank you very much!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IOM Mission Japan
IOM駐日事務所
Chiyoda House 5F, 2-17-8
Nagata-cho, Chiyoda-ku,
Tokyo 100-0014 JAPAN
Tel: +81(0)3 3595 2487
Fax: +81(0)3 3595 2497
E-mail: iomtokyo@iom.int
Website:
http://www.iomjapan.org/
(Japanese)
http://www.iom.int
(HQ English)
〒100-0014
東京都千代田区永田町2-17-8
千代田ハウス5階
電話 +81(0)3 3595 2487
Fax: +81(0)3 3595 2497
E-mail: iomtokyo@iom.int
ホームページ:
http://www.iomjapan.org/ (日本語)
http://www.iom.int (英語・本部)

Session 4. 심리사회적 지원

02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 -한국의 성산업 이주여성 지원 경험을 중심으로

박혜정 |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무국장

박혜정 사무국장은 2002 년부터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에서 법률지원팀장, 성매매 피해 상담소 소냐의 집에서 상담원을 거쳐 현재 (사)여성인원지원센터 살림의 사무국장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성매매 피해자에게 직접지원을 제공하며 여성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천호동 423 번지, 그 시간을 밝히다 (소냐의집, 2008), 상담원을 위한 성매매관련 법률안내서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2007) 등이 있다.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이하 ‘살림’)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2002 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살림’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목적으로 상담소,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소는 성매매피해자의 긴급구조와 법률 문제 해결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쉼터와 그룹홈은 주거 지원이 필요한 여성들이 무료로 지내면서 심리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활지원센터는 성매매피해자의 전업 지원을 위해서 직업훈련, 일자리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살림’의 통합지원체계는 성매매피해자가 자활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선불금빚의 무효화, 신용불량 등의 법률적 문제 해결, 산부인과, 정신과 등의 의료 지원, 심리 치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의 주거 지원, 직업을 전환하기 위한 기술 교육, 사회 재통합 경험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 등의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통합적 지원이 반드시 한 기관 안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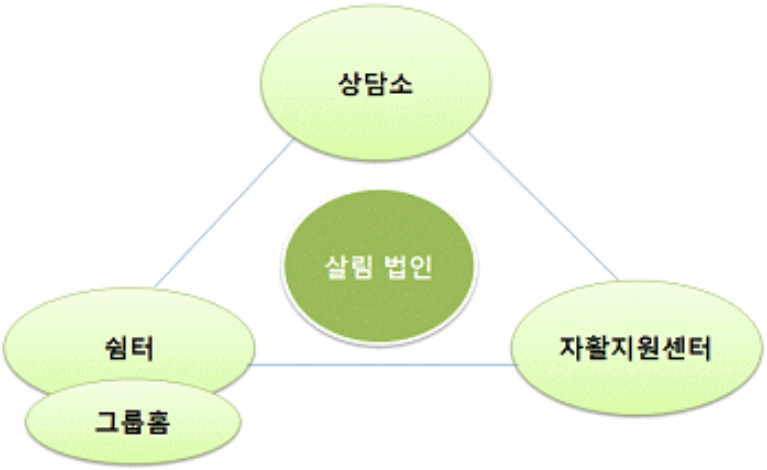

‘살림’의 통합지원시스템

‘살림’은 2002 년에 설립된 이래 내국인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성산업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언어의 장벽이나 시스템의 부재를 탓하며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여 2006 년부터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2006 년에 부산의 초량 외국인지역 이주여성들에 대한 아웃리치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0 년부터는 활발한 법률지원과 함께 쉼터와 자활지원센터에도 외국인 입소자, 이용자가 생겼다. 현재 ‘살림’이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은 주로 E-6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전용클럽이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도록 강요당한 필리핀 여성들이다. 이 글은 ‘살림’이 한국의 성매매피해자 지원 체계 속에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한 경험을 통해 한국의 성산업 이주여성에 대한 직접 지원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아직 걸음마 단계의 지원이지만 우리의 경험이 한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1. 상담소 지원

상담소에서는 긴급구조와 법률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직접 상담소로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는 같은 피해 경험이 있으며 상담소 지원을 받은 적이 있거나 받은 사람을 알고 있는 동료가 소개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는 타 단체나 경찰을 통해서 연계된다. 특히 부산은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본 기관과의 협조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경찰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본 기관에 상담 지원을 요청하고, 본 기관의 상담원이 경찰청에 가서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인신매매 피해자를 접할 기회가 많지만 상담이 연계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에 대한 경계심이 많아 자신의 피해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으면 상담원이 피해자를 전화, 또는 면접 상담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긴급 구조를 하거나 피해자의 내방을 유도한다. 초기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피해 상황과 욕구,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내담자와 합의한다. E-6 비자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업소에서 탈출하면 많은 경우 기획사에서 피해자를 근무지 이탈로 신고하기 때문에, 차후에 미등록 체류 기간에 대한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체류 자격의 변경을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안정적인 체류자격이 주어져야 하지만 현재 한국은 그러한 시스템이 없다. 인신매매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무척 중요한데, 피해자가 생계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에 남아 있으면서 수사에 협조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피해자가 G-1(기타)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G-1 비자는 민사, 형사 소송에 연루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그러나 취업자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또한 반드시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이나 수사가 진행중이어야 비자가 주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경찰의 요청으로 조사에 동석하는 경우에는 먼저 피해자와 일대일 면담을 한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소와 마찬가지로 경계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체류자격 외의 일을 한 것이 발각되면 자신을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소와의 면담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말고 '월급 제대로 받고 있으며 가수 활동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만족한다. 내 여권은 내가 보관한다' 등으로 거짓 진술하도록 사전 교육시키기 때문에, 상담원과의 사전 면담이 피해자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살림'은 상담원과의 사전 면담에서 체류자격 변경과 쉼터.자활지원센터 지원, 형사 및 민사 사건 지원 등 센터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경찰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수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준다. 특히 상담원은 경찰이 아니며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경찰서에 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살림' 상담소에서는 2 주에 한 번 초량 외국인상가 지역을 방문하여 아웃리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아웃리치 서비스는 활동가들이 성매매 현장에 나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말한다. 이를 통해 성매매 현장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지원 정보가 전달되어 탈 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동향을 파악하기도 한다. 활동가들의 정기적인 현장 방문은 성매매 현장의 피해 상황 개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당장의 효과를 볼 수 없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아웃리치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초량 외국인상가 지역에는 90 여명의 필리핀 여성과 50 여명의 러시아 여성이 일하고 있다. '살림'은 따갈로그어와 러시아어로 매번 새로운 내용의 소식지를 만들고 물품을 준비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1 년 여간의 활동을 통해 초량 지역 외국인 여성들에게 '살림' 활동가들의 존재가 각인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종종 소식지를 보고 상담을 요청해오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2. 쉼터 지원

쉼터에서는 기본적인 주거 지원과 함께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쉼터에서 특히 신경쓰는 부분은 보안 문제이다. 쉼터 입소 시에 보안 문제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주고 친구, 동료 등 누구에게도 쉼터의 주소를 노출하지 않도록 서약을 받는다. 쉼터 생활 규칙에 대해서 영어 번역본을 만들어 놓아 입소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업소 생활을 하는 동안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 검진과 함께 필요한 의료 지원을 제공한다. '살림' 쉼터와 같이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지내는 경우에는 입소자들끼리 쉼터 생활에 관해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 생활상의 작은 문제들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갈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달에 한 번 가족회의를 열어 생활상의 서로 불편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통역이 가능한 활동가가 참석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 여성들은 인터넷을 통해 본국의 가족과 소통하기 때문에 쉼터에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여 더 편리하게 가족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쉼터에서는 각종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입소자들 간의 친목 증진을 위한 캠프부터 문화 관람, 심리 치유를 위한 집단 상담, 대화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진행되는데, 외국인들의 경우 문화 관람이나 캠프와 같은 프로그램은 참여가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심리 치유 프로그램은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에 맞춘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 현재 '살림' 쉼터에서는 외국인 입소자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부산시티투어를 통해 지역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쉼터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지낸지 이제 1 년이 지났다. 입소자들 간에 갈등도 있었지만 지금은 초반에 비해서 한국인 입소자들이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상당히 줄었으며 외국인 입소자들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3. 자활지원센터 지원

'살림'은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활지원센터는 성매매 피해자의 전업을 위한 직업 훈련을 중점으로 하는 기관이다. 직업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는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외부 학원을 다니거나 내부 직업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성매매 착취구조 속에서 고립되어 업소 외의 사회 경험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생계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다. 그래서 쉼터에 입소한 외국인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활지원센터 이용을 희망한다.

외국인들은 한글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아 한글 교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한국 문화를 배우는 데도 적극적이어서 각종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다. 내국인에 비해 기술 습득과 작업장 적응 속도가 빨라 외국인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주어서 그들이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여 생계 활동을 하고

센터에서는 한글 교육이나 한국 사회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외국인 피해자들의 욕구에 맞는 자활지원센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1 년 여간 한국인과 외국인 이용자들이 함께 자활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초기에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다른 문화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자활지원센터에서 이용자가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류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이용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작업장 이용자들간의 정기적인 간담회에 통역이 가능한 활동가가 동석하여 서로간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배경과 성매매 피해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피해자들에 맞춘 자활 지원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Session 4. 심리사회적 지원

03 보안과 안전

Carina MORITA | IOM 동경사무소 사례담당팀장

Carina Morita 는 IOM 동경사무소에서 인신매매 팀의 수석 사례관리자로서일본 내 인신매매 피해자의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1994 년부터 일본 내 필리핀 이주자를 대상으로 Saalaa 와 Kapatiran 등의 NGO 단체에서 상담사와 사례관리자로 일하며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일본 내 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해왔다.

보안과 안전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Tokyo

Ms. Carina Morita
Chief Caseworker

IOM 일본 인신매매 피해자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개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일본의 국가 행동 계획
(2004년 채택, 2009년 수정)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
피해자 보호
IOM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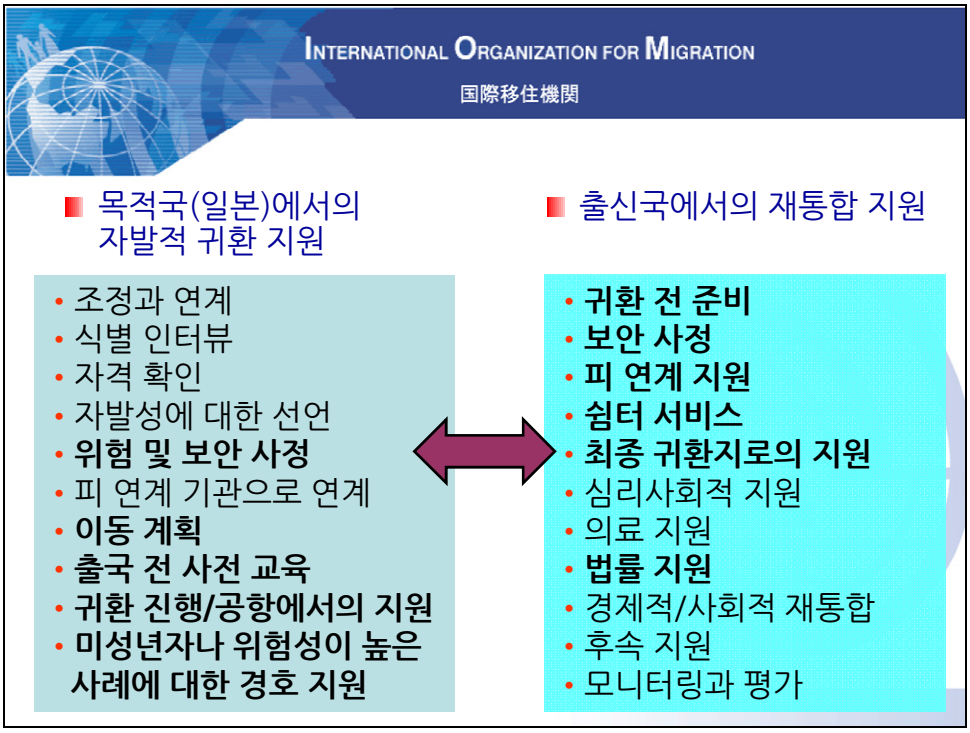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목적국(일본)에서의
자발적 귀환 지원
조정과 연계
식별 인터뷰
자격 확인
자발성에 대한 선언
위험 및 보안 사정
피 연계 기관으로 연계
이동 계획
출국 전 사전 교육
귀환 진행/공항에서의 지원
미성년자나 위험성이 높은
사례에 대한 경호 지원
출신국에서의 재통합 지원
귀환 전 준비
보안 사정
피 연계 지원
쉼터 서비스
최종 귀환지로의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의료 지원
법률 지원
경제적/사회적 재통합
후속 지원
모니터링과 평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보안과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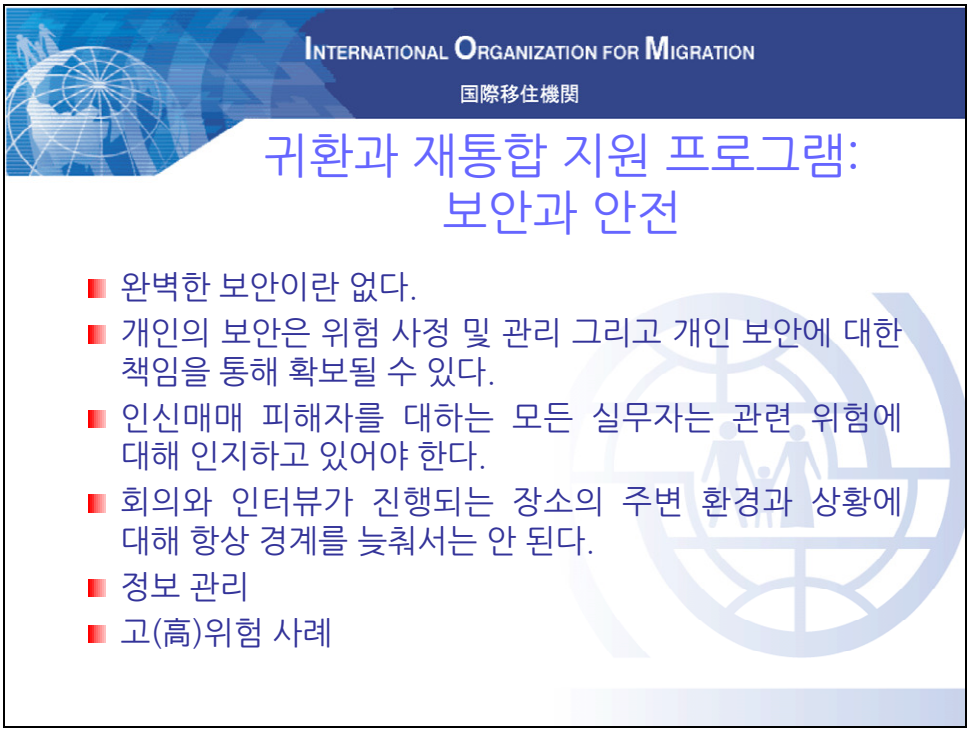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보안과 안전
완벽한 보안이란 없다.
개인의 보안은 위험 사정 및 관리 그리고 개인 보안에 대한 책임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하는 모든 실무자는 관련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회의와 인터뷰가 진행되는 장소의 주변 환경과 상황에 대해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정보 관리
고(高)위험 사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자기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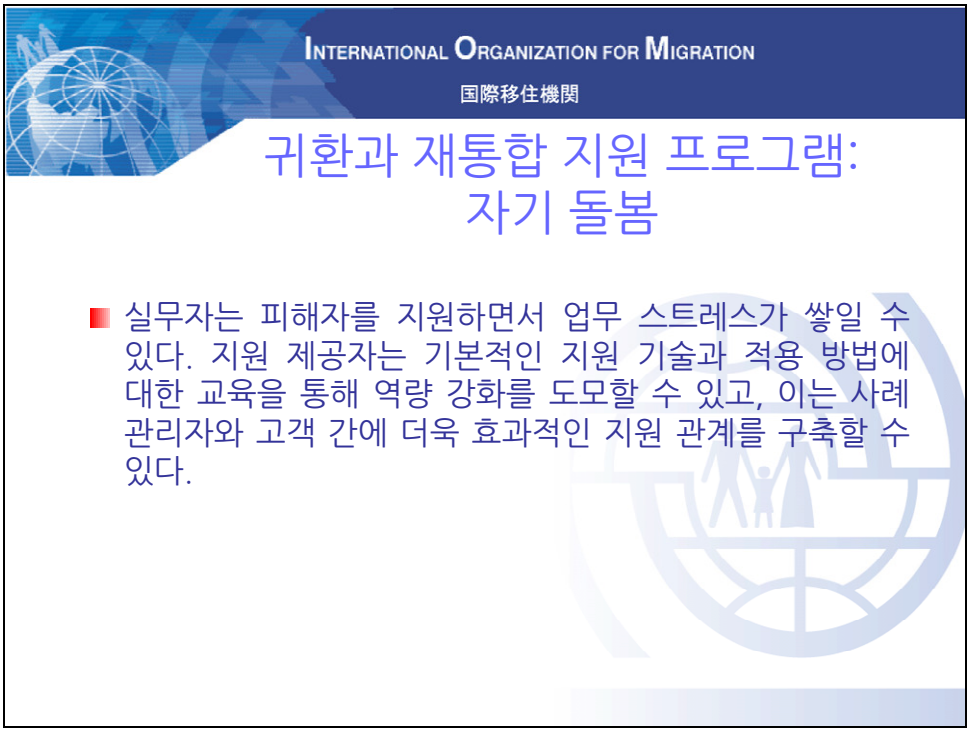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자기 돌봄
실무자는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 지원 제공자는 기본적인 지원 기술과 적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이는 사례 관리자와 고객 간에 더욱 효과적인 지원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귀환과 재통합 지원 프로그램:
자기 돌봄
스트레스, 연민 피로감(Compassion Fatigue), 소진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 발달
자신만의 대처 방법 개발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감사합니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IOM Mission Japan
IOM駐日事務所
Chiyoda House 5F, 2-17-8
Nagata-cho, Chiyoda-ku,
Tokyo 100-0014 JAPAN
Tel: +81(0)3 3595 2487
Fax: +81(0)3 3595 2497
E-mail: iomtokyo@iom.int
Website:
http://www.iomjapan.org/
(Japanese)
http://www.iom.int
(HQ English)
〒100-0014
東京都千代田区永田町2-17-8
千代田ハウス5階
電話 +81(0)3 3595 2487
Fax: +81(0)3 3595 2497
E-mail: iomtokyo@iom.int
ホームページ:
http://www.iomjapan.org/ (日本語)
http://www.iom.int (英語・本部)

Session 4. Psycho-social Assistance

03 SAFETY AND SECURITY

Carina MORITA | IOM 동경사무소 사례담당팀장

Carina Morita 는 IOM 동경사무소에서 인신매매 팀의 수석 사례관리자로서 일본 내 인신매매 피해자의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1994 년부터 일본 내 필리핀 이주자를 대상으로 Saalaa 와 Kapatiran 등의 NGO 단체에서 상담사와 사례관리자로 일하며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일본 내 이주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해왔다.

Security and Safety

Voluntary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Progra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Tokyo

Ms. Carina Morita

Chief Caseworker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Program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in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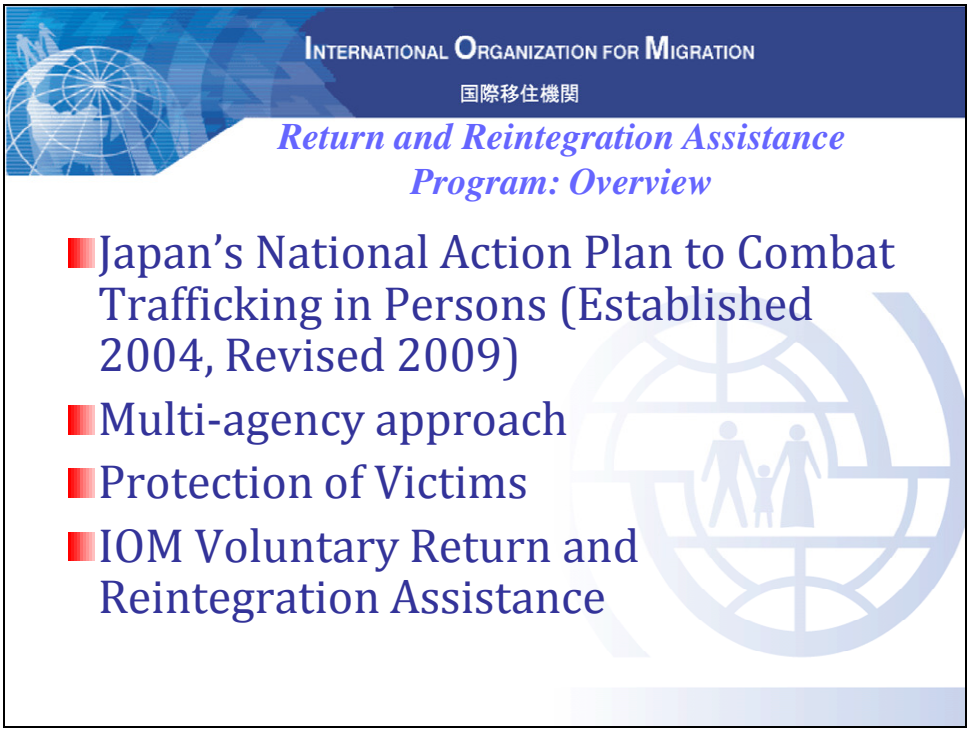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Program: Overview
Japan's National Action Plan to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Established 2004, Revised 2009)
Multi-agency approach
Protection of Victims
IOM Voluntary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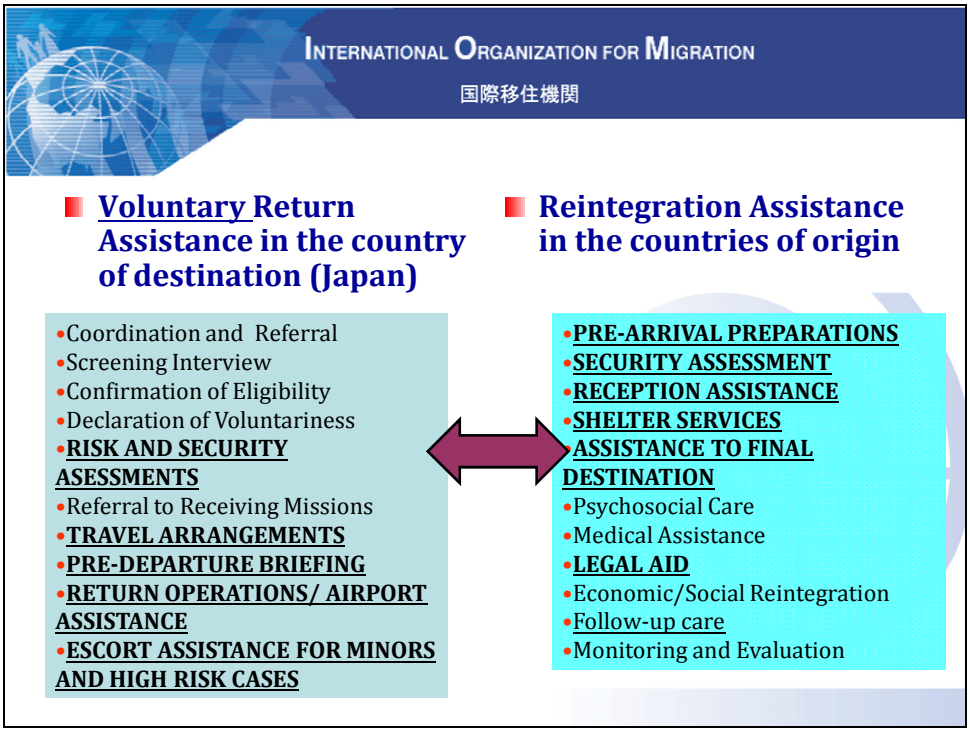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Voluntary Return Assistance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Japan)
•Coordination and Referral
•Screening Interview
•Confirmation of Eligibility
•Declaration of Voluntariness
•RISK AND SECURITY ASESSMENTS
•Referral to Receiving Missions
•TRAVEL ARRANGEMENTS
•PRE-DEPARTURE BRIEFING
•RETURN OPERATIONS/ AIRPORT ASSISTANCE
•ESCORT ASSISTANCE FOR MINORS AND HIGH RISK CASES
Reintegration Assistance in the countries of origin
•PRE-ARRIVAL PREPARATIONS
•SECURITY ASSESSMENT
•RECEPTION ASSISTANCE
•SHELTER SERVICES
•ASSISTANCE TO FINAL DESTINATION
•Psychosocial Care
•Medical Assistance
•LEGAL AID
•Economic/Social Reintegration
•Follow-up care
•Monitoring and E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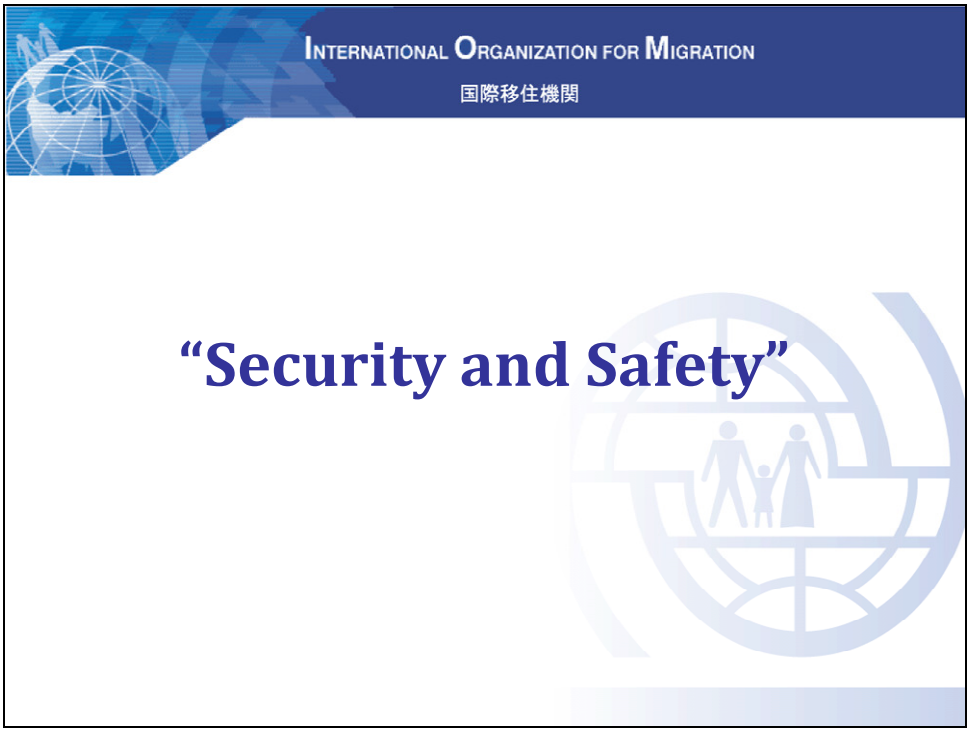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Security and Saf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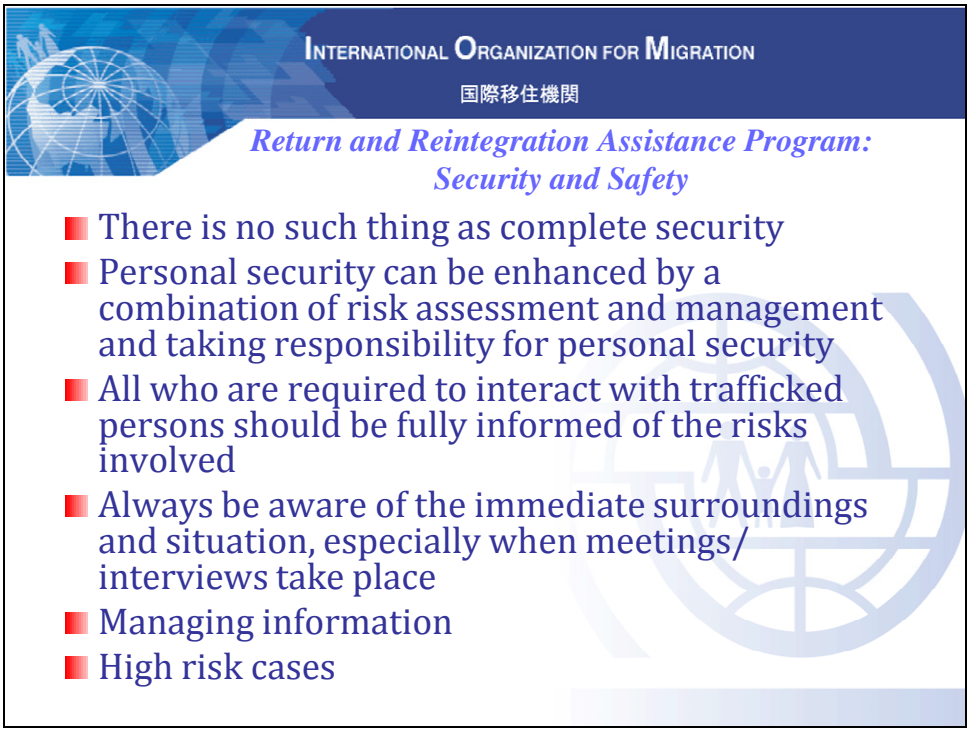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Program:
Security and Safety
There is no such thing as complete security
Personal security can be enhanced by a combination of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and taking responsibility for personal security
All who are required to interact with trafficked persons should be fully informed of the risks involved
Always be aware of the immediate surroundings and situation, especially when meetings/ interviews take place
Managing information
High risk cas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Taking care of oursel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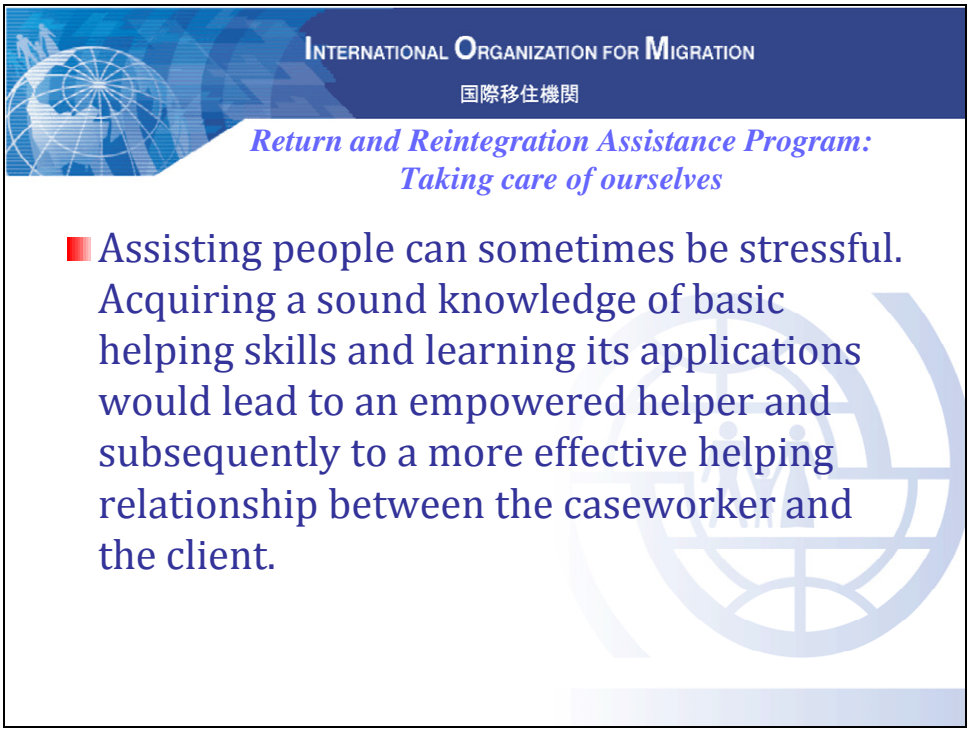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Program:
Taking care of ourselves
Assisting people can sometimes be stressful. Acquiring a sound knowledge of basic helping skills and learning its applications would lead to an empowered helper and subsequently to a more effective helping relationship between the caseworker and the cli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Return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Program:
Taking care of ourselves

- Stress, Compassion Fatigue, Burnout
- Managing Stress
- Training and development
- Developing our own styl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Thank you very much!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国際移住機関

IOM Mission Japan
IOM駐日事務所

Chiyoda House 5F, 2-17-8
Nagata-cho, Chiyoda-ku,
Tokyo 100-0014 JAPAN
Tel: +81(0)3 3595 2487
Fax: +81(0)3 3595 2497
E-mail: iomtokyo@iom.int

〒100-0014
東京都千代田区永田町2-17-8
千代田ハウス5階
電話 +81(0)3 3595 2487
Fax: +81(0)3 3595 2497
E-mail: iomtokyo@iom.int

Website:
http://www.iomjapan.org/
(Japanese)
http://www.iom.int
(HQ English)

ホームページ:
http://www.iomjapan.org/ (日本語)
http://www.iom.int (英語・本部)